

월간

# 재정포럼

2016. November\_Vol.245

1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권두칼럼

뉴노멀 저성장 시대,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 염명배

## 현안분석

공공기관 협업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소고/ 박한준

2016년 노벨 경제학상: 계약이론에의 공헌/ 김빛마로

## 공공정책포럼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탄소세 도입 발표 외

## CONTENTS

### 권두칼럼

뉴노멀 저성장 시대,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

· **염명배** ..... 02

### 현안분석

공공기관 협업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소고 · **박한준** ..... 06

2016년 노벨 경제학상: 계약이론에의 공헌 · **김빛마로** ..... 23

### 공공정책포럼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 40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탄소세 도입 발표 외 ..... 48

### 정책흐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102

아·태 국가에 한국 민간투자 노하우 전파 ..... 104

2016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 105

국가회계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 111

## 뉴노멀 저성장 시대,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



염명배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장

1926년 케인스(J.M. Keynes)가 그 유명한 『자유방임주의의 종언(The End of Laissez-faire)』을 저술한 지 올해로 꼭 90년이 되었다. 지난 한 세기 가까이 케인스의 재정·금융정책 이론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금과옥조처럼 전 세계에서 신봉되어 왔다. 심지어 *Time*지는 “우리는 이제 모두 케인스주의자(We Are All Keynesians Now)”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전통적 케인스 거시정책에 대한 ‘정책무력화(Policy Ineffectiveness)’ 반론이 강하게 일기 시작하였다.

### 저성장 뉴노멀 시대의 도래와 재정 트릴레마(Trilemma)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경제쇼크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현상으로서 성장경로 자체가 달라진 결과라는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야흐로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임기 중에 무려 15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세입증대, 지출절감, 국채발행 등 세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여건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이른바 재정 ‘트릴레마(Trilemma)’에 봉착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 정부는 증세나 지출절감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에 주로 의존해 왔으며, 그로 인해 내년 임기 말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수준인 700조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사상 처음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빚으로 조달한 재정지출이 기대만큼 경제성장

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지난 3년간(2013~2015년) 9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재정확대를 실시한 결과 총 15조원의 추가 성장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수익률 측면에서 따진다면 원가보상률이 15% 수준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사업성과라고 평가된다. 즉, 100원 빚을 내어 고작 15원 벌어들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향후 경기 진작을 통해 부채를 갚을 가능성은 요원하다.

###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저성장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통적 정책효과까지 힘을 잃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우리는 케인스식 재정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저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핵심은 기존의 단기적·양적 경기부양 정책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질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 내실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즉,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정책의 초점을 총량적·보편적인 ‘거시적’ 시각에서부터 선별적·표적 집중적인 ‘미시적’ 시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 역량을 수요 측면의 확대를 중시하는 케인스식 사고에서부터 공급측면의 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스펀터식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스펀터식 사고의 핵심은 ‘혁신’에 있다.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재정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재정개혁의 핵심은 재정의 누수를 막고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양하고 재정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재정개혁은 지출제도, 조세제도, 재정전달 시스템 등 세 가지 부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삼위일체 재정개혁의 필요성

지출제도 개혁은 부처 간 중복된 지출을 걸러내고 복지와 성장에 균형 잡힌 지출계획을 세우며,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의 경직성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현명한 지출(Wise Spending)’을 위한 노력을 가리킨다. 조세제도 개혁은 그동안 잦은 땀질식 세법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현 조세체계를 바로잡아 조세원칙과 조세철학,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


.....

**저성장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케인스식 재정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저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재정의 체력을  
강화하고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세설계(Tax Design)’를 하기 위한 노력이다. 재정전달 시스템 개혁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원을 최대한 알뜰하게 쓰기 위한 일종의 ‘밑 빠진 독을 수리하는 작업’으로 재정전달 경로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중복수급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는 노력이다.

우리는 최근 저성장 기조가 단순히 일시적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구조적 ‘뉴노멀’ 현상임을 받아들이고 과거 고성장 시대의 향수(鄉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장률을 높여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선불리 나랏빚을 늘려가면서까지 효과도 불확실한 단기부양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재정의 체력을 강화하고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공공기관 협업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소고  
박한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2016년 노벨 경제학상: 계약이론에의 공헌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공공기관 협업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소고\*

## I. 배경

“다수의 기관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 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박광국, 2013). 정부 3.0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협업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이 협업과정의 상호의존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거버넌스적 구조관점, 네트워크 관점, 전략적 관점 등 초점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협업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수요가 변하면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정책이슈들이 복잡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로 생산되고 있어,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효율성 지향적인 해결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적 접근방식의 한계에 대한 대안적 논의로 협업(collabor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선진적 행정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에서 발생하였던 9·11테러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에 대한 대응사례에서 협업이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연구들은 자연재난에 대한 종합적 대응의 실패가 사회적 피해로 재생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 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및 복지서비스, 교육부문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협업을 통한 서비스 창출 및 전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hanpark@kipf.re.kr)

\* 본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6년 12월 발간 예정인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박한준 외)」의 일부를 재작성한 것임 (필자 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부처 간 정책현안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조직단위 간 칸막이가 존재하여 왔고, 이로 인한 정보단절과 분절적 정책결정은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처 할거주의(割據主義, sectionalism)의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연구결과(Mc Guire, 2006)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과거 단순하였던 농경·산업사회와 달리 정보화시대 진입 이후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단순한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데 효율적이었던 관료제적 형태의 조직운영 방식은 더 이상 공공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부처 할거주의는 협업이 아닌 타협이라는 미봉책으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는 혁신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정부, 기관, 국

“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

민 상호 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여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협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도 정부3.0의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운영주체	관 주도	제한된 참여	능동적 참여, 개방, 협력
서비스	일방향	양방향	양방향, 맞춤형
제공수단	직접방문	웹기반	모바일

출처: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3)

## II. 공공기관 협업현황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 간 업무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핵심협업과제<sup>1)</sup>를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협업과제의 평가는 과제발굴 단계에서 협업의 필요성, 실행가능성과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과제명시화 단계에서 목표설정의 적절성, 지원체계 구축수준, 기관 간 역할의 명확

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 과제추진 단계에서 일정준수 여부, 이행상황 점검 및 이견조정 의 원활성 등을 평가하고, 과제완료 단계에서는 협업의 효과와 발전방안 수립의 적절성을 판단함으로써, 매년 우수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지난 3년간 핵심협업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산하 공공기관 규모와 핵심과제 주관기관 규모(연도별, 주무부처별)

(단위: 개)

주무부처	2013		2014		2015	
	산하기관	주관기관	산하기관	주관기관	산하기관	주관기관
고용부	12	1	12	0	12	0
공정위	1	1	2	0	2	1
교육부	38	0	21	0	21	1
국조실	24	1	24	0	24	0
국토부	33	0	23	3	24	4
금융위	9	2	12	3	8	2
농림부	15	0	12	0	13	2
문체부	34	3	35	2	36	2
미래부	-	-	39	1	41	1
복지부	18	1	18	3	20	5
산자부	71	6	52	6	52	4
행자부	6	0	5	1	3	1
기타부처	34	0	49	0	60	0
소계	295	15	304	19	316	23

주: 1. 소속기관이 2013~2015년 동안 적어도 1번 이상 협업 핵심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던 부처 리스트

2. 부서 외청(ex: 중기청, 특허청) 소속기관은 상위부서(ex: 산자부)의 소속기관으로 간주하여 카운트하였음

3.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당시에는 미래부가 출범하기 전으로 현 미래부 소속기관들이 교육부(前 교과부), 산자부(前 지경부) 등에 산재해 있으며, 마찬가지로 2014년도는 현 행자부(前 행안부, 안행부)의 개편으로 현재 인사처, 안전처 소속기관들이 행자부 및 산하 외청에 포함되어 있음. 해당 부처의 경우 조직 개편 이전 주무 부처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카운트하였음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1) 2013년~2015년 동안 공공기관 핵심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 리스트는 〈부표 1〉 참고

먼저, 협업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사업 분야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정부부처는 17부(3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2개 부처의 산하기관이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협업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 가운데 금융위, 문체부, 복지부, 산자부의 산하기관들은 매년 적어도 1개 이상의 핵심과제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공공기관 협업 핵심과제로 추진된 사업의 주관기관들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부, 문화부, 국토부, 복지부, 금융위의 산하기관들이 타 기관들에 비해 많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이 16개(28.1%) 협업과제를 주관하였으며, 복지부 산하기관이 9개(15.8%) 과제, 국토부 산하기관이 7개(12.3%), 문체부 산하기관이 7개(12.3%), 금융위 산하기관이 7개(12.3%) 과제를 주관함으로써, 전체 57개 과제 중 46개(80.7%) 과제가 5개 부처 산하기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 부처들은 전체 산하기관 규모가 타 부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협업의 기회발굴이 더 용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부처들이 주관하는 정책문제 및 영역의 특성이 복잡화되고 있음을 암시

“  
**공공기관 협업 핵심과제로  
 추진된 사업의 주관기관들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부, 문화부, 국토부, 복지부,  
 금융위의 산하기관들이 타 기관들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주관기관의 특성을 공공기관 지정유형별로 구분하여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기관유형과 사업의 특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나, 기관유형별로 협업수준을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들이 다수 선정되어 추진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3개 기관이, 이후 2014년 10개 기관, 2015년 11개 기관이 주관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3차 년도인 2015년 14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협업과제를 주관하면서 참여수준이 확대되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첫 해에는 178개 기관 중 5개 기타공공기관이 협업을 주관하였으나, 이후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수가 증가

〈표 3〉 핵심협업과제 주관기관 규모(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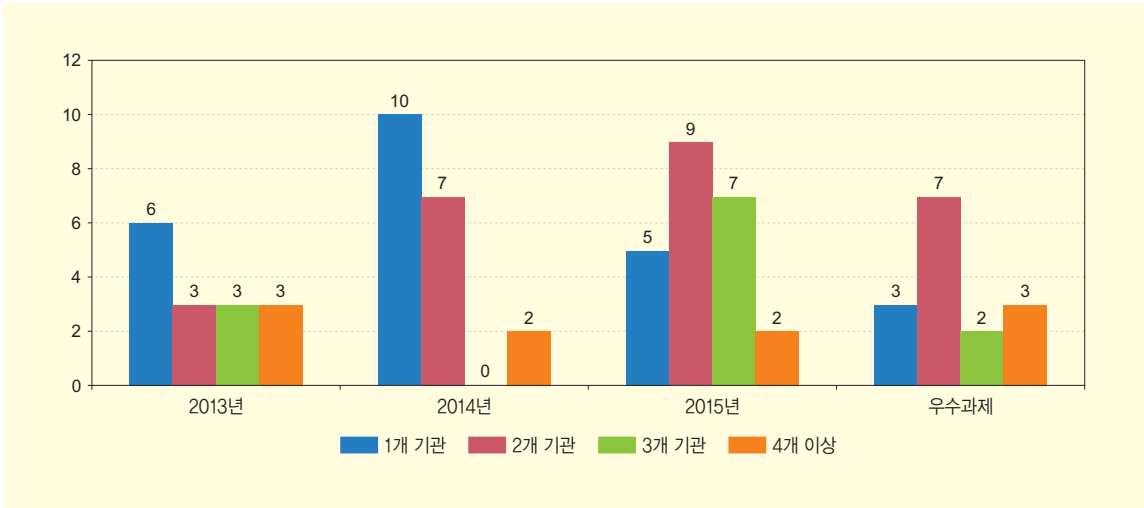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주관기관	전체	주관기관	전체	주관기관
공기업	시장형	14	2	14	1	14	5
	준시장형	16	0	16	1	16	2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17	5	17	5	17	4
	위탁집행형	70	3	70	10	69	11
기타공공기관		178	5	187	2	200	1
소계		295	15	304	19	316	23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그림 1] 공공기관 협업과제 참여 협조기관 규모

(단위: 개)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2014년 2개, 2015년 1개 기관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협업과제가 기타공공기관보다는 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인센티브로 작동하기 때문이다.<sup>2)</sup>

셋째, 협업구조의 복잡성(규모)을 협업에 참여하는 기관 수로 가늠해볼 수 있다. 지난 3년간 57개 과제 중 21개(36.8%) 과제에 1개 협조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협조기관이 참여한 사례가 19건(33.3%), 3개 협조기관이 참여한 사례가 10건(17.6%), 4개 이상 협조기관이 참여한 사례가 7건(12.3%)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 주관기관과 1~2개 정도의 협조기관이 협업과제를 수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처음으로 협업과제를 별도로 선정하

여 추진한 2013년도 이후에는 2개 이상 복수의 협조기관이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협업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15개 과제의 경우, 협조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는 3건(20.0%)이며, 2개 이상 협조기관이 참여하는 사례가 80%(12건) 수준인 점은 우수과제의 협업구조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협업기관의 참여규모를 기준으로 참여기관 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구조적 복잡성을 양적 기준으로 가늠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비교가 협업의 질적 난이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질적 난이도의 차이는 협업기관들이 통제할 수 있는 내적 구조뿐만 아니라, 사업의 난이도, 협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2) 공공기관 핵심협업과제로 추진된 과제 중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나, 대상범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참여기관 복잡성 유형에 따른 협업과제 규모

(단위: 개)

구 분	기 관 단 위	2013	2014	2015	2013~2015
공공기관 간 협업	주무부처 동일	3	5	5	13
	주무부처 상이	10	10	6	26
공공기관+외부협업	공공기관+지자체	1	1	4	6
	공공기관+민간단체	1	3	7	11
	공공기관+지자체+민간단체	0	0	1	1
소 계		15	19	23	57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같은 외부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협업의 복잡성(사업영역)을 주무부처 및 외부기관의 특성에 따라 비교할 수도 있다. 먼저, 협업과제의 복잡성을 참여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주무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협업, 주무부처가 상이한 공공기관간의 협업,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57개 과제 중 주무부처가 동일한 기관 간 협업사례는 13건(22.8%) 수준이었으며, 가장 많은 협업사례가 관찰되고 있는 주무부처가 상이한 기관들이 협업한 사례 26건(45.6%)의 절반 수준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주무부처 산하기관의 협업보다는 사업의 감독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부처별, 기관별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2013년 이후 최근까지의 경향을 살펴보면 동일한 주무부처 산하기관보다는 타 주무부처 산하기관과 협업하는 경향과 함께 공공기관을 넘어서서 민간단체 및 지자체들과 협업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  
**2013년 이후 최근까지의 경향을 살펴보면  
 동일한 주무부처 산하기관보다는  
 타 주무부처 산하기관과 협업하는  
 경향과 함께 공공기관을 넘어서서  
 민간단체 및 지자체들과 협업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확인할 수 있다. 동일부처 산하기관 간 협업보다는 상이한 정책분야의 기관들 간 협업기회가 더 많이 발굴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분야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심화되고 있다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민간단체와의 협업도 주무부처 간 동일한 공공기관 간 협업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협업 참여기관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협업을 시도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생산 및 전달주체로서의 사회적 기능의 확장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

〈표 5〉 연도별 협업목표의 특성

(단위: 개)

구분	편익증진		비용절감		계
2013년	12	80.0%	3	20.0%	15
2014년	10	52.6%	9	47.4%	19
2015년	17	73.9%	6	26.1%	23
2013~2015년	39	68.4%	18	31.6%	57
우수과제	9	60.0%	6	40.0%	15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다섯째, 공공기관 협업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의 사업목표가 지향하는 특성을 기준으로 협업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기재부가 선정한 공공기관 핵심협업과제들은 다양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각각의 개별 과제가 지향하는 목표의 특성을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증진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 제고를 지향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비용절감보다는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협업과제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3년간 추진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관찰할 내용만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편익증진을 목표로 하는 과제 비중이 높은 것은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는 정부3.0 취지를 고려하여 협업과제를 발굴하려는 기관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정리되는 공공기관 협업과제들의 특성들이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다수의 관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원스톱 조회 서비스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체육복지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서

비스 수요자를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출경험이 적은 내수 및 수출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복합적 수출지원을 위한 한국무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의 협업체도 수출기업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과거에는 협업의 동기를 자발적으로 찾지 못해, 사회 속에 분절적으로 흩어져 비효율 속에 갇혀 있던 난제(wicked problem)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공공기관협업에 대한 담당자 인식과 시사점

성공적인 협업은 구조화된 협업과정, 우호적인 사업 환경,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참여행태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지난 2년간 공공기관 협업과제에 참여한 담당자들의 인식수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sup>3)</sup> 먼저, 담당자들의 인식수준을 통

3) 지난 2016년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공공기관 협업과제 담당자 인식수준 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과를 인용·정리(담당자 추적이 가능한 2014년도, 2015년도 협업과제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담당자 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54명(응답률: 53.8%)이 회신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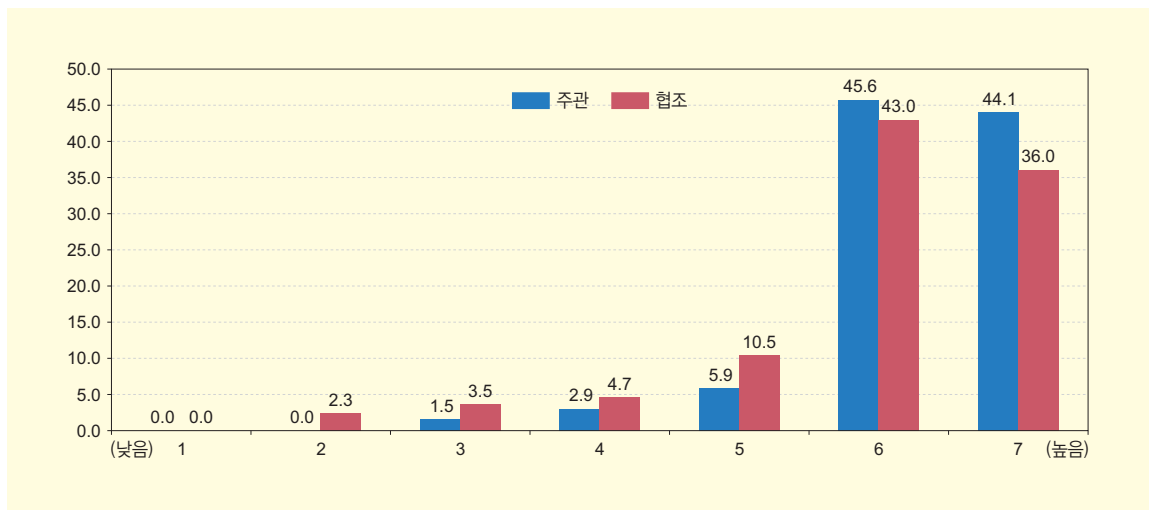
해 협업목표와 기관목표의 동일성 여부를 관찰하였다. 양자 간 동일성이 높을수록 기관 내부적으로 협업사업 수행에 대한 내부적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업과제의 목표가 기관의 고유사업 및 주요 사업목표와의 부합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개별 기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관찰내용을 요약하면,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협업과제에 참여한 설문응답자들은 참여과제의 목표가 기관의 핵심목표와 상당히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주관기관의 경우 절대 다수가 협업과제가 기관목표에 매우 부합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협조기관 근무자들도 유사한 응답을 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업과제의 추진동력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 협업과제들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심의를 거쳐 선정한 과

제이기는 하지만, 협업의 필요성과 추진동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담당참여자들은 다양한 응답을 하였다. 주목할 것은 주관기관이나 협조기관 모두 외부적 자극보다는 내부의 필요성으로 인해 추진된 과제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이다. 내부동력으로는 소속기관 기관장, 담당부서장, 부서 내부의 의지 및 필요성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동력은 소유권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사업 감독기관인 주무부처 중심의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및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또는 민간에서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61.8%가 협업과제의 추진동력이 기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반면, 협업 활성화를 권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주무부처 등 중앙정부의 영향을 가장 핵심적인 동력으로 응답한 경우는 20.6%에 그치고 있다.

[그림 2] 협업과제의 기관목표 부합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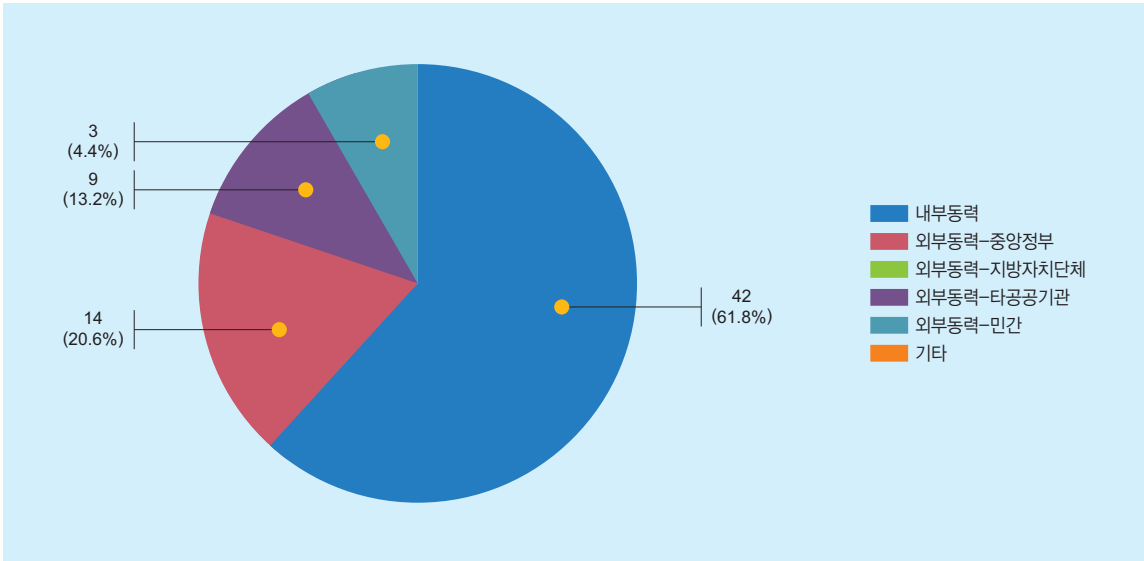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그림 3] 주관기관 협업과제 추진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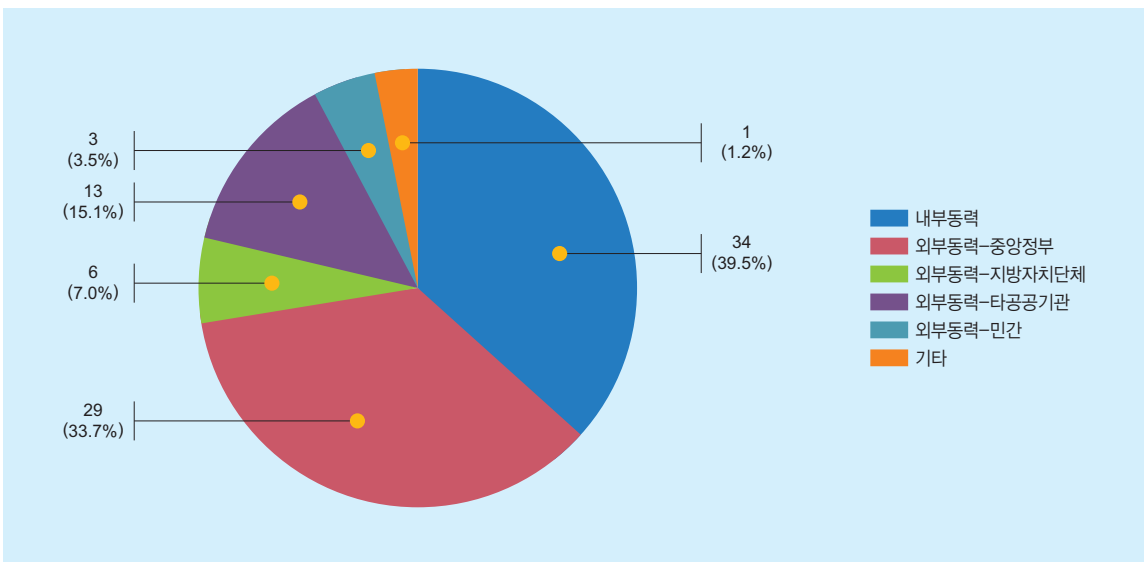
(단위: 개)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그림 4] 협조기관 협업과제 추진동력

(단위: 개)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협조기관 근무자의 경우에는 39.5%가 협업과제의 핵심 추진동력이 기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29명의 응답자가 중앙정부의 영향이 협업추진에 주요 요인으로 답변하였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추진동력으로 평가한 담당자의 비중은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이 동일하나, 협조기관의 경우 내부동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비중은 주관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주관기관의 경우, 기관에 내재되어 있는 필요성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나, 협조기관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영향력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여부도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사이에 미미한 수준이나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혁신과 조직 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관리변수로 측정되고 있다. 의사소통은 참여기관들 간 문제의식이나 접근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의 괴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소

“  
**주관기관의 경우  
 기관에 내재되어 있는 필요성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나,  
 협조기관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영향력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통의 원활성은 참여자들 간 협업행태 및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주관기관, 협조기관 근무자 모두 협업과정에서 원활하게 소통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협조기관에 비해서는 주관기관 근무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이라는 협업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결과일 수도 있다.

〈표 6〉 협업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원활도

(단위: 명, %)

구분	주관기관		협조기관		계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원활하지 않음(1점)	0	0.0	0	0.0	0	0.0
원활하지 않음(2점)	0	0.0	0	0.0	0	0.0
조금 원활하지 않음(3점)	0	0.0	1	1.2	1	0.6
보통(4점)	5	7.4	10	11.6	15	9.7
조금 원활함(5점)	6	8.8	12	14.0	18	11.7
원활함(6점)	39	57.4	41	47.7	80	51.9
매우 원활함(7점)	18	26.5	22	25.6	40	26.0
소 계	68	100	86	100	154	100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표 7〉 참여기관의 역할구분의 명확성

(단위: 명, %)

구분	주관기관		협조기관		계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응답자 수	비중
전혀 명확하지 않음(1점)	0	0.0	0	0.0	0	0.0
명확하지 않음(2점)	0	0.0	0	0.0	0	0.0
조금 명확하지 않음(3점)	0	0.0	2	2.3	2	1.3
보통(4점)	3	4.4	6	7.0	9	5.8
조금 명확함(5점)	2	2.9	8	9.3	10	6.5
명확함(6점)	33	48.5	39	45.3	72	46.8
매우 명확함(7점)	30	44.1	31	36.0	61	39.6
소 계	68	100	86	100	154	100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  
**의사소통과 같은 행태적 특성 이외에  
 협업과정의 구조화 특성도  
 참여기관들에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중에서 참여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정의된다면  
 더 효율적인 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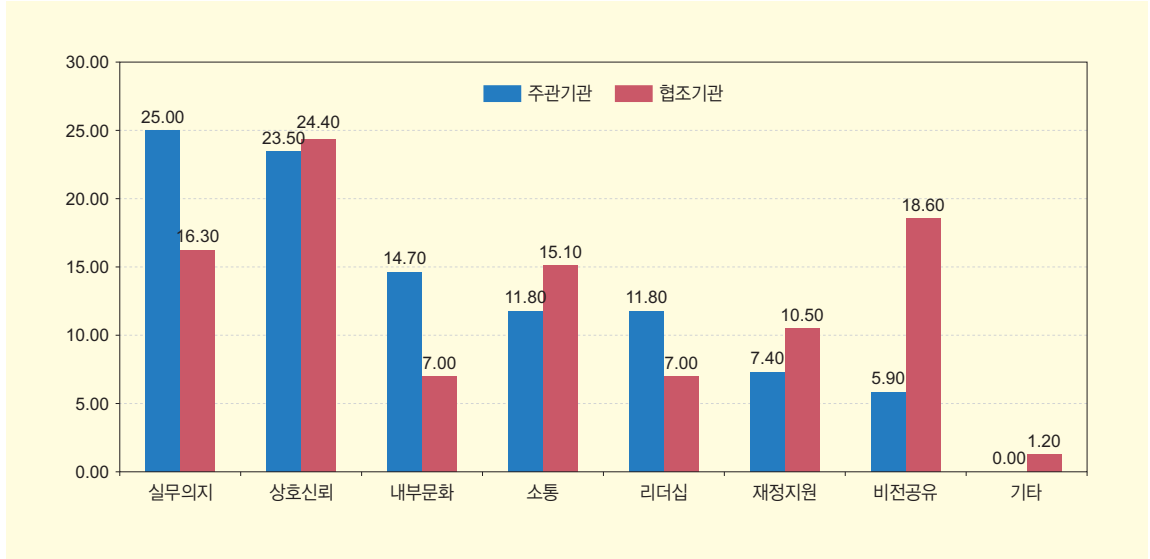
의사소통과 같은 행태적 특성 이외에 협업과정의 구조화 특성도 참여기관들에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중에서 참여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정의된다면 더 효율적인 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면, 그 역할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역시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협업구조가 복잡할수록 역할과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선행조건이 된다.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의 담당자들 대부분 참여하였던 협업과제에서 그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원활도와 유사하게 주관기관이 협조기관에 비해 역할 구분이 좀 더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차이들은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의 지위에 따라 일관적인 현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수평적 관계에서 주관기관이 협조기관의 입장을 이해하는 균형적 시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협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각 기관의 협업과제 담당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결과에서 협업의 성공요인들로 평가받았던 실무자의 의지, 상호신뢰, 내부협업문화, 소통, 리더십, 재정지원, 비전공유 등의 중요성에 대해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담당자 사이에 공통적인 인식과 함께 다소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상당수 담당자들이 상호신뢰를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기존연구 및 사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한 협업과제에 참여했던

[그림 5] 성공결정요인에 대한 인식비교(기관유형별)

(단위: %)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담당자들에게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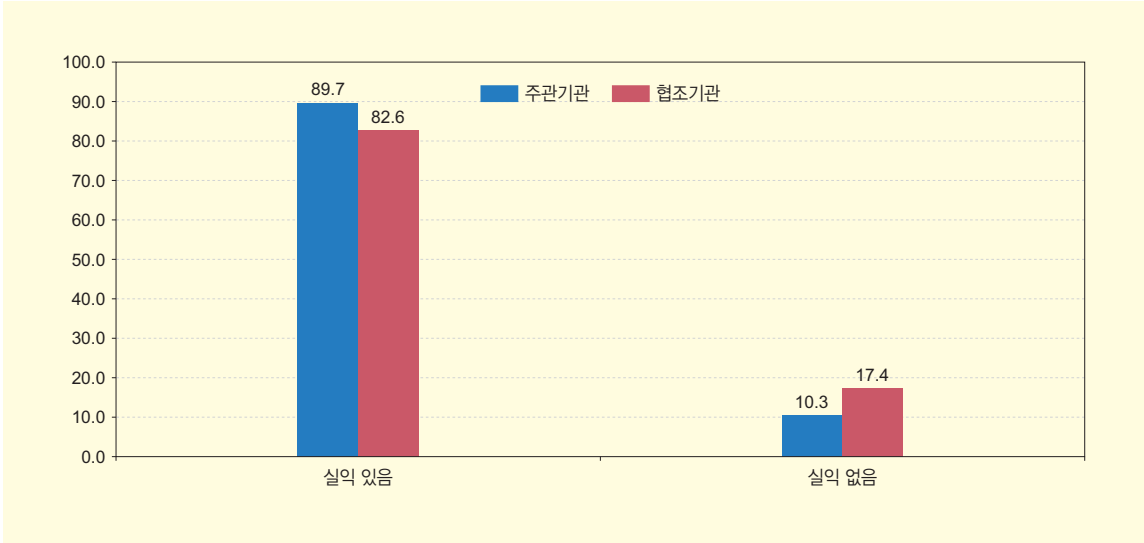
주관기관의 담당자들과 협조기관 담당자들을 분리하여 인식수준을 비교하면 양자 간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자 모두 상호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동안,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실무자의 의지를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응답하고 있다. 반면, 협조기관 담당자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전공유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 역시 참여기관들의 위상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주관기관은 내부적인 추진동력을 강조하는 반면, 협조기관은 협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주관기관이 수평적 관계에서 협조기관과의 비전을 공유하는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협업을 추진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 차이는 잠

재적으로 협업과정에서 공동의 의사결정 등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협업참여자들은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모두 내부 담당자의 80% 이상이 협업이 실질적인 이익을 생산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앞서 관찰한 다른 특성들을 고려하여 정리한다면, 정부 주도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었기에, 그 성과와 실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협업의 실익은 주관기관 담당자들이 약 7.1%포인트 정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6] 협업실익에 대한 인식

(단위: %)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 IV. 향후과제

공공부문에 경쟁이 도입·심화되면서 부처 등 단위조직 간 간막이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는 시점에서 협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급자적 입장에서 획일적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라는 가치에 매몰되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공급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의 공동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발굴이라는 사회적 지향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에서 분석한 협업과제의 참여자들의 인식수준을 통해서 2013년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협업과제의 성과가 긍정적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기획재정부가 협업과제를 심사 및 선정하여 추진하였지만, 기관들은 내부로부터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는 과제들을 제안하여 왔고, 성과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협업과제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의 입장에서 평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기관 내부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타 기관과의 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공공기관 협업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한 정부와 과제를 수행한 참여기관들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적인 협업추진체계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적인 과제발굴과 성과를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인센티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은 1점, 협조기관은

0.3점을 가점으로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실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실익에 대한 인식수준을 포함하여 앞서 관찰한 다른 특성관련 설문에 대한 응답패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기관의 담당자들이 협업과정에 관찰되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주목할 점은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간 협업 참여의 지위 차이에 따라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체계적인(systemic)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관기관 담당자들이 좀 더 긍정적인 응답과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협업과제의 제도적 인센티브 차이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수검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협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도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3.0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방향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협업 환경조성을 위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노력과 인센티브는 협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의의가 있으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3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협업을 매년 20여개 내외의 과제선정으로 축진되기에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적 협업을 기관 내부의 필요와 외부 고객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관 외부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협업발굴과 성과실현에 대해 기관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을 포함한 참여기관들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협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자 및 기관


“  
**자율적인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가 실현된다면,  
 과거처럼 조직이기주의에서 촉발된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되고,  
 그로 인해 공공기관 생태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들이 공동목적에 대한 이해와 합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협업사업이 기관 고유의 목적과 부합하여야 하며, 협업을 통해 추구하는 비전이 왜곡되지 않고 명확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협업진행 단계에서는 이익과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소통채널의 확보 역시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의 빈도도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으나, 그보다도 소통의 품질을 강화하여야 한다.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상호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의 입장에서 주관기관은 협조기관의 입장에서, 협조기관은 공동협업자로서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적 측면에서도 협업참여자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참여자 및 기관의 역할을 설계하여야 한다. 명확한 협업구조가 협업 속에 분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명확성은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을 더욱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간 관찰되는

체계적인(systematic) 차이는 인센티브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담당자들이 협업을 대하는 자세의 영향도 크다. 협조기관의 경우 공동 주관기관이라는 수평적 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지원기관이라는 인식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협조기관들도 공동 주관기관이라는 주도적 견지에서 협업에 참여하고, 주관기관들은 협조기관의 의견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협업을 정의하고 있다. 학자들이 정의한 개념들의 유사성 및 다양성과 함께 본고에서 관찰한 내용의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협업은 “참여조직들이 ① 문제의식이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② 수평적 관계에서 ③ 전략적으로 상호간 ④ 역량과 자원을 보완하여, 독자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했을 때보다 ⑤ 더 큰 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율적인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가 실현된다면, 과거처럼 조직이기주의에서 촉발된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기관간 기능이 중복되고, 그로 인해 공공기관 생태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협업이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박광국, 『공공기관 협업촉진을 위한 연구』, 2013.  
 박혜영·김정주,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3호, 한국거버넌스학회, 47-66면.  
 박한준, 『공공기관 협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

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발간, 2016.  
 이광희, 『13년 완료 협업과제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4.

Agranoff, R.,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N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4.

Kilduff, Martin and Wenpin Tsai, *Social Networks and Organiza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2003.

Kaiser, F. M., “Interagency collaborative arrangements and activities: Types, rationales, consider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Mandell, M. & Keast, R., “Evaluating network arrangements: Toward revised performance measures,”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30(4), 2007.

Mattessich, P. W. et al., *Collaboration: What Makes It Work*, Fieldstone Alliance, St. Paul, 2007.

Michael McGuire,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Assessing What We Know and How We Know I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 2006.

Page, Stephen, “Measuring Accountability for Results Interagency Collaborativ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eptember/October, 64, 2004.

Shuman & Twombly, “Collaborative Network Design Principles,” *Collaborative Business 8*, The Rhythm of Business, 2009.

〈부표 1〉 2013~2015 공공기관 협업과제 리스트

연도	연번	과제명	주관기관
2015	1	고속도로 ex-허브 추진	한국도로공사
	2	산학공 협업을 통한 자원재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한국동서발전
	3	국민맞춤형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
	4	산학연관 2인3각 물산업 한류를 꿈꾸다	한국수자원공사
	5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및 바이어 정보 공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인천공항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천국제공항공사
	7	원스톱 기술상용화플랫폼 지원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한국남동발전
	8	지역특화산업 R&D기술의 맞춤형 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기술보증기금
	9	스마트폰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모델 구성·운영	한국정보화진흥원
	10	2015년 식품컨설팅사업 '브랜드컨설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1	장애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운전 적성검사 정보 공유	도로교통공단
	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사용방지 관리체계운영	사회보장정보원
	13	예술의전당 공연의 고화질 영상화사업	예술의전당
	14	지역특성 활용한 석유산업 발전연구 협력네트워크 구축	한국석유공사
	15	항공-관광 협력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한국항공공사
	16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추진	한국장학재단
	17	유동성 애로기업 재기를 위한 협력프로그램 마련	한국자산관리공사
	18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을 위한 사업연계	한국소비자원
	20	중소농식품수출업체 맞춤형 종합수출정보지 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22	이전지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국민연금공단
	23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1	4대 사회보험 체납사업장 자격정리 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2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원스톱 조회서비스 도입	국민체육진흥공단
	3	친수공간을 활용한 관광 및 문화레저 활성화	한국수자원공사
	4	발전분야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서비스 제공	에너지관리공단
	5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과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기술보증기금
	6	지역중소기업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간 협력모델 구축	중소기업진흥공단
	7	찾아가는 벤처기업 주식업무교육·컨설팅	한국예탁결제원
	8	유망 콘텐츠 기업, 생존을 넘어 성공을 꿈꾸다	중소기업진흥공단
	9	사물인터넷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추진사업 연계	한국인터넷진흥원
	10	내수·수출초기업 수출지원 융·복합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우수중소기업 간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한국장학재단
	12	의료관광 전문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매칭 시스템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표 1〉의 계속

연도	연번	과제명	주관기관
2014	1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악공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	산업단지 미활용에너지 공동이용 확대 및 에너지셰어링 확산	에너지관리공단
	15	민간주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자금보증 프로그램 마련	한국시설안전공단
	16	학자금지원부정수급사태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조사시스템 구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7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한국시설안전공단
	18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업무 협업 강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9	가스터빈 정비예비품 공동운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한국남부발전
2013	1	전자상거래피해 상담 일원화	한국소비자원
	2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보증 활성화	한국발명진흥회
	3	문화와 기술의 융합사업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4	취업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산재근로자 재취업지원	근로복지공단
	5	지역별 무역투자 포털사이트 구축과 운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구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8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한국남동발전
	9	공공주택 공급시 서민금융상품안내 연계	한국주택금융공사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전문인력 공동육성	한국전력공사
	11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보급	세종학당재단
	12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체계 강화	한국저작권위원회
	13	글로벌 수요연계형 교육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청년층 진로지도사업 체계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6년 노벨 경제학상: 계약이론에의 공헌

## I. 서론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bmrkim@kjpf.re.kr)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노동 계약,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보험 계약, 대출기관과 대출자 사이의 신용 계약 등 현대 경제는 수많은 계약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에서 관찰되는 수많은 계약은 왜 지금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좋은’ 계약인 것일까? 보다 구체적으로, 왜 어떤 계약은 한 페이지 분량밖에 되지 않은데, 다른 계약은 수백 페이지의 긴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노동자들은 고정급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성과급의 형태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일까? 어떠한 성격을 가진 기관(ins-titutions)을 정부가 소유/운영해야 하는 것일까?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 데 있다.

경제주체들이 협력하게 하고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잘 설계된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Adam Smith는 일찍이 그의 저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회사의 소유와 운영이 분리된 경우 운영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Chester Barnard는 1938년 발표된 그의 저서 *The Function of the Executive*에서 기업 내에서의 인센티브 구조가 피고용인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Barnard의 책이 발표된 이후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나, 대부분 직관적인 설명과 주장에 그치고 있어 그 한계점이 명확하였다. 1970년대 이후, 기존의 한계점을 뛰어넘은 이론 모형을 통한 방법론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는데,<sup>1)</sup> Bengt Holmström

1) 1970년대 이론 모형을 통한 접근을 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James Mirrless의 “The Theory of Moral Hazard and Unobservable Behaviour, Part I”이 있다.

“  
**Bengt Holmström과  
 Oliver Hart는 계약이론 분야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한 공로로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Oliver Hart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계약에 대한 문제에 접근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이다. 이들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계약이론 분야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한 공로로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sup>2)</sup> 이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실생활에서 관측되는 계약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주었으며, 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Bengt Holmström과 Oliver Hart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이들의 주요 연구 업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의 연구는 계약이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나, 본고에서는 계약이론 분야에서의 대표적 연구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sup>3)</sup>

## II . 완전 계약과 Bengt Holmström

잘 설계된 계약은 일치하지 않는 이익을 추구 하는 경제주체들 사이의 갈등을 완화 또는 해결해 주며,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계약 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최적의 계약 (optimal contract)은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Holmström 교수의 계약이론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성과에 따른 보상: 유익원칙(Informativeness Principle)

전통적인 계약 문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인(principal)은 대리인(agent)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길 원한다. 하지만 주인은 대리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없어, 대리인은 주인이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관측 불가능한 행동 (hidden action)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주인은 관측가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성과 척도와 연동된 보상 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성과급 체계라고 한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단점도 명확하다. 많은 경우 성과 척도와 노력의 정도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대리인의 노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Holmström은 여러 연구에서 간단한 모형을 사용하여 최적 계약의 설계 문제에 대해 접근하였는

2) [https://www.nobelprize.org/nobel\\_prizes/economic-sciences/laureates/2016/](https://www.nobelprize.org/nobel_prizes/economic-sciences/laureates/2016/) 접속일자: 2016. 10. 17.

3) 주요 연구 업적 및 설명을 위한 간단한 모형은 Economic Science Prize Committee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2016)를 참고하였다.

데, 본고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기본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Holmström의 연구의 핵심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대리인 A는 1기 동안 주인 P를 위해 일한다. A는 노력 수준  $a$ 를 정할 수 있는데  $a$ 는  $[a, \bar{a}]$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대리인에게는 노력 수준  $a$ 에 따른 비용  $c(a)$ 가 발생하게 되는데 비용은 노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대리인의 노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주인의 이득이 증가하는데, 구체적으로 주인의 이득  $\beta = b(a) + \epsilon$ 의 형태를 띠며  $b(a)$ 는  $a$ 의 증가함수라고 가정한다.  $\epsilon$ 은 대리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이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의미한다. 주인은 결과가 나온 후 대리인에게 보상  $t$ 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인은 위험 중립적이고 대리인은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주인과 대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은 기대효용 함수를 갖는다.

$$U_p = b(a) - E(t)$$

$$U_A = -c(a) + E(t) - \frac{1}{2}r \text{Var}(t)$$

여기서  $r$ 은 위험회피 모수를 의미한다.<sup>4)</sup>

이러한 모형하에서 최적의 계약은 어떠한 모습일까? 만약 대리인의 노력 수준  $a$ 가 관측 가능하고, 노력 수준  $a$ 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보상 수준  $t = t(a)$ 를 계약에 명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을 지킬 것을 약속할 수 있다면, 사회 후생 ( $U_p + U_A$ )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양자 간의 계약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인의 노력 수준( $a$ )을 주인이 관측할

“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대리인의 노력을 사전적으로  
완전히 기술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대리인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입증하기 힘들 수 있다.  
”

수 있다는 가정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관측할 수 없으며, 고용인은 피고용인이 평소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는지 완벽히 알 수 없다. 또한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대리인의 노력을 사전적으로 완전히 기술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대리인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입증하기 힘들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인이 보상 수준을 대리인의 노력( $a$ )과 직접 연관시킬 수 없는 경우, 주인은 보상 수준을 불완전한 성과 척도( $\beta$ )에 연관시키게 된다. 즉 보상 수준은  $t = t(a)$ 가 아닌  $t = t(\beta)$ 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성과 척도가 불완전한 이유는 성과 척도가 대리인의 노력 수준뿐 아니라, 외부의 요인( $\epsilon$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beta = b(a) + \epsilon$ ). 즉, 대리인은 ‘운’에 의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더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어떻게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최적일까? Holmström과 Steven Shavell은 1979년 각자의 독립된 논문<sup>5)</sup>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이들이 제시한 해답을 앞서 제시된

4)  $r > 0$ 은 위험회피 모수로서, 높은 값을 가질수록 더 위험회피적임을 의미한다.

5) Holmström(1979)과 Shavell(1979)

“  
**유익원칙에 의하면**  
**대리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이를 모두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나은 계약인 것이다.**  
 ”

모형을 통해 설명해보자.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보상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 성과 척도( $\beta$ ) 이외에 다른 정보( $s$ )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할까? Holmström과 Shavell의 답은 새로운 정보가 외부의 요인( $\epsilon$ )과 상관관계가 있어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에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유익원칙(*informativeness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이를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문 경영인(대리인)의 노력 수준은 회사의 주가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회사의 주가가 높은 경우 소유주(주인)는 전문 경영인이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회사의 주가는 당시의 거시 경제적 상황과 같은 외부의 요인( $\epsilon$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소유주가 회사의 주가만을 이용해 전문 경영인에 대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전문 경영인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더 많은 보수를, 경기가 불황일 때는 더 적은 보수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익원칙에 의하면 만약 거시경제적 상황과 같은 외부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이를 보상 수준과 연계시켜 보다 나은 계약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기업의 주가’라는 새로운 정보( $s$ )를 생각해보자. ‘다

른 기업의 주가’는 외부요인( $\epsilon$ )과 상관관계를 가진 정보를 담고 있다. 전문경영인이 일하고 있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높은 경우, 해당 기업의 높은 주가는 전문경영인이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른 기업의 주가’라는 새로운 정보를 보상 수준( $t$ )과 연계하는 경우 전문경영인의 노력( $a$ )과는 상관없이 성과 척도( $\beta$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전문 경영인의 노력 수준을 보다 잘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유익원칙에 의하면 대리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이를 모두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나은 계약인 것이다.

Holmström과 Shavell의 1979년 논문이 발표된 후, 실생활에서 관측되는 계약이 유익원칙이 예측하는 형태의 계약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논문 하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기업 CEO들의 계약형태를 실증 분석한 Bertrand and Mullainathan(2001)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유익원칙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CEO들은 ‘운’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유익원칙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정보( $s$ )를 계약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 요인을 제거하여 CEO의 노력 수준을 추정하는 계약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지배주주(dominant shareholder)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Bertrand and Mullainathan(2001)에 의하면 ‘진정한 주인’이 있는 회사의 경우 유익원칙이 보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 2. 유익원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팀워크, 경력에 대한 고려, 멀티태스킹

앞에서 기술한 Holmström의 1979년 논문은 성과 연봉과 최적 계약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하지만 그가 1979년 논문에서 고려한 모형은 지나치게 단순하여 현실의 중요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익원칙에 의하면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는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관측되는 많은 수의 계약은 보다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의 괴리는 1979년 논문에서 제시된 모형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특정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Holmström의 1979년 논문은, Holmström 교수 본인과 많은 경제학자들의 후속연구로 이어졌는데 본 장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가. 팀워크(Teamwork) 모형

앞서 기술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도덕적 해이 모형의 경우, 한 명의 주인과 한 명의 대리인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한 명 이상의 대리인들이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만약 각 대리인의 성과를 각각 측정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성과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각 대리인은 다른 대리인에게 무임승차(free-ride)할 유인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별 대리인에게 최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다. 전체적인 성과만 측정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한 대리인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공동작업하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in teams)라고 한다. Alchian and Demsetz(1972)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

“  
Holmström은 팀 전체의 노력에 의해 달성된 결과물을 나눠 갖는 형태의 계약은 언제나 비효율적임을 모형을 통해 입증하고, 개별 대리인에게 올바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제3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요한 요소로 ‘모니터링’을 제시하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 Holmström은 1982년 논문에서 ‘모니터링’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공동작업하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경우 제3자를 계약에 포함시킴으로써 각 대리인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olmström은 논문에서, 팀 전체의 노력에 의해 달성된 결과물을 나눠 갖는 형태의 계약은 언제나 비효율적임을 모형을 통해 입증하고, 개별 대리인에게 올바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제3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팀 전체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이 주인과 대리인이 사전적으로 합의한 특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결과물에 따른 보상을 제3자에게 모두 주는 계약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계약하에서, 각 개별 대리인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경우 보상이 ‘0’이 될 수 있다. 즉 ‘가혹한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개별 대리인들은 무임승차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Holmström은 논문에서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무임승차의 유인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사실을 이론 모형을 통해 보이고 있다. 즉, 공동작업하에서의 최적 계약은 유익원칙의 예측과는 부합하지 않은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  
**대리인이 본인 자신의 경력을  
 고려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  
 대리인은 고정급 체계하에서도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긴다.**  
 ”

나. 경력에 대한 고려(Career Concerns)

대리인이 본인 자신의 경력을 고려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 대리인은 고정급 체계하에서도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긴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Eugene Fama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1980년 발표한 논문에서 노동자가 본인 경력에 대한 고려를 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 성과급 보상 체계 없이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olmström은 1982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직관적 주장을 모형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sup>6)</sup>

Holmström의 1982년 논문의 모형에서, 대리인의 현재 성과는 그의 ‘노력(effort)’과 ‘능력(ability)’에 의해 좌우되며 이 둘 모두 관측불가능하다고 가정된다. 현재 좋은 성과를 보인 대리인은 주인과 잠재적인 고용인에게 보다 매력적이 되는데, 좋은 성과를 보인 대리인은 능력이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가정하에서, 현재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미래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게 되고, 따라서 성과급 체계가 없는 경우에도 대리인은 열심히 일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대리인의 노력 수준이 본인

의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리인은 자신의 경력 초반에는 과도하게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는 반면, 경력 후반이 될수록 그 유인이 저하된다. 따라서 최적 계약을 설계함에 있어 주인은 대리인의 이러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모형틀을 통해 도출되었던 유익원칙이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해주고 있다. 경력 초반부에 있는 대리인들은 강한 성과급 체계 없이도 열심히 일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계약서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ibbons and Murphy(1992)는, 만약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은퇴를 앞둔 대리인에게는 강한 보상 체계를, 경력 초반부에 있는 대리인에게는 약한 보상 체계 또는 고정급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보인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은퇴를 앞둔 기업 CEO들의 보상 체계가 성과에 가장 크게 연동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즉, 경력에 대한 고려가 약한 은퇴를 앞둔 CEO들에게는 보상을 성과와 연동시켜 열심히 일할 유인을 주는 것이 최적이라는 것이다.

6) 논문의 제목은 “Managerial Incentive Problems: A Dynamic Perspective”이며 1982년 발표되었으나, 17년 후인 1999년에서야 *Review of Economic Studies* 저널에 게재되었다.

#### 다. 멀티태스킹(Multi-tasking) 모형

앞서 기술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도덕적 해이 모형의 경우, 대리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일차원적(one-dimensional)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노력’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많은 경우, 대리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기존의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보다 복잡하고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다. 또한 대리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항목이 하나 이상인 경우, 그 중 일부는 비교적 관측 또는 입증하기 쉬운 반면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주인이 관측/입증하기 쉬운 대리인의 행동에만 보상 수준을 연계시키는 경우, 대리인은 이러한 행동에만 모든 노력을 쏟게 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보상 체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교사의 역할은 1) 학생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과 2) 교과서의 내용과 지식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만약 교사가 받는 보상이 학생의 시험 성적에만 연동되어 있는 경우, 교사는 주어진 역할 중 전자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후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유인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직관적인 생각을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모형으로부터 결과를 도출한 것이 Holmström이 Paul Milgrom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와 공저한 1991년 논문이다. 두 교수는 이 논문에서, 주인이 대리인이 다목적에 대하여 “균형 있게” 노력해줄기를 원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상황을 상정해보자. 대리인은 두 가지 종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며( $a_1$  과  $a_2$ ) 각 행동은 두 종류의 성과 척도를

“  
Holmström과 Paul Milgrom은  
1991년 논문에서  
주인이 대리인이 다목적에 대하여  
“균형 있게” 노력해줄기를 원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

만들어낸다( $\beta_1$ 과  $\beta_2$ ). 두 가지의 행동 중  $a_1$ 은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힘든 반면,  $a_2$ 는 성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마지막으로, 작업 간 대체성이 있어 한 작업에 대한 노력 수준의 증가는 다른 작업에 대한 노력 수준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상정한다. Holmström과 Milgrom의 1991년 논문에 의하면, 만약  $a_1$ 이 주인 입장에서 중요한 경우, 최적의 계약은 보상 체계를 두 가지의 성과 척도와 ‘매우 약하게’ 연동시키는 것이다. 비교적 성과를 측정하기 쉬운  $a_2$ 에만 보상 체계를 연동하는 경우, 대리인은 대부분의 노력을 두 번째 항목의 일에만 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과를 측정하기 힘든 대리인의 행동 항목이 하나만 있어도, 전체적인 보상 체계를 성과와 연동시키지 않는 것이 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유익원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교사의 예로 돌아간다면, 만약 학생의 창의성 발달과 인성 확립이 매우 중요한 경우, 교사의 보상 체계를 학생의 시험 성적과 연동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교사의 보수를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관측되는 계약의 형태는 두 교수의 주장과 일치할까? 1991년 Holmström과 Milgrom이 공저한 논문이 발표된 이래, 많은 경제

“  
**1991년 멀티태스킹 논문은  
 중요한 일에 대한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측정하기 힘든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구조를 갖도록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학자들이 멀티태스킹 모형에서 예측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1991년 멀티태스킹 논문의 모든 결과는 대리인이 성과급 체계가 강한 일에 성과급 체계가 약한 일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 양식이 실제로 관측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Glewwe, Ilias, and Kramer(2010)는 실험을 통해 교사들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이 학생들의 시험성적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gstresser and Philippon(2006)은 보상이 주가와 옵션 등에 강하게 연동된 CEO일수록,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행

위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논문들이 1991년 논문이 전제로 하고 있는 행동양식을 실증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1991년 멀티태스킹 논문은 중요한 일에 대한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측정하기 힘든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 구조를 갖도록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Brown(1990)은 실증 자료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였는데, 저자는 노동자의 작업 범위와 보상 체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가 좁은 범위의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종류의 작업을 맡아서 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고정급으로 보상 체계가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많은 종류의 작업을 맡아서 하는 경우, 한정된 노력을 작업간에 배분하게 되고 만약 그 중 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힘들다면 Holmström의 멀티태스킹 논문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보상 체계를 성과와 연동시키지 않는 것이 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표 1> 모형에 따른 최적 계약의 형태**

모형	최적 계약의 형태
기본 모형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계약에 포함하여 보상 체계와 연동하는 강한 성과급 체계를 적용
팀워크 모형	팀 전체의 성과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경우 각 대리인의 보상이 '0'이 되게 하는 가혹한 처벌 (제3자에게 모든 이익을 이전)을 통해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여 효율성 제고
경력에 대한 고려 모형	대리인이 스스로 노력할 유인이 큰 경력 초반부에는 약한 성과급 체계 또는 고정급 체계를, 경력 후반부에는 강한 성과급 체계를 적용
멀티태스킹 모형	대리인의 노력 수준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 해도 이를 무시하고 약한 성과급 체계 또는 고정급 체계를 적용(여러 작업 중 주인에게 중요한 작업에 대한 대리인의 노력을 측정하기 힘든 경우를 가정)

### III. 불완전 계약과 Oliver Hart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는 계약 후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에 대해 사전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에 그 기술에 대해 계약에 기술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이 많은 종류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 대리인이 맡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 하나하나를 모두 계약서에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 이를 계약의 불완전성(incomplete contract)라고 부른다.

1980년대 중반 Oliver Hart와 몇몇 경제학자들은<sup>7)</sup> 불완전 계약하에서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해답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돌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누가 결정권(decision right)을 가질 것인가를 적절히 배분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Hart의 연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민영화 등 경제학 분야뿐 아니라 정치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장에서는 Hart의 불완전 계약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업적을 설명하고, Hart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  
완전한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적절히 배분된 결정권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불완전 계약 분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발견일 것이다.  
”

#### 1. 계약의 불완전성과 결정권의 배분

완전한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적절히 배분된 결정권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불완전 계약 분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발견일 것이다. 즉 결정권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계약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결정권의 배분이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경우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간단한 모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완전 계약을 설명할 때 고려하였던 모형을 다시 떠올려보자. 모형을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 외부 요인( $\epsilon$ )은 없다고 가정하면, 대리인은  $a$ 의 노력 수준을 통해 주인에게  $\beta=b(a)$ 의 가치를 가진 결과물을 생산해낸다. 하지만 이 결과물을 주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v(a)$ 만큼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하자. 여기서 대리인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  $v(a)$ 는 결과물을 통해 주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  $b(a)$ 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대리인의 노력 수준  $a$ 와 성과척도  $\beta$ 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불완전 계약), 대리인이 생산해 낸 결과물에 대한 결정권(소유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먼저 주

7) 대표적으로 Sanford Grossman과 John Moore는 불완전 계약 분야를 깊이 연구하여 Oliver Hart와 다수의 논문을 공저하였다.

“  
**소유권을 적절히 배분하면**  
**불완전 계약하에서도 사회적 최적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인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계약에 사전적으로 명시되는 경우, 대리인은 좋은 결과물을 생산하더라도 이득을 챙길 수 없어 노력 수준을 최소한으로 선택하게 된다( $a=\underline{a}$ ). 반면 대리인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 최소  $v(a)$  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물은 주인에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 $b(a) > v(a)$ ) 결론적으로 대리인은 주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sup>8)</sup>

$$t = v(a) + \frac{1}{2}(b(a) - v(a))$$

따라서 대리인은  $-c(a) + \frac{(b(a) + v(a))}{2}$  를 극대화하는 노력 수준( $a$ )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주인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의 노력 수준( $\underline{a}$ )보다는 크고 사회적으로 최적인 노력 수준( $a^*$ )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다. 이처럼 소유권을 적절히 배분하면 불완전 계약하에서도 사회적 최적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불완전 계약이론의 적용: 기업 이론, 민영화, 금융 계약

가. 기업 이론(Theory of the Firm)

불완전 계약하에서의 소유권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합병과 투자 유인과 관련된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Hart는 기업의 합병 및 적정 수준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중요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sup>9)</sup> 그의 업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분야의 주요 연구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다.

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Ronald Coase는 1937년 발표한 논문에서 기업의 내부 거래의 경우 명시적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Coase는 기업의 존재 의미는 거래 비용의 축소를 통한 효율적 거래에 있다고 주장했다. Coase의 연구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업의 존재 이유, 기업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Oliver Williamson은 1970~80년대 발표한 여러 논문을 통해 불완전 계약하에서의 기업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Hart 역시 불완전 계약하에서의 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큰 연구 업적을 남겼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다. Benjamin Klein, Robert Crawford, Armen Alchian은 1978년 발표한 논문에서 계약이 완전치 못할 경우 기업들이 충분치 못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론 모형을 통해

8)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인과 대리인의 협상력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9) 본고에서는 Hart 교수가 Sanford Grossman과 1986년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게재한 논문 “The Cost and Benefits of Ownership: A Theory of Vertical and Lateral Integration”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986년 논문을 발전시켜 3명 이상의 경제주체(multi-agent)와 3개 이상의 자산(multi-asset)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Hart 교수가 John Moore와 공저하여 1990년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게재한 논문 “Property Rights and the Nature of the Firm” 역시 불완전 계약 분야에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긴 논문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지적하였다. 저자들은 불완전 계약하에서는 계약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투자(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가 적정 수준 이하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이른바 홀드업 문제(hold-up problem)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는데, 계약상 투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투자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협상력만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상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두 기업이 하나가 된다면, 즉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기업이 합병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한 것이 Hart가 Sanford Grossman과 공저하여 1986년 발표한 “The Cost and Benefits of Ownership: A Theory of Vertical and Lateral Integration”이다.

Grossman과 Hart의 1986년 논문은 기업 합병의 이득뿐 아니라 비용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설명한 첫 번째 논문으로 꼽힌다. 이들은 기업이 합병하지 않는 것이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누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앞서 기술한 주인-대리인 모형을 생각해 보자. 대리인은 인적 자본(‘지식’)에 대한 투자 수준( $a$ )을 결정하는 데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과 물리적 자본(‘기계’)이 모두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가지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모형 안에서 계약은 불완전한데, 즉 투자

“  
Grossman과 Hart의  
1986년 논문은  
기업 합병의 이득뿐 아니라  
비용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설명한  
첫 번째 논문으로 꼽힌다.  
”

수준과 투자 후의 이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을 통해 미리 확정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기계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경우와 대리인에게 있는 경우의 결과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주인이 기계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최종재의 생산을 위해서는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주인과 대리인이 최종재로부터 주인이 얻는 가치( $b(a)$ )를 반반씩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자. 즉, 대리인이 주인으로부터 얻는 보상  $t = \frac{b(a)}{2}$ 가 되고 대리인은  $\frac{b(a)}{2} - c(a)$ 를 극대화하는 수준( $a_A$ )에서 투자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대리인이 기계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를 살펴 보자. 이 경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대리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v(a)$ 만큼의 보상은 보장된다. 가정에 의해  $b(a) > v(a)$ 이기 때문에 주인과 대리인은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이 주인으로부터 얻는 보상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띈다.

$$t = v(a) + \frac{b(a) + v(a)}{2}$$

“  
**한 경제주체에게  
 더 많은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으로 특정할 수 없는 투자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동시에  
 다른 경제주체의 유인은 감소시킨다.  
 따라서 더 중요한 투자를 행하는 쪽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최적이 된다.**  
 ”

따라서 대리인에게 기계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  $v(a) + \frac{(b(a)+v(a))}{2} - c(a)$ 를 극대화하는 수준 ( $a_A$ )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두 가지 경우의 투자 수준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a_P < a_A < a^*$$

즉, 지금 다뤄진 모형에서는 대리인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때 사회적 최적 수준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장해준다. 그렇다면 현재 고려하고 있는 모형에서 왜 대리인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일까?

Grossman과 Hart의 1986년 논문에 의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가는 생산요소가 상호 보완적(complementary)인지 여부와 큰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생산요소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하나의 생산요소만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한계 이익이 작은 경우, 합병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다(주인 또는 대리인이 모든 생산요소를 소유). 하지만 하나의 생산요소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한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합병

하지 않는 것이 최적이 된다. 저자들은 또한 합병할 경우 누가 생산요소를 소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계약으로 특정할 수 없는(non-contractible) ‘중요한’ 투자를 행하는 쪽에 소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결론이다. 한 경제주체에게 더 많은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으로 특정할 수 없는 투자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동시에 다른 경제주체의 유인은 감소시킨다. 따라서 더 중요한 투자를 행하는 쪽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최적이 된다.

앞의 예로 다시 돌아가면, 모형에서는 최종재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지식’과 ‘기계’가 모두 필요한 완전 보완적인 상황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합병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왜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모든 생산요소를 소유하는 것이 최적인 것일까? 계약으로 특정할 수 없는 중요한 투자를 하는 쪽(‘지식’에 대한 투자)이 바로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Grossman과 Hart의 1986년 논문에 의하면, 더 중요한 투자를 하는 경제주체에게 소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중 두 가지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Woodruff(2002)는 멕시코 신발산업을 분석하였는데, 유행을 많이 타는 신발의 경우 신발회사가 직접 소매점을 운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유행을 많이 타는 신발일수록 소비자에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하고 주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행위는 계약으로 특정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발회사가 공장뿐 아니라 소매점도 같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구조가 최적인 것이다.

Shepard(1993)는 주유소의 소유 구조를 분석

하였다. 저자는 주유소와 자동차 수리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주유소의 소유권을 운영자(manager)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찾아냈다. 즉, 자동차 수리 서비스의 질은 측정하기 힘들고 계약으로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sup>10)</sup>

“  
**비용 절감이 질적 향상에 미치는  
 역의 효과가 큰 기업일수록 정부가 운영하고,  
 이 효과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민영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된다.**  
 ”

#### 나.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Privatization)

불완전 계약과 소유권에 대한 Hart와 다른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많은 분야에 적용되었는데,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계약을 통해 모든 것을 특정할 수 있는 완전 계약하에서는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는가 민간이 소유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불완전 계약하에서는 소유권을 가진 쪽이 돌발 상황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누가 기업을 소유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해진다. Oliver Hart, Andrei Shleifer, Robert Vishny는 1997년 발표한 논문에서 ‘계약의 불완전성’ 개념과 Holmström과 Milgrom의 ‘멀티태스킹’을 결합하여 민영화 문제를 분석하였다. 논문은 이 중요한 두 개념을 결합한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고, 엄밀한 분석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모형의 자세한 부분과 결론 도출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sup>11)</sup>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대리인이 ‘비용 절감(cost innovation)’과 ‘질적 향상(quality innovation)’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혁신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 논문의 모형을 통해 저자들이 도출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만약 정부(주인)가 소유권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적 기업(대리인)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보다 두 가지 방식 모두의 혁신에 대한 유인이 적게 된다.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대리인의 비용 절감 또는 질적 향상에 기울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소유권이 사적 기업에 있는 경우 노력에 따른 보상이 보장된다. 하지만 사적 기업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 비용 절감에 대한 유인이 너무 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리인은 ‘비용 절감’에 쏟는 노력이 ‘질적 향상’을 저하시키게 되는 역의 효과(adverse effect)를 무시한 채 의사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비용 절감이 질적 향상에 미치는 역의 효과가 큰 기업일수록 정부가 운영하고, 이 효과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민영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된다. 저자들은 비용 절감이 질적 향상에 미치는 역의 효과가 큰 예로 미국의 민영 교도소 시설의 질이 관영 교도소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교도소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동일한 관측에 대해 Holmström과 Milgrom이 공저한 1991년 “멀티태스킹” 논문의 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자동차 수리와 주유 행위라는 두 가지의 작업 사이의 균형 잡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소유권을 운영자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11) 관심 있는 독자는 1997년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게재된 “The Proper Scope of Government: Theory and an Application to Prisons” 을 찾아보기 바란다.

“  
**그렇다면 현실에서 관측되는  
 금융 계약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일까?  
 불완전 계약이론은 이에 대한  
 답도 제시해준다.**  
 ”

**다. 금융 계약(Financial Contract)**

불완전 계약에 대한 연구는 금융 계약 분야에도 적용되어 많은 학문적 발전을 이끌어냈다. 금융 계약의 주목적은 기업가와 운영자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관측되는 금융 계약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일까? 불완전 계약이론은 이에 대한 답도 제시해준다.

현실에서 기업가 또는 운영자가 투자자와 금융 계약을 맺는 경우를 살펴보자. 기업이 이윤을 내고 건실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대부분 기업가 또는 운영자가 가진다. 이들은 이러한 통제권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가 또는 운영자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는 사전적 계약이 아닌, 잔여 자산에 대한 통제권의 이전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 즉 평상시에 기업가 또는 운영자에게 있던 통제권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투자자는 잔여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하여 이를 청산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 계약의 전형적인 구조는 불완전 계약과 주인-대리인의 인센티브와 깊은 관련이 있다.

평상시 상황에서 기업가 또는 운영자에게 통제권이 주어지는 것은 계약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


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이다. 투자자는 이들의 행동을 세세하게 계약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기업가 또는 운영자의 이익을 최대한 일치시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기업가 또는 운영자가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경우도 계약의 불완전성이 성립한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빌려준 돈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계약으로 특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돌발상황 역시 소유권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기업가 또는 운영자에게 있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투자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다.

불완전 계약을 통한 접근 방식은 실생활에서 관찰되는 금융 계약이 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금융 이익을 얻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달성된 이익의 배분,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 갈등이 생겼을 때의 해결 방식,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론적 틀을 불완전 계약 접근 방식은 제공해주고 있다.

**IV. 결론**

계약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결과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나은 계약의 설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큰 의의를 지닌다. Bengt Holmström과 Oliver Hart의 연구는 계약이론 전반에 걸쳐 있다. 이들의 연구는 실증적인 동시에 규범적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계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계약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통찰력 있는

연구는 그 자체로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후속 연구의 밑거름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경제학의 다양한 분야 이외에도 행정학, 법학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어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Holmström과 Hart의 연구는 학문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 경제와도 맞닿아 있다. 본고에서 소개한 이들의 연구는 길게는 40년에서 짧게는 20년 전에 발표된 것들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직군에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 기업이 정신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금융 계약의 설계 등 현재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안에 대해 금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Holmström과 Hart의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Alchian, A. and H. Demsetz,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Issue 5, 1972, pp. 777-795.
- Barnard, C., *The Function of the Execu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 Bertrand, M. and S. Mullainathan, "Are CEOs Rewarded for Luck? The Ones without Principals A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6, Issue 3, 2001, pp. 901-932.
- Bergstresser, D. and T. Philippon, "CEO incentive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80, Issue 3, 2006, pp. 511-529.
- Brown, C., "Firms' Choice of Method of Pa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3, Issue 3, 1990, pp. 165S-182S.
- Coase, R.,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Issue 16, 1937, pp. 386-405.
- Economic Sciences Prize Committee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Oliver Hart and Bengt Holmström: Contract Theory," [https://www.nobelprize.org/nobel\\_prizes/economic-sciences/laureates/2016/advanced-economicsciences2016.pdf](https://www.nobelprize.org/nobel_prizes/economic-sciences/laureates/2016/advanced-economicsciences2016.pdf), (검색날짜: 2016.10.17.)
- Fama, E.,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8, Issue 2, 1980, pp. 288-307.
- Gibbons, R. and K. Murphy, "Optimal Incentive Contracts in the Presence of Career Concern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0, Issue 3, 1992, pp. 468-505.
- Glewwe, P., N. Ilias, and M. Kremer, "Teacher Incentive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2 Issue 3, 2010, pp. 205-227.
- Grossman, S. and O. Hart,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A Theory of Vertical and Lateral Inte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4, Issue 4,

- 1986, pp. 691–719.
- Hart, O. and J. Moore, “Property Rights and the Nature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Issue 6, 1990, pp. 1119–1158.
- Hart, O., A. Shleifer, and R. Vishny, “The Proper Scope of Government: Theory and an Application to Prison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Issue 4, 1997, pp. 1127–1161.
- Holmström, B.,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0, Issue 1, 1979, pp. 74–91.
- \_\_\_\_\_, “Moral Hazard in Teams,”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3, Issue 2, 1982, pp. 324–340.
- \_\_\_\_\_, “Managerial Incentive Problems: A Dynamic Perspectiv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6 Issue 1, 1999, pp. 169–182.
- Holmström, B. and P. Milgrom, “Aggregation and Linearity in the Provision of Intertemporal Incentives,” *Econometrica*, Vol. 55, Issue 2, 1987, pp. 303–328.
- \_\_\_\_\_, “Multitask Principal–Agent Analyses: Incentive Contracts, Asset Ownership, and Job Design,”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7, Issue special issue, 1991, pp. 24–52.
- \_\_\_\_\_, “The Firm as an Incentive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Issue 4, 1994, pp. 972–991.
- Klein, B., R. Crawford, and A. Alchian, “Vertical Integration, Appropriable Rents, and the Competitive Contracting Process,”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 21, Issue 2, 1978, pp. 297–326.
- Mirrlees, J.A., “The Theory of Moral Hazard and Unobservable Behaviour, Part I,” *Mimeo, Oxford, reprinted in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6 Issue 1, 1975, pp. 3–21.
- Shavell, S., “Risk Sharing and Incentives in the Principal and Agent Relationship”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0, Issue 1, 1979, pp. 55–73.
- Shepard, A., “Contractual Form, Retail Price, and Asset Characteristics in Gasoline Retailing,”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24, Issue 1, 1993, pp. 58–77.
- Williamson, O.,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Free Press, 1985.
- Woodruff, C., “Non-contractible Investments and Vertical Integration in the Mexican Footwear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20, Issue 8, 2002, pp. 1197–1224.

# 공공정책포럼



## ■ 제48회 공공정책포럼

###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 개요

- 주 제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 일 시            2016년 11월 4일(금),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A(1F)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송대희 좌장
- 08:00~08:40   주제 발표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08:40~09:30   자유토론
- 09:30            폐회

\* 본 원고는 2016년 11월 4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A(1F)에서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48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 인사말씀

송대희/좌장

요즘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김영란법이 10년 전에 도입이 되어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다면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모시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제발표 요약

###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이고 김영란법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 공식 명칭은 아니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요점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호텔도 영업쪽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음식점, 화훼농가 등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처 예기치 못한 피해입니다. 경기진작을 위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들의 공직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단면에 이 법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어

오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있으면 명백히 거절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공직자 보호법이기도 합니다.

이 법이 나온 배경을 보시면, 공무원과 국민 대상으로 ‘공직사회가 부패한가?’라는 조사를 지난 몇 년간 해보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각각 공무원과 국민에게 물어본 것인데 큰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57.8%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무원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공직자들은 관행이라고 보는 부분을 국민은 다르게 생각하는 인식 차이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공무원들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면 부패한 것이 됩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168개국 중에 37위입니다. 우리나라 GDP 수준을 봤을 때 이 순위는 많이 뒤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이 탄생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할 때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직자 등이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학교와 언론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언론사는 기업체라서,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언론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바는 없지만 언론이 대가 없이 받던 협찬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협찬 이외에도 언론계에서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비용이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금액이라 문제가 됩니다.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고 협찬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언론사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우선적으로 답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보완책이 더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분들은 약 4만개 기관에 약 400만명 정도이고 공직자들과 이해관계자들까지 다 본다면 결국 이

법은 전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이 기본 인맥 질서인데 이런 것을 파괴할 수는 없지만 기존 인맥을 가지고 부정한 청탁과 부정수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청탁은 1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청탁인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위, 권한 등을 남용하는 경우가 부당청탁에 해당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집 짓게 해달라고 하는 것, 또 요즘 문제되는 학점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이 취업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나오지 않고 학점을 달라고 할 때 담당 교수가 수업에 오지 않은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줬다면 교수님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청탁법이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씨랜드 사건입니다. 19명의 어린이가 운명을 달리한 이곳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건물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어린이가 머물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담당 이모계장은 부정 청탁을 받고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전 사전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재를 올렸으나 결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씨랜드의 인·허가와 행정기관의 부실한 감독과 점검은 검은 돈 거래의 결과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청탁금지법」이 그때 있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속기관장, 수사기관, 저희 권익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이라고 무조건 금지된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지 예외사유 7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상식적 수준인데 2번이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적 특정 행위요구는 은밀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

시는 부분이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입니다. 이 조항에 관해 언론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예외로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선출직 위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입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 방문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직무관련성 여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국회의원이 만났을 때 입법 관련된 일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기업과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들과는 직무관련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포럼도 민과 관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공식적인 행사이지 않습니다. 이런 공식회사는 조금 넘더라도 괜찮습니다. 민과 관이 혼재된 모임이 많은데, 회비로 운영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질의가 9,400건이 넘었고, 올 연말까지 가면 만 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이 들어오면 소속기관장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시면 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게는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 지정/공동수행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품은 청탁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탁은 한 번 거절할 수 있는데, 금품은 거절할 수도 없고 받는 그 즉시 처벌받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금품 등 수수에 해당이 됩니다. 100만원 이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다면 역시 안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그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되고 그럴 경우 신

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자식이나 공직자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은 되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됩니다. 그 분들이 단순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면 뇌물죄가 성립되었지만 단순히 받는 것은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강의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예상 외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립학교는 100만원까지 가능하고 국공립 대학 총장이 40만원이라 교수는 20만원 내외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목적일 경우, 직무수행, 사고, 부조 목적 등은 3, 5, 10만원 범위 내에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친족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인척은 4촌까지이고 혈족은 8촌까지 괜찮습니다.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물품도 괜찮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설이 되면 누설자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해당자 둘만 아는 것이고 내부수사도 둘만의 은밀한 수사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 56건이 접수되었는데 대부분 다 내부자가 옆에서 보고 신고한 것이고 지금 12건이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법이 있는 줄 모르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지난 달 말에 공사 담당자가 공사 감리업자에게 300만원을 주었는데 감리업자가 그 돈을 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벌규정으로 제공자도 처벌받지만 법인도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개인이 속한 법인도 처벌되기 때문에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법인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수 교육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법인 제재의 중요 증거가 되는데 법인카드를 아예 몰수해버린 중소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대신 업무로 사용한 경비를 사후 처리해 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할 점이, 음식을 같이 먹을 때 3만원, 음식을 주었다면 선물이기 때문에 5만원입니다. 저번에 경찰서에 4만 5천원의 떡을 선물한 분의 경우 선물로 되어서 5만원 이하 적용이라 금액은 상관 없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사받는 사람이 조사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직무관련성이 높아 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조사는 장례식과 결혼식만 포함됩니다. 회갑, 환갑, 돌 모두 포함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10계명입니다. ①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②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③ 학교 선생님에게는 캔커피, 카네이션도 안된다. 저희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처벌가치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언론에는 카네이션 안된다는 것만 너무 부각되었습니다. 답변 취지는 아무리 꽃도 10명, 20명 늘어나고 캔커피라도 매일 받으면 안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 한 잔, 한 번 드리는 게 왜 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습니까. 스승의 날, 졸업식 등에 학생대표가 선생님에게 꽃 하나 주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교육부와 함께 행동강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④ 골프 접대는 안된다. ⑤ 헛갈리면 ‘더치페이’ 한다. ⑥ 부정청탁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한다. ⑦ 개인도 처벌되고 법인도 양벌규정이 적

용 된다 ⑧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알게 되면 신고한다. ⑨ 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만 받는다. ⑩ 부정청탁·금품 수수를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 질의응답

안완기/한국가스공사 부사장

Q: 부정한 청탁인지 정당한 정탁인지 그 기준에 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부기관장의 위치가 기관 내·외부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법 이전에는 직원들에게 '외부에서 연말쯤되면 승진시켜야 한다는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안한 사람이다'고 했었습니다. 평가라는 것 자체가 인사팀만의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사람들의 정당한 평가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 반영을 해도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소통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A: 부정청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사평정을 하시면서 승진 대상자도 아닌데 이 사람 승진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훌륭한데 나중에 인사 시 참고해라 이거는 부정청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을 관계에 있을 때(인가를 해야 하거나 평가를 해야 하는 등) 이거 잘 해달라, 잘 봐달라 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하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요청할 경우 해당됩니다. 무언가 빨리 처리해달라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김선영** /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본부장

Q: 저희 기관은 회사 생활을 할 때 유관기관 즉, 업무관련 기관을 만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현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A: 하지만 원만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진행하는 일 이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원 이하에서는 괜찮습니다.

Q: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 고맙다고 식사대접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 기부사업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위해 커피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일체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A: 주는 쪽이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 과정에 음료, 식사는 괜찮습니다. 질문을 듣다보니 「청탁금지법」 포비아란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3만원까지도 괜찮고 차량제공도 괜찮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하시되, 다만 국감 기간 중에 당일에도 피관 기관이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벗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될 뿐입니다.

Q: 실제로 어느 정도냐 하면 감독관계로 있는 부처에서 회사에 왔을 때, 제가 출장 가는 길에 역으로 내려주려고 하는데, 동승 절대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업무추진비로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 그런 차량 제공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하셔도 됩니다. 국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청탁법 때문에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공직자들이 직접 내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높이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감사 나왔을 때는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3만원 가지고 얼마든지 드십시오.

**윤왕로** / 한국공항공사

Q: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분들이 함께 테니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중에 테니스 대회를 하려고 할 때, 공공기관에 테니스 코트가 넓어서, 그걸 쓰려고 하면, 이것은 부정한 청탁입니까? 해당 공공기관에서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A: 테니스장은 무료로 동호인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철** / 기획재정부 공공국 기획관

Q: 한수원 이사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청탁금지법」을 보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총리 주재 행사를 하는데, 11시에 장들과 행사를 하고 오찬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 오찬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 사실 저희가 이러한 소극적 해석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주에 30여 가지 허용되는 걸 언론에 배포했으나 요즘 사회적 이슈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진행 중인 인허가 또는 수사 등에 관련해서 대접받지 말라는 것이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은 괜찮습니다. 공식행사를 만들면 액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정기/한국광물자원공사 기획본부관리장

Q: 현재 권익위에 질의를 한 상태이나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어 여쭙습니다. 저희가 해외사업을 하다보니 국회와 관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해외사업을 이해시키고자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을 공사 예산으로 초청하여 해외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특정 관할 국회의원 및 보좌관)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안 됩니다.

김갑순/동국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

Q: 학회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후원을 받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후원으로 심포지엄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부금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등록(기재부)되어 있습니다만, 후원 단체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정부 TF팀에서 말씀해주신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국공립단체들의 기업 협찬 문제가 있어서 허용하는 방안을 문화체육부와 강구중에 있습니다. 학회는 공직단체는 아니지만 몸담고 있는 회원들이 공직자일 뿐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익위도 행사를 할 때 학회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학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마구 돈을 받는 경우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공직단체가 아니어서 청탁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주는 것은 안 될 것으로 보이

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학교, 문화예술 분야는 재검토 중입니다.

### 마무리말씀

송대희/좌장

법 시행 초기에 질문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단일민족이다 보니 동창, 같은 핏줄 및 배경으로 시작해 끼리끼리 지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누락될 때 소외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를 법이 고쳐보겠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향후 1, 2년 시행과정을 두고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고비를 넘어야 선진사회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의한 투명한 신뢰받는 사회가 된다면 아시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회가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KDI에 있으면서 개발도상국 교육을 많이 하는데,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많은 국가들이 부정부패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초기지만, 이것이 잘 정착된다면 분명히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보호를 위한 법임을 명심하고, 법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KIP



#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동향 16-10

#### > 아메리카

##### [캐나다-탄소세 도입 발표]

- 2016년 10월 3일, 캐나다 정부는 2018년부터 캐나다 전역에 걸쳐 시행될 탄소오염에 대한 탄소세 부과 가격결정 접근방식 등에 대해 발표함
- 캐나다 지방정부(provinces and territories)는 탄소세 가격결정에 있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가격결정 방식으로는 탄소오염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오염배출권 거래방식(cap-and-trade system)’이 있음
  - 가격결정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반함
- 탄소오염에 대한 탄소세는 2018년에 최소 톤당 10캐나다달러로 시작하여 매년 10캐나다달러씩 인상 후, 2022년에는 톤당 50캐나다달러로 부과할 것을 예정함
- 오염배출권 거래방식을 선택한 지방정부는 사업자들에게 적용가능한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점차 줄여나가야 함
  - 오염 배출량 허용수준은 해마다 감축하여야 하는데, 직접 가격결정 방식에 의할 경우에 2022년까

지 감축될 수 있는 오염 배출량 수준과 2030년의 캐나다 전체 목표 오염 감축량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임

- 만일 2018년까지 지방정부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정부는 탄소세 가격결정 방식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음
-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수는 그 지방정부에 그대로 귀속될 것임
  - 해당 세수는 소비자, 근로자 및 그 가정,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쓰임
- 캐나다 정부는 탄소세제 운영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세부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협업하기로 함
- 2022년에는 상기의 전반적인 접근방식이 탄소세제 운영에 있어서 효과적인지 및 향후 탄소세 가격결정의 인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될 것임
  - 이때, 타 국가의 관련 세제도 같이 비교 분석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형민 회계사)

**[브라질-수출에 대한 특별조세환급률 인상 확정]**

- 브라질 외무부 장관은 2016년 9월 28일, 국제무역상공위원회에서 수출에 대한 특별조세환급률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힘<sup>1)</sup>
  - 외무부 장관은 국제무역상공위원회(the Council of the Foreign Trade Chamber) 회의를 마친 후 이러한 결정을 공개함
  - 따라서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 조세환급(Reintegra: Special Regime for Reinstatement of Tax Amounts to Exporting Companies)률을 현행 0.1%에서 기존의 계획대로 2017년 2%, 2018년 3%로 인상하여 적용될 예정임
-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 조세환급은 수출을 위한 공급과정에서 부과된 국세 등을 수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환급하는 것으로, 2015년 공지에서 향후 환급률 인상을 예고한 바 있었음
  - 2015년 10월 22일 공개된 공지에서는 이러한 환급율을 2016년 0.1%에서 2017년 2%, 2018년 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sup>2)</sup>
  - 환급률은 수출업자의 수출총액에 적용되는데 연방세 또는 부담금채무 등을 감면하거나 과세관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되며, 브라질의 제조업 중 약 46%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브라질-국외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지침 공개]**

- 브라질 과세관청은 2016년 10월 3일과 13일, 국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두 가지 원천징수세 지침을 공개함<sup>3)</sup>
  - 지침 1662와 1664는 각각 비거주자의 자본소득 산정 시 적절한 증거 요구사항 및 원천징수세율과 저세율 국가의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항공기 등의 임대 또는 리스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음
  - 이 지침은 공표일인 10월 3일과 13일부터 적용됨
- 지침(1662)은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자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저세율국가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약 등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의 국외로 지급되는 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함
  - 또한 이자와 특정 리스에 대한 송금이 아니라면 저세율국가에 소재하는 거주자인 소득의 수익자에게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이러한 세율의 규정은 새로운 규정의 도입이 아닌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임<sup>4)</sup>
- 또한 지침(1662)은 비거주자의 자본소득 산정 시 이용 가능하였던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정보의 사용을 폐지함
  - 이전에는 비거주자의 자본소득 산정 시 신뢰 가

1) BrazilGovNews,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Brazil(<http://www.brazilgovnews.gov.br/news/2016/09/brazilian-government-will-raise-tax-rebate-for-exporters>).

2) F. Tonanni & B. Gomes, Brazil-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3) Receita Federal do Brasil(<http://idg.receita.fazenda.gov.br/noticias/ascom/2016/outubro/receita-federal-altera-normas-a-respeito-de-irrf-sobre-remessas-ao-exterior>)

4) Ernst & Young, "Brazil amends regulations related to taxation of capital gains earned by nonresidents and cross-border payments related to rental or lease of aircraft," *Global Tax Alert*, 20 October 2016, p. 1.



능하고 타당한 증거에 따라 취득원가를 적용하되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정보의 사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비거주자는 자본소득 산정 시 반드시 신뢰 가능하고 타당한 증거에 따라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함
  - 신뢰 가능하고 타당한 증거에 따라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취득원가를 0으로 간주함
- 이는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외국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본소득 산정 시 브라질 국내화폐로 산정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임<sup>5)</sup>

■ 다른 지침(1664)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항공기 등의 임대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함<sup>6)</sup>

- 외국 항공기 임차의 경우 수익자가 저세율 국가에 존재하면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리스의 경우에는 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의 경우에도 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이는 아일랜드가 저세율국가로 분류됨에 따라<sup>7)</sup> 실제 아일랜드 회사가 운영하는 항공기를 임차하는 회사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임<sup>8)</sup>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아르헨티나-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확대]

-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2016년 9월 28일 외국인 여행객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확대하는 영을 승인함<sup>9)</sup>
  - 이 영은 외국인 여행객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호텔과 관련된 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임
  - 영은 아르헨티나 과세관청에 이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환급 적용뿐만 아니라, 60일 내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외국인 여행객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현행 법률에 따른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관련 집행규정이 재화에만 적용되고 있어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았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미국-국세청 미신고한 해외자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 권고 제공지]

- 2016년 10월 21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국세청 뉴스(IR 2016-137)를 통해 미국 납세자의 신고하지 않은 해외자산에 대하여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 및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 신고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

5) Ernst & Young, op. cit., p. 2.

6) Receita Federal do Brasil(<http://idg.receita.fazenda.gov.br/noticias/ascom/2016/outubro/receita-federal-disciplina-tributacao-de-remessa-ao-exterior-em-arrendamento-de-aeronaves>).

7) 조세동향(16-09-2호) 참조

8) Ernst & Young, op. cit., p. 2.

9) Argentina-Reimbursement of hotel services VAT to foreign tourists-entry into effect(04 Oct. 2016).

res)’를 이용하여 납세의무를 준수할 것을 재공지함

- OVDP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에 따르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신고와 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사기소 또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협에 놓여 있는 납세자를 위해서 2009년부터 고안되어 운영된 제도임
- 또한 고의성이 없는 미신고 납세자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경감하기 위하여 ‘간소화된 해외 자산 자진신고절차’를 마련하여 동시에 운영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이 제도는 적용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이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였던바, 2014년 10월 14일에 가산세를 보다 완화하고 동 절차 적용 시에 요구되던 미납세금 금액기준의 폐지 및 미국 내 거주자로부터의 대상자 확대 등 보다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
- 아울러 이번 국세청 뉴스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된 동 자발적 신고제도를 이용한 납세자 수와 이에 따른 징수된 세액(가산금 및 가산세 포함)을 발표하였음
  - OVDP의 경우, 55,800명이 넘는 납세자가 이용하였고 징수된 세액은 99억달러를 초과함
  -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절차’의 경우, 48,000여명의 납세자로부터 96,000건이 넘는 신고서 제출이 있었으며 약 4,500억달러의 세금이 징수됨
- IRS는 그동안 미국정부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노력으로 인해 납세자의 자발

적 신고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함

- 효력 발생 2년째에 접어든 ‘해외계좌 세무신고제도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와 미국과 제3국 간의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s)’의 정보망을 통해 미국 납세자 해외 금융계좌의 자발적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미국 법무부의 ‘스위스 은행 프로그램(Swiss bank program)’ 운용을 통해서도 IRS의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스위스 은행 프로그램’이란 미국과 스위스 간의 합의에 따라 세무신고를 준수하지 않을 잠재적 위험이 높은 미국 납세자의 스위스 은행 내 계좌에 대해 스위스 은행이 관련 정보를 IRS에 자동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함
- 또한 이번 국세청 뉴스에서는 ‘간소화된 해외자산 자진신고절차’ 적용에서의 신고서식 업데이트와 자발적 신고 관련 IRS내의 문의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알림
  - Form 14653과 Form 14654에 있어서의 서식 업데이트가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형민 회계사)



### [멕시코-온라인 세무조사 실시]

- 멕시코 과세당국은 2016년 9월부터 온라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sup>10)</sup>
  - 이로써 멕시코 과세당국이 보유한 납세자의 재무 정보와 납세자의 세무신고내역 사이에 불일치하는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 세무조사의 시행 후 몇 개월 동안 적어도 5,000건의 조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세무조사의 주된 목적은 납세자의 신고내역, 납세자의 납부내역과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임
  - 과세당국은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행 정보나 다른 세무신고 내역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와 납세자의 세무신고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멕시코 과세당국은 다음의 6개의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임
    - 세무신고서에 보고된 납부할 세액과 실제 납부된 세액 사이에 차이가 확인된 경우
    -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예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연말 소득세 납부세액과 비교해 추정에 의해 연중 납부하는 세금을 과소납부한 경우
    - 기부금 공제를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경우
    -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소득공제에 대해 인플레이션율을 과도하게 산정한 경우
    - 이자비용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 그 밖에 멕시코 과세당국은 조사기간, 조사수단과 조사방법 등을 포함해 온라인 세무조사를 위한 절차를 소개함
  - 조사기간은 납세자에게 온라인 세무조사를 공지한 날부터 7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세당국의 공지 및 자료요청과 납세자의 자료 제출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발생함
    - 과세당국의 공지나 자료 요청을 위해 납세자의 전자메일이 이용됨
    - 납세자의 자료제출은 납세자가 온라인에 설치된 문서제출함(drop box)에 자료를 업로드하면 과세당국이 문서제출함을 확인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에 따라 진행됨
  -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의제기와 답변도 모두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
    - 과세당국이 추정될 세금을 포함한 세무조사 사전 결과 통지내역을 문서제출함에 업로드하면 납세자가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음
    - 납세자가 기한 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사전 결과 통지내역을 납세자가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 과세당국이 납세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을 등록해야 하며, 답변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음
  - 과세당국은 조사 종료 후 40일 내에 최종 결정세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10) E&Y(<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mexican-tax-authorities-to-start-e-audits-during-september-2016>)

유럽

[스웨덴-2017년 예산안 발표]

- 스웨덴은 2016년 9월 21일 '2017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세법 개정내용을 담고 있음<sup>11)</sup>
  - 법인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금융회사의 후순위채권 이자비용 공제제한, 자영업자가 개업 이후 종업원을 신규 고용한 경우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면제 등이 있음
  - 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통근비용의 소득공제 허용기준 상향, 거주부동산 판매로 발생한 자본이득의 과세이연금액 한도 폐지 등이 있음
  - 부가가치세(vat)의 경우 소규모 물품의 수리비용에 경감세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의 VAT사업자 등록·납부 면제규정 신설 등이 있음
  - 소비세(excise tax)의 경우 맥주·와인에 대한 소비세 인상, 화학제품세(chemical tax) 신설 등이 있음
  - 이 세법개정안의 시행시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임

가. 법인세

-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에 대해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EU에서는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 계산 시 후순위채권도 자본으로 보아 계

산식에 포함함<sup>12)</sup>

- 즉, EU의 금융기관 관련 규정에서는 후순위채권을 자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어 후순위채권 관련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자영업자가 영업시작 이후 종업원을 처음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고용 이후 1년간 납부해야 할 사회보장기여금 중 퇴직연금보험료만 납부하도록 함
  -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장기여금은 퇴직연금보험료 외에 건강보험, 고용·실업세, 산재보험, 유족보험, 급여세 등이 있음
  -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함

나. 소득세

- 현행법에서는 통근비용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이번 예산안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통근비용 기준금액을 인상함
  - 기존 10,000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비용 공제하던 것에서 11,000크로나 초과 시 초과금액을 비용 공제하도록 금액기준을 인상함
- 현행법에서는 거주 부동산을 판매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이득의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한도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1,450,000크로나(약 1억원)를 한도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세이연금

11) IBFD News, Sweden-Budget for 2017 presented to parliament-details (21 Sep. 2016).

12) Regulation(EU) No.575/2013: EY, "Swedish Government proposes prohibition to deduct interest on certain subordinated debt for financial sector," 2016.06.20. 인용



액에 연 0.5%의 이자를 가산함<sup>13)</sup>

- 거주부동산은 판매 이전 1년 이상 거주하거나, 판매 이전 5년 중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부동산으로 봄
- 이 규정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한 규정으로 2016년 6월 21일부터 2020년 6월 31일 까지 매매한 거주부동산에 한해 위의 특례규정을 적용함

#### 다. 부가가치세

-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이 30,000크로나(약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를 면제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함
- 자전거, 신발, 가죽옷, 이불과 같은 가정직물(home textile)을 수선하는 경우 12%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표준세율인 25%를 적용함

#### 라. 소비세

- 특정화학제품이 포함된 전자제품 또는 바다·벽·천장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화학제품세(chemical tax)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를 통해 해당 화학제품의 대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

■ 맥주·와인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스웨덴 재무부는 지나친 주류 소비로 질병 발생 시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이 더 클 것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고자 인상하는 것이라 밝힘<sup>14)</sup>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프랑스-2017년 예산안 발표]

■ 프랑스는 2016년 9월 28일 '2017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인세, 소득세의 세법 개정내용을 담고 있음<sup>15)</sup>

- 법인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인세율 인하, 임금인상 세액공제율 인상, 신규 창업기업에 적용하는 세제혜택 연장 등이 있음
- 소득세의 경우 중산층의 세부담 감소, 원천징수 시스템으로의 전환, 부유세 과세범위 확대 등이 있음
-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입법될 예정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가. 법인세

- 2017년부터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1년까지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33.33%에서 28%로 인하할 것을 발표함<sup>16)</sup>
  - 2017년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유로 미만인 중

13) IBFD, "Country Analyses-Individual Taxation," sec 1.7.1, 접속일자: 2016.10.15.

14) 스웨덴 언론 '더로컬', <https://www.thelocal.se/20160414/why-booze-could-get-even-pricier-in-sweden>, 2016.06.14. 일자 기사, (접속일자 2016.10.13.)

15) IBFD news, France-Finance Bill for 2017-corporate taxation and VAT (03 Oct. 2016); France-Finance Bill for 2017-individual taxation (03 Oct. 2016).

16) 구체적인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9-2호 참고

소기업에 한해 과세소득의 75,000유로까지 경감 세율을 적용함

-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세액공제율을 6%에서 7%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은 2013년 4%에서 2014년 6%로 인상되었으며 2017년부터 7%로 인상될 예정임

- 신규 창업기업에 제공하는 조세혜택제도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함

- 신규 창업기업은 종업원이 250명 미만이고, 연 매출액이 5천만유로 미만, 총자산이 4천만유로 미만이면서 설립한 지 8년이 안 되는 기업을 말함
- 신규 창업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창업 이후 첫 1년차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며, 2년차에는 법인세의 50%를 공제함
  - 이외에 지방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공제금액은 창업 이후 3년 동안 합산하여 20만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 회사용 차량 중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용 한도를 확대시키고, 연비가 좋지 않은 자동차는 감가상각 한도를 축소시킬 것을 제안함

- 현행 회사용 차량의 감가상각한도는 18,300유로이나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30,000유로로 인상하고, 연비가 좋지 않은 차량은 9,900유로로 감소시킬 예정임

- 친환경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60g 이하인 차량을 말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155g 이상인 차량을 말함

- 소프트웨어의 가속상각 허용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 현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취득 후 1년간 구입가액 전액의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음
-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부터 적용됨

#### 나. 소득세

- 중산층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연소득이 25,000유로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세부담의 20%를 경감할 것을 제안함

- 부부합산 신고 시 연소득이 41,000유로 이하인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자녀 1명당 소득기준을 3,700유로씩 상향조정함

- 프랑스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부여하는 조세혜택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현재 프랑스로 외국인 근로자의 파견을 유도하고자 외국기업이 지급하는 보너스 급여와 국외원천투자소득의 50%만큼 비과세하고 있음<sup>17)</sup>
- 이번 개정안은 2016년 7월 6일 이후 프랑스에서 근로를 시작하는 외국인 근로자부터 적용할 예정임

17) IBFD, "Country Analyses—Individual Taxation," sec. 7 (접속일자 2016.10.17.)



- 2018년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주가 소득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제안함
  - 기존에는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제도는 없었으며, <sup>18)</sup> 원천징수제도 도입 시 원천징수세율은 전년도 세금신고서 또는 고용주로부터 확보한 매월 급여내역을 토대로 정함
    -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중간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세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프랑스 재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함<sup>19)</sup>
- 납세자가 부유세(wealth tax) 과세를 회피하고자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인위적으로 이전한 경우 자산을 이전하였더라도 부유세를 과세할 것을 제안함
  - 부유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총자산을 매년 1월 1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순 자산가액이 13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0.5~1.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임<sup>20)</sup>
  -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을 인위적으로 이전하였는지 여부는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름
- 상속·증여 공제제도 중 다자녀 추가공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305유로만큼 상속·증여 추가공제를 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스위스-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의회 승인]

- 스위스 의회는 2016년 9월 29일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승인함<sup>21)</sup>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015년 2월 스위스 연방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용으로 의회 토론절차를 거쳐 최근 승인됨
  - 주요내용으로 1) 매출액이 큰 국외사업자의 VAT 사업자 등록 의무 강화 및 소액 수입물품의 VAT 면세 제외, 2) 골동품, 예술품에 대해 마진과세제도 재도입, 3) 공공기관 수익사업에 대한 VAT과세 강화, 4) 온라인 출판물에도 경감세율 적용 등의 내용이 있음
  - 이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매출액 규모가 큰 외국사업자의 VAT사업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이 100,000스위스프랑(약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해야 함
  - 현행 규정에서는 전 세계 매출액이 아닌 스위스 국내 매출액이 연간 100,000스위스프랑(약 1억원)인 경우 VAT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외국사업자의 VAT가 면제되는 소액수입물품의 연간 총매출액이 100,000스위스프랑 이상인 경우 소액수입물품의 VAT면제를 허용하지 않음

18) IBFD, "Country Analyses-Individual Taxation," sec. 1.10.3.1. (접속일자 2016.10.17.)

19) EY, "French Government confirms the implementation of a withholding tax from 2018," 2016.09.

20) IBFD, "Country Analyses-Individual Taxation," sec. 5.1. (접속일자 2016.10.17.)

21) KPMG(<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6/10/tmf-switzerland-vat-provisions-approved-effective-beginning-2018.html>), 2016.09.30.

- 현행 규정에서는 국외기업이 스위스 거주 소비자에게 물품판매 시 물품에 대한 VAT과세액이 5스위스프랑 미만인 경우 VAT를 면제함
- 이는 동일물품을 판매하고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더라도 스위스 국내 사업자는 VAT를 과세하는 반면 국외사업자는 VAT가 면제되어 국내·외 기업 간 과세형평성을 해침

- 미술품, 골동품과 같은 수집품(collectibles)에 마진과세제도를 재도입함
  - 스위스는 2009년까지 마진과세제도를 운영하다가 2010년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sup>22)</sup>로 전환한 바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하에서 수집품에 대한 VAT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마진과세제도를 재도입함
- 정부기관(public bodies)의 수익사업 매출액이 100,000스위스프랑 이상인 경우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하도록 매출액 기준을 상향함
  - 현행 규정에서는 정부기관의 수익사업 매출액이 25,000스위스프랑 이상인 경우 VAT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해야 함
- 종이출판물과 다르게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책, 잡지와 같은 전자출판물에도 VAT 경감세율인 2.5%를 적용함
  - 몇몇 EU국에서도 전자출판물을 전자서비스로 보

아 표준세율을 적용할지, 문화서비스 이용으로 보아 경감세율을 적용할지 논란이 있었으며,<sup>22)</sup> 스위스는 종이출판물과 과세형평을 맞추고자 경감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벨기에-EU지침 적용, 출국세 부과 관련 세법개정안 제출]

- 벨기에 정부는 2016년 10월 7일 EU의 모회사-자회사지침 적용, 기업에 출국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sup>23)</sup>
  - EU의 모회사-자회사 지침 적용은 혼성불일치, 조세조약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며, 출국세는 특정 자본이득에 한해 과세함
  - 이 세법개정안은 2017년 중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EU는 2014년 모회사-자회사 지침(parent-subsidiary directive)을 개정하고 EU회원국들이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벨기에에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해당 지침을 적용하고자 함
  - 모회사-자회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혼성자본의 이중비과세 방지, 조세조약남용의 방지 규정 도입이 있음
  - 혼성자본의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을 자회사 소재지

22)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EU지침과 달리 전자출판물에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된 바 있음  
(출처: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137\\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137_en.htm))

23) KPMG, <https://home.kpmg.com/be/en/home/insights/2016/10/draft-law-implementing-changes-to-parent-subsidiary-directive-and-introducing-spread-payment-of-exit-tax-submitted-to-parliament.html>, 2016.10.05.



국에서 이미 비용으로 공제한 경우 모회사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함

- 혼성자본의 경우 자회사는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을 공제하고, 모회사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비과세되는 경우 이중비과세 문제가 발생함

• 조세조약남용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인위적 거래인 경우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소득에 과세함

- 예로, EU회원국 간 배당지급 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비과세하고 있어 EU회원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비EU회원국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수 있음

■ 벨기에 거주기업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청산으로 간주하여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한해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함

• 해외이전 시 기존에 보유하던 자산도 함께 이전하거나 새로 이전한 국가가 EU회원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추가 포함)인 경우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이탈리아-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세무지침 발표]

■ 2016년 9월 2일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와 관련된 세무지침을 발표함<sup>24) 25)</sup>

• 세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여 관련 거래를 다루음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C-264/14에 따르면 일반화폐를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거래는 VAT 면제 거래에 해당하며, 이미 EU 국가 중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등에서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여 VAT를 면제하고 있음

■ 상기 지침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이탈리아 VAT법<sup>26)</sup>상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외환 거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힘

• 이탈리아 과세관청에 의한 정의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통적 화폐의 대체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의 일종임

- 비트코인은 전통적 화폐 교환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재화와 용역 공급의 결제수단으로 이용가능함

• 이러한 조치는 비트코인을 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간주하는 EU VAT Directive 2006/112에 기반함<sup>27)</sup>

24) IBFD. (접속일자 2016.10.14.)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04\\_it\\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04_it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25) E&Y. (접속일자 2016.10.16.)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talian-tax-authorities-clarify-vat-treat>)

26) Article 10(1)(3) of the Italian VAT Law

27) Article 135(1)(e) of the VAT Directive 2006/112,

- 납세자는 해당 지침이 VAT 현금흐름,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전송과 장부기장 같은 보고 의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

- 만약 전통적 화폐를 가상화폐로 교환 시 마진 혹은 관련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탈리아 법인세법 목적상 고려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 [이탈리아-CFC 지침 발표]

- 2016년 9월 16일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규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한 지침을 발표함<sup>28)</sup> 29)

- 상기 지침은 2015년 9월에 발표된 「성장과 국제화 촉진 법령」<sup>30)</sup>의 CFC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함

- 이탈리아의 CFC 규정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CFC를 규제하는 블랙리스트 규정과 조세피난처 외에 소재하는 CFC를 규제하는 화이트리스트 규정이 존재하며 화이트리스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첫째, 국외 과세관할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이탈리아 관할 소재 시 납부하였을 세액의 50% 미만

- 둘째, 국외 자회사 소득 중 투자소득(passive inc

ome)의 비중이 50% 초과

- 발표된 지침은 화이트리스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판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당 지침으로 국외특수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계산과 국외특수법인을 이탈리아 내국법인이라 가정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지침에 따르면 국외특수법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려하여 실제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결정 시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고려하지 않음

- 납부한 세액 중 조세조약 적용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이와 유사한 과세처분은 포함하여 고려해야 함

- CFC 규정 적용을 위한 요건의 판단 시 이용가능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액이 산출되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28) BFD. (접속일자 2016.10.13.)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09-22\\_it\\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09-22_it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29) E&Y. (접속일자 2016.10.14.)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talian-tax-authorities-issue-clarifications-on-white-list-cfc-regime>)

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접속일자 2016.10.18.)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



### [러시아-거주자 판정 기준 발표]

- 2016년 9월 6일 러시아 재무부는 거주자 판단 규정을 발표함<sup>31)</sup>
  - 세법상 거주자의 확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의 총액 혹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공제를 기대함
-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자, 외국시민권자, 12개월 중 적어도 183일 이상 러시아에 거주하는 무국적자는 과세목적상 거주자에 해당함
  - 영토 내 체류기간의 산정은 역년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기간의 산정 시 국경관리국의 여권 도장 날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출입국 관리카드 혹은 거주지 등록서류를 이용할 수 있음
- 러시아 법인은 개인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무대리인처럼 개인에 대한 거주자 판정을 해야 함
  - 거주자 판정 시 러시아 영토에서 납세자가 체류한 총기간의 산정은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을 수취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고려되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 [노르웨이-2017년 예산안 발표]

- 2016년 10월 6일, 2017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협의과정을 거쳐 12월 중에 확정될 예정임<sup>32) 33)</sup>
  - 법인세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유류세 인상, 금융활동세 도입, R&D 비용 공제 확대, 특정차량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됨
  -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 기본공제 상향조정, 결손사업자의 부유세 납부유예, 자산주 매입 관련 조세혜택 확대 등이 제안됨
  - 기타 간접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세 인상, 도로통행세 인상, 자동차세 인화와 관련된 내용 등이 제출됨
  -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예산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가. 법인세

- 2013년부터 이어진 법인세율의 장기적 인하 계획을 따르고자<sup>34)</sup> 법인세율 인하안이 제출됨
  - 현행 법인세율 25%에 대하여 2017년에는 24%, 2018년에는 23%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라 2013년 28%였던 법인세율은 2016년 25%로 인하됨

31) IBFD. (접속일자 2016.10.14.)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07\\_ru\\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07_ru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32) IBFD. (접속일자 2016.10.16.)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06\\_no\\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06_no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33) E&Y. (접속일자 2016.10.16.)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norwegian-government-issues-2017-fiscal-budget>)

34) 노르웨이 재무부(접속일자 2016.10.19.)

([http://www.statsbudsjettet.no/upload/Statsbudsjett\\_2017/dokumenter/pdf/summary\\_nb2017\\_engelsk.pdf](http://www.statsbudsjettet.no/upload/Statsbudsjett_2017/dokumenter/pdf/summary_nb2017_engelsk.pdf))

- 화력 및 수력 발전업을 영유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유류세에 대한 세율의 인상이 포함됨
    - 정부는 현행 세율인 53%에서 1%p 인상할 것을 제안하며,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해당 유류세 인상으로 인하여 세수 중립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함
  -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y Tax, FAT)<sup>35</sup>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이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를 과세하고자 함
    - 금융활동세 부과 대상은 VAT가 면세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은행, 보험사 뮤추얼펀드, 투자회사, 금융지주사, 연금펀드 등이 포함됨
    - 인건비는 공제 대상 비용이므로 실효세율은 3.75%가 되며, 금융기관은 향후 인하될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함
  - R&D 비용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적격비용에 대한 공제 및 외부 지출 R&D 비용공제 금액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자 함
    - 비용공제 금액 한도를 기존 2천만크로네에서 2.5천만크로네로 증액, 외부 R&D비용 공제 한도를 기존 4천만크로네에서 5천만크로네로 상향조정함
    - 정부는 세계혜택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역시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완료될 것을 기대함
  - 연료가격 상승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차량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인상하고자 함
    - 영업용 운반구, 택시 및 장애인 전용 대중교통 시설의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감가상각률인 20%에서 24%로 상향 조정함
    - 트레일러, 트럭, 버스의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감가상각률인 22%에서 24%로 상향 조정함
  -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토세 적용을 확대하고자 함
    - 적용범위에는 발전설비의 설치, 수선, 유지보수 및 노르웨이 영해 밖의 해상 풍력 발전설비의 해체 활동 등이 포함됨
    - 상기 확대 방안은 상급감시기관(EFTA Surveillance Authority, ESA)의 법적 지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적용됨
- 나. 소득세
-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근로소득 기본공제율과 연금소득의 기본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됨
    - 현행 소득세율은 25% 수준이며 2017년에는 24%, 2018년에는 23%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근로소득 기본공제율을 43%에서 44%로 상향조정하며 최대 공제가능한도를 94,750크로네로 설정함
    -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을 현행 73,600크로네 수준에서 75,000크로네로 증액함

35) 금융활동세란 2010년 IMF가 제안한 것으로 국제적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들에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기관의 이윤과 보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2012) p. 42.)



- 납세자의 부유세(Net wealth tax)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함
  - 부유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40만크로네에서 148만크로네로 증액하고 일부 평가 규정을 개정함
  -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의 경우 부유세의 납부 유예를 허용함
-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측이 납부한 노동조합수수료의 과세가 면제되며 근로자의 자사주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를 확대함

다. 기타

- 이외에도 예산안에는 기타 간접세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세 인상, 도로통행세 인상, 자동차세 인하안 등이 제안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슬로베니아-법인세 및 소득세율 개정안 채택]**

- 2016년 9월 27일 슬로베니아 의회는 세율 개정안을 채택함<sup>36)</sup>
  - 법인세, 소득세율 개정 및 국세가산율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며, 채택된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법인세의 경우 현행 17%의 세율을 19%로 인상함
  - 슬로베니아는 특수목적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

인에 대하여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왔으며 자본이득세나 지점세에도 1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sup>37)</sup>

- 소득세의 경우 기존의 과표구간에서 34%이 세율이 적용되는 20,400~48,000유로 구간을 추가함
  - 기존에는 4단계 누진세율(16%, 27%, 41%, 50%)을 적용해왔으나<sup>38)</sup> 상기 개정을 통해 27%, 41% 과세표준 구간을 27%, 34%, 39%로 세분화함

개정 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단위: 유로, %)

소득구간	세율
8,021.34 이하	16
8,021.34 초과~20,400 이하	27
20,400 초과~48,000 이하	34
48,000 초과~70,907.2 이하	39
70,907.2 초과	50

- 신고 불성실분에 대한 국세가산율을 세정절차에 따라 3~7% 수준으로 설정함
  - 자진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3%의 국세가산율을 적용함
  - 자진신고기한을 경과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신고하는 경우 5%의 국세가산율을 적용함
  - 세무조사 절차 완료 결정 후 추가 신고하는 경우 7%의 국세가산율을 적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36) IBFD. (접속일자 2016.10.13.)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05\\_si\\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05_si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37)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1330.

38) E&Y.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5-2016*, p. 1187.

### [스페인-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법안 승인]

- 스페인 재정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 중간예납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및 최소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을 승인함<sup>39) 40)</sup>
  - 재정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규정의 목적은 EU와의 규약에 따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함임
  - 규정은 당해 회계연도의 직전 12개월 매출액이 1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될 예정임
  - 중간예납 기한은 4월 20일, 10월 20일, 12월 20일이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9개월, 11개월분 세무상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직전 중간예납기한의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sup>41)</sup>
- 중간예납 법인세율을 기존의 17%에서 24%로 인상하고, 회계이익의 23%를 중간예납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최소기준을 도입함
  - 재정위원회는 중간예납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스페인의 25% 단일 법인세율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  
 =Max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간예납 기한의 전월 말일까지 발생한 세무상 소득×24%,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간예납 기한의 전월 말일까지 발생한 회계상 소득×23%]

- 최소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 시 회계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중간예납기간에는 세무조정 및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함
  - 일반기업의 경우 23%, 금융기관 및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함
  - 파산절차상 발생한 채무조정이익,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소득, 감면 세율을 적용하는 특정 법인의 소득에는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감면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으로는 부동산투자법인(REIT), 집합투자기구, 연금 펀드 등이 해당됨
- 법안이 즉시 발효됨에 따라 적용 대상자들은 중간예납기한(10월 20일)에 납부되어야 하는 법인세부터 반영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 [독일-소득세 관련 공제 확대안 승인]

- 독일 연방내각은 2016년 10월 12일, 소득세 기본공제, 양육비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인상안을 승인함<sup>42)</sup>
  - 연방내각의 발표에 따르면 법안의 목적은 소득세와 관련된 공제액을 인상하여 국민의 최저생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39) IBFD. (검색일 2016.10.30.)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24\\_es\\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24_es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40) Ernst & Young. (검색일 2016.10.30.)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pain—significantly—increases—corporate—income—tax—interim—payments—as—of—20—october—2016>

41)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p. 1364.

42) IBFD. (검색일 2016.10.30)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de\\_20161012\\_1537.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de_20161012_1537.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 소득세 기본공제와 양육비공제 금액을 2017년을 거쳐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8,652유로에서 2017년에는 8,820유로, 2018년에는 9,000유로로 인상할 예정임
  - 양육비 공제를 현행 2,304유로에서 2017년에는 2,358유로, 2018년에는 2,394유로로 인상할 예정임
- 자녀 수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되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하여 2017년을 거쳐 2018년까지 인상할 예정임
  -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는 190유로에서 2017년에 192유로, 2018년에 194유로까지 인상, 셋째 자녀에 대한 공제는 196유로에서 2017년에 198유로, 2018년에 200유로까지 인상, 넷째 자녀(넷째 이상)에 대한 공제는 221유로에서 2017년 223유로, 2018년 225유로까지 인상할 예정임
  - 세액공제는 자녀 한 명당 매월 부여되며 과세관청이 적격 여부를 판단함
    - 예를 들어 2016년 10월에 셋째 자녀가 태어난다면 2016년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5,148유로 (=190×2명×12개월+196×1명×3개월)임
  - 독일은 납세자의 자녀가 EU 혹은 EEA의 거주자이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동일한 금액만큼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sup>43)</sup>
    - 18세 미만의 자녀

- 무직 및 구직활동 중인 21세 미만의 자녀
-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25세 미만의 자녀

### 소득세 관련 공제 확대

(단위: 유로)

공제방식	항목	현행	2017	2018	
소득공제	기본공제	8,652	8,820	9,000	
	양육비공제	2,304	2,358	2,394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첫째, 둘째	190	192	194
		셋째	196	198	200
		넷째 이상	221	223	225

주: IBFD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 [아이슬란드-BEPS Action 4, 7, 13 도입 법안 채택]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6년 10월 13일, BEPS Action 4, 7, 13 도입 관련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201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임<sup>44) 45)</sup>
  - 상기 법안은 OECD에서 발표한 BEPS Action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No.787 법안에 규정됨

#### 가. Action 4 이자비용공제 제한

- 법인의 순이자비용 공제금액을 연결그룹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30%로 제한하는 고정비율법

43)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p. 483.

44) IBFD. (검색일 2016.10.30.)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13\\_is\\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13_is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45) Ernst & Young. (검색일 2016.10.30.)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celand-passes-bill-to-implement-oced-beps-action-4-and-action-13-recommendations>

을 채택함

- 고정비율법은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연간 이자비용 금액이 1억크로나(약 876천 달러)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

■ 법안은 고정비율법을 적용하지 않는 세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아이슬란드 거주자로부터의 차입에는 고정비율법을 적용하지 않음
- 납세자의 자본비율이 연결그룹 자본비율보다 2% 미만으로 낮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고정비율법을 적용하지 않음
- 납세자가 금융기관, 보험사 및 유사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부터 지배를 받는 회사의 경우 고정비율법을 적용하지 않음

나.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 채택된 법안에서는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에서 제시된 고정사업장 개념<sup>46)</sup>과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상의 용어 및 해석을 준용하고 있음

- 아이슬란드 국내법상으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OECD 모델조세협약상의 개념을 준용하여 법안에 포함시킴

■ 상기 법안과 OECD 모델상의 차이점은 건축현장에 대한 판단기간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개념임

- OECD 모델에 따르면 건축현장, 건설 혹은 설비 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 시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지만 채택된 법안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 시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함
- OECD 모델 주석서에 따르면 서버 및 전산 장비

46) 제5조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1. 이 조약의 목적상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의미한다.
2. '국내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 관리장소,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workshop), ㉥ 광산, 유정 혹은 개수정, 채석장, 혹은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 혹은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된다.
4. 이 조문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maintenance)
  -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 기업을 위해 단순히 예비적(preparatory) 또는 보조적(auxiliary)인 성격의 기타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① ㉠부터 ㉤목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일정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함
5.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agent) 이외의-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 계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사람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정사업장소가 국내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한 계약국에서 중개인(broker), 일반위탁매매인(general commission agent)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계약국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한 계약국의 거주자인 한 회사가 상대방 계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상대방 계약국에서 (국내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를 보유한 외국 기업이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처분하에 보유하는 공간의 경우 고정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나 법안은 그 장소 자체만으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다.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 법안은 BEPS Action 13상 제시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연내 장관령으로 공포될 예정임
  - 이전가격 문서화의 내용은 이미 세법상 규정되어 있으며<sup>47)</sup>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제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세부 지침 등이 2016년 내로 공포될 예정임
-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적용대상은 연간 연결 매출액이 1천억크로나(약 8억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임
  - 국가별보고서는 최종 모회사 관할 과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교환되어야 함
- 법안에 따르면 국가별 보고서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출되어야 함
  -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는 2016년을 보고대상으로 하며 이는 국가별보고서 규정에 따른 첫번째 보고서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승수 회계사)

[아일랜드-2017년 예산안 발표]

- 아일랜드는 2016년 10월 11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등의 세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음<sup>48)</sup>
  - 소득세의 주요 개정안으로 각종 조세특례제도 연장 및 신규 도입, 자영업자의 근로장려세제 인상, 근로소득 원천징수(PAYE)를 위한 실시간정보 보고(RTI) 시스템 도입이 있음
    - 조세특례제도 중 아일랜드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및 신흥국에 파견된 아일랜드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 신규기업 창업자의 소득세 면제 및 주거관련 비용 공제제도를 연장하였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함
  - 부가가치세(VAT)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설탕 첨가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담배세 인상, VAT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양조업자 대상 확대가 있음
  - 자본이득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처분 시 자본이득 경감세율 재인하,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 과세 면세점 인상이 있음
  - 법인세의 경우 현행 법인세율 12.5%를 계속 유지하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고 조세전문가를 선임하여 아일랜드의 법인세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을 것임을 발표함
    - 조세전문가는 2017년 6월까지 아일랜드의 법인세 개정방향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임

47) Income Tax Act No. 90/2003, Article 57

48) 아일랜드 재무부, "BUDGET 2017," Summary of 2017 Budget Measures-Policy Changes, 2016.10.11.; KPMG, "Taxing Times-Budget 2017," <https://www.kpmg.ie/budget2017/>

가. 소득세

- 외국인 근로자의 아일랜드 내 소득에 대해 공제하는 '특정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Special Assignee Relief Programme; SARP)' 및 특정 국가에서 근무하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외국 근로소득에 공제하는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기존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할 것을 발표함
  - SARP는 다국적기업의 주요 자원을 아일랜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자 2012년 재정법을 통해 아일랜드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함
    - SARP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일랜드에서 근무 시작일 이전 5년간 아일랜드 거주자가 아니었고, 6개월 전에 외국인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함
    - 근로소득이 7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0%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함
  - 아일랜드 기업이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러시아와 같은 신흥국가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2012년 재정법을 통해 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함
    - 아일랜드 근로자는 재무부에서 정한 국가에 파견되고, 해당 국가에서 4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연간 35,000유로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함
    - 해당 규정 연장과 함께 외국 근로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파견국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무일수 기준도 완화하여 기존 40일 이상 근무에서 30일 이상 근무할 것을 발표함
-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근로장려세제(ERITC) 한도액을 기존 550유로에서 950유로로 상향함
  - 현행 규정상 근로장려세제 금액은 자영업자의 경우 500유로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1,650유로까지 허용하고 있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불평등이 발생함
  - 이번 예산안을 통해 자영업자의 근로장려세제 한도액을 인상하였다더라도 여전히 700유로 정도 차이가 발생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형평에 차이가 있음
- 영국과 같이 보다 정확하고 간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Pay As You Earn; PAYE)를 위한 실시간 정보보고(Real Time Information; RTI) 시스템을 도입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함
- 생애 첫 주택구입 시 구입비용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주택구입비용 관련 이자비용의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연장 및 공제율 인상을 발표함
  - 주거목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구입비용의 5%만큼 20,000유로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의 신규 도입을 발표함
    - 신규 건물 구입 시 또는 건물을 직접 건설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허용함
  - 현행 규정에서는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액의 이자비용에 대해 75%만큼 소득공제를 허용하나 공제율을 80%로 인상하고 해당 특례규정의 적용기간을 2020년으로 연장할 것을 발표함
    - 공제율은 매년 5%씩 인상하여 2021년부터는 이자비용의 100%를 소득공제함



- 신규 기업을 창업한 자에게 2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하는 'Start Your Own Business'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8년까지 적용할 것을 발표함
  - 연간 40,000유로 한도로 2년간 소득세 면제를 허용하며, 신규로 기업을 창업한 자는 창업 이전 12개월 이상 실직상태였으며, 1개 이상의 사회복지금을 수령한 자이어야 함

#### 나. VAT 및 소비세

- 여행, 병원 관련 산업에 경감세율 9%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발표함
  - 2011년부터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행산업에는 레스토랑 및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 숙박 시설, 신문, 영화관,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 입장 등이 포함됨
  - 아일랜드의 VAT표준세율은 23%이며, 5, 9, 13.5%의 경감세율을 운영 중임
-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소비세를 과세하는 일명 '설탕세' 과세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2018년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함
  - 이는 높은 설탕 함량으로 인해 비만 및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며 많은 국가에서도 질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첨가 음료에 과세하는 추세임
    - 현재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의 일부 주, 멕시코에서도 설탕세 과세제도를 운영 중임
  - 구체적인 과세방법 및 시행시기는 영국의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임

- 알코올 음료 및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담배제품에 대해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발표함
  - 예산안 발표일인 2016년 10월 11일부터 담배 1무음(20개비)에 VAT를 포함하여 50센트가 인상됨
- 경감된 VAT세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양조업자 대상을 확대할 것을 발표함
  - 현행 규정에서는 연간 생산량이 30,000헥타르 이하인 양조업자에 대해 VAT 표준세율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연간 생산량이 40,000헥타르 이하인 양조업자에 대해 VAT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다. 기타

- 개인사업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 시 자본이득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경감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할 것을 발표함
  - 2015년 'Finance Act 2015'에 의해 2016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처분 시 20%의 경감된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2017년 예산안에서 자본이득 경감세율을 한번 더 인하하는 안을 발표함
  -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생 동안 1,000,000유로임
-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며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 과세 면세점을 인상할 것을 발표함
  - 현행규정에서는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280,000유로 이하인 경우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310,000유로 이하인

경우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을 발표함

- 이자소득세율(Deposit Interest Retention Tax; DIRT)을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0년에는 현행 41%에서 2013년 기준 세율인 33%로 인하할 것을 발표함
  - 예금이자세는 아일랜드 은행,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액에 41%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며, 2008년 세율인 20%에서 매년 2~3%씩 인상되었음<sup>49)</sup>
    - 각 연도별 이자세율은 2009년 23%, 2010년 25%, 2011년 27%, 2012년 30%, 2013년 33%, 2014년 41%임<sup>50)</sup>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아일랜드-2016년 국제조세전략 보고서 발표]

- 아일랜드는 2016년 10월 11일 '2017년 예산안'과 더불어 '아일랜드의 국제조세전략(Ireland's International Tax Strategy)'을 발표함<sup>51)</sup>
  - 국제조세전략 보고서는 2013년 처음 발간되었으며 아일랜드의 전반적인 국제조세정책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의 BEPS 이행상황, EU의 세법개정안 적용방침, 지난 1년간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음

- 아일랜드는 현재 BEPS Action Plan 중 국가별보고서 규정(Action 13)과 조세예규 자동정보교환 권고사항(Action 5)을 적용하고 있으며, EU의 조세회피방지 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및 OECD의 이전가격규정 관련 권고사항을 적용할 예정임
  - 2016년 1월부터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을 도입하였고,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함
  - 2016년 1월부터 BEPS Action 5의 권고사항에 따라 연계접근법을 적용한 지식개발제도(Knowledge Development Box)를 도입함
  - OECD는 2016년 5월 개정된 이전가격규정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아일랜드 개정된 OECD 규정을 현행 아일랜드 이전가격 규정에 적용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임
  - EU의 조세회피방지 지침은 공격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EU회원국이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자비용 공제제한, CFC규정, 혼성불일치 거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음<sup>52)</sup>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49) 최근 6년간 이자소득세율이 급격히 인상되었는데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출처: 아일랜드 재무부, "TSG 16/10-Stamp Duty, Savings and Other Issues Paper," 57문단, 2016.10.)

50) 아일랜드 국세청, <http://www.revenue.ie/en/tax/dirt/>, 2016.10.28. 접속

51) 아일랜드 재무부, <http://www.budget.gov.ie/Budgets/2017/2017.aspx>, 2016.10.28. 접속

5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EU-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조세회피방지 패키지 발표,"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03.14.



[영국-조세격차(Tax Gap) 보고서 발표]

- 영국 국세청은 2016년 10월 21일 영국의 세목별 조세격차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sup>53)</sup>
  - 2015년 기준 전체 세목의 조세격차 추정액은 36억파운드이며, 조세격차는 200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 8.3%에서 2015년 6.5%로 감소함
  - 세목별 조세격차 또한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며, 소득세의 조세격차는 2005년 기준 5.6%에서 2015년 기준 5.2%, 부가가치세의 경우 14.5%에서 10.3%, 법인세의 경우 13.5%에서 7.6%로 감소함
- 소득세의 2015/16년 조세격차는 5.2%이며, 신고납세자(self assessment) 및 소규모 파트너십 파트너의 과소 신고가 조세격차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제도의 실시간정보 시스템 도입이 조세격차 감소에 영향을 줌
  - 신고납세자 및 소규모 파트너십 파트너의 조세격차는 19%이며, 고용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에 대한 조세격차는 1.1%임
    - 신고납세자 및 소규모 파트너십 파트너의 과소 신고로 인한 조세격차 추정액은 2014년 기준 6.2억파운드에서 2015년 기준 7.0파운드로 증가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에서 조세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고용주의 부정신고가 있으며, 관련 조세격차 추정액은 2014년 기준 4억파운드에서 2015년 기준 2.8억파운드로 크게 감소함

- 부가가치세의 2015/16년 조세격차는 10.3%이며, 2005/06년 14.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issing Trading Intra-Community; MTIC)'<sup>54)</sup>에 대한 조세격차가 감소한 것이 전체 부가가치세 조세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MTIC에 대한 조세격차 금액은 2005/06년 2.5억 유로에서 2015/16년 0.5~1.0억유로로 감소함
- 법인세의 2015/16년 조세격차는 7.6%이며, 2005/06년 1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우 조세회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과소신고 요인이 조세격차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 2015/16년 조세격차는 대기업의 경우 6%, 중소기업의 경우 10%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아시아

[터키-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터키정부는 2016년 2월 법인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세제지원을 확대<sup>55)</sup>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8월까지 세부규정을 개정함
  - 이와 관련해 5746번 법(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 Supporting Research and Dev

53)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tax-gap-falls-to-65-as-hmrc-targets-the-dishonest-minority>  
 54) EU 내 다른 국가에서 재화를 VAT 없이 공급받은 후, 같은 국가 내 다른 사업자에게 VAT를 징수한 후 폐업하고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VAT를 환급받지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사기거래를 말함  
 55)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urkey-s-r-d-reform-package-increases-current-r-d-incentives>)

elopment Activities), 4691번 법(기술발전 특구에 관한 법률, Law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Regions), 5520번 법(법인세법)과 3065번 법(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

- 그 밖에 터키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현금 보조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관련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됨
- 5746번 법에서는 디자인 활동을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함
  -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모든 연구개발, 디자인과 혁신을 위한 지출액을 공제함 -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 디자인과 이러한 활동의 보조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이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직원의 교육 정도에 따라 80%, 90%와 95%까지 면제됨
  - 연구개발, 디자인과 이러한 활동의 보조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50% 감면함
  - 연구개발, 디자인과 혁신활동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함
- 4691번 법에서는 기술개발특구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함
  - 기술개발특구에 소재한 법인이 기술개발특구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 디자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가 면제됨

- 기술개발특구에서 연구개발, 디자인과 이러한 활동의 보조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이 받는 소득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가 면제됨
- 기술개발특구에 소재하는 기업이 기술개발특구에서 생산한 시스템관리, 정보관리, 응용사업 어플리케이션(business applications), 인터넷, 모바일 등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5520번 법과 3065번 법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감면제도를 시행함
  - 실용신안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이나 상품 판매수입의 경우 5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터키에서 연구개발, 혁신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이 발생하고 제품이나 상품도 터키에서 생산된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음
  - 또한, 지적재산권의 양도나 리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 [터키-투자인센티브의 범위 확대]

- 터키 정부는 2016년 8월과 9월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함<sup>56)</sup>
- 2016년 8월 6728번 법(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Certain Laws Aimed at Improv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을 개정하고 2016년

56)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urkey-expands-scope-of-investment-incentives>)



9월 6745번 법(프로젝트 관련 투자지원에 관한 특별법, Certain Laws and Legislative Decrees and Supporting Investments in Terms of Projects)을 개정함

- 법인세법상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함
  - 법인세법 제32/A조에 따르면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투자금의 80%를 한도로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데 한도를 100%로 상향 조정함
- 여러 지역에 걸쳐 운영되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공제가능 항목과 공제 한도를 통제함
  - 터키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각 지역별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공제가능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투자인센티브의 최대 기간을 10년으로 공제율도 100%로 제한함
  -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 투자인센티브 유형은 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 관세 면제, 10년간 고용자부담 사회보장세의 보조, 10년 동안 투자관련 에너지 사용비용 보조 등이 포함됨
    - 그 밖에 투자에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보조금이나 5년 동안 투자와 관련된 지원 인건비의 20% 보조금 지원 등이 있음

- 특정 투자<sup>57)</sup>에 대해 인지세, 부동산세와 수수료를 면세함
  - 지적재산권의 리스나 매입을 위한 문서에 대해 인지세와 수수료가 면제됨
  - 투자 관련 기술자문 문서에 대한 인지세와 수수료가 면제됨
  - 고도기술산업 분야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와 수수료가 면제됨
  - 투자인센티브 증서에 기재된 건물의 건설이나 부동산의 매입에 대해 부동산세와 관련 수수료가 면제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중국-비거주자 금융계좌정보 실사 운영방안 초안 공개]**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16년 10월 14일, 세무목적 을 위한 비거주자 금융계좌정보 실사 운영방안에 대한 초안을 공개함<sup>58)</sup>
  - 이 안은 중국이 OECD와 G20의 '세무문제에 대한 금융계좌정보 자동정보교환 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2016년 10월 28일까지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2017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것임
- 이 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

57) 투자 인센티브 증서(investments with incentive certificate)를 보유한 투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됨

58) 国家税务总局就《非居民金融账户涉税信息尽职调查管理办法(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http://www.chinatax.gov.cn/n810219/n810724/c2285504/content.html>), 非居民金融账户涉税信息尽职调查管理办法(征求意见稿)征求意见稿(<http://hd.chinatax.gov.cn/hudong/noticedetail.do?noticeid=921021>) 및 PriceWaterhouseCoopers, China releases CRS compliance requirements for financial institutions, News Flash, October 2016.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OECD의 일반보고기준(CRS)을 따르고 있음

- 보고 대상의 금융기관으로 수신기관, 위탁기관, 특정 보험회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리스회사 등은 제외됨
- 금융기관은 성명, 주소, 납세지위, 세무일련번호 등을 포함한 계좌보유자의 정보, 계좌번호, 잔액, 계좌의 형태 등을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함
-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고 합리성을 확인하는 실사를 수행해야 함
  - 일부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의 계좌 등에 대해서는 실사를 면제함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2017년부터 기존계좌와 신규계좌에 대한 정보에 대해 실사를 수행해야 함
  - 금융기관은 신규계좌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보유한 6백만원 이하의 계좌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외의 개인계좌와 기업계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사를 수행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중국-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에 대한 개정 지침 공개]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16년 10월 11일,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에 대한 개정 지침을 공개함<sup>59)</sup>
  - 이 지침은 기존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개정하는 것으로 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에 대응하여<sup>60)</sup> 보다 엄격한 사전합의제도 절차, 가치사슬(value chain)·지역상의 특정 이익(location specific benefits)<sup>61)</sup> 등에 대한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지침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 사전합의제도에 대한 적용범위의 명확화, 사전합의 절차의 단계 변경, 가치사슬·지역상의 특정이익 등에 대한 고려사항의 언급 등을 담고 있음
  - 사전합의제도 대상 납세자에 대해 과거 3개년간 연속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4천만위안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 기존에도 금액기준은 동일하였으나 과거 3개년간의 연속적인 거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 공식적인 신청절차 이전의 절차단계를 세분화하고 익명의 신고이전회의를 폐지함
    - 기존에는 공식적인 신청절차 이전단계에 신고이전회의 절차만 존재하였으나 이를 신고이전

59) 关于完善预约定价安排管理有关事项的公告(<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292979/content.html>). 및 Ernst & Young, "China's SAT issues new guidance on administration of advance pricing agreements," *Global Tax Alert*, 21 October 2016.

60) 关于《国家税务总局关于完善预约定价安排管理有关事项的公告》的解读(<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60/c2292943/content.html>).

61) 가치사슬은 생산, 마케팅, 판매후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제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회사의 처리 또는 활동(United Nations Practical Manual on Transfer Pricing for Developing Countries 2.2.5., OECD 이전가격지침(2010)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BEPS Action 8-10에서는 가치사슬분석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을 말하며, 지역상의 특정이익은 기업이 다른 지역에 동일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보다 우월한 재무성과를 획득하도록 하는 지역의 특정 시장 특성이나 요소를 의미함(Deloitte, The new transfer pricing landscape: A practical guide to the BEPS changes, Global Transfer Pricing, November 2015.,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2010)는 이러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location savings을 기술하고 있지만 location specific benefits이 보다 포괄하는 개념임).



회의, 의향서제출, 분석 및 평가의 3단계로 나누었으며, 신고이전회의 시 익명으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함

- 과세관청의 기업의 사전합의제도 신청 검토시 기업의 가치사슬 등의 검토가 완전하며 명확한지 여부나 지역 특성이의 등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를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별보고 대상이 됨

- 보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후 12개월 내에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함
- 싱가포르 과세관청은 국가별보고서를 도입한 관할국가의 과세관청에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최대 10만싱가포르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싱가포르-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지침 공개]

- 싱가포르 과세관청은 2016년 10월 10일,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지침을 공개함<sup>62)</sup>
  - 싱가포르의 국가별보고서는 싱가포르가 OECD BEPS의 포괄적 협력체계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sup>63)</sup>, 연말에 국가별보고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sup>64)</sup>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이 지침은 국가별보고서의 대상, 보고시기, 보고양식, 벌칙 규정 및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침은 보고대상의 매출액 규모, 12개월의 보고기한, 과세관청의 정보교환, 보고의무 해태 시의 벌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글로벌기업의 최종모회사가 싱가포르 거주자이면서 연결매출액이 1,125백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며 해외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두는 경우 국가

## > 오세아니아

### [호주-BEPS 로컬파일 제출 면제에 관한 지침 공개]

- 9월 26일 호주 국세청은 국가별보고서와 관련해 호주에서 로컬파일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함<sup>65)</sup>
  - 이번 지침에서는 호주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로컬파일 제출 면제를 결정할 때 고려할 원칙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다룸
- 일정 기준을 만족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로컬파일의 제출 면제를 결정함
  -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법인이 속한 거주국에서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로컬파일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음

62)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Country-by-Country Reporting, IRAS e-Tax Guide, 10 October 2016.

63) 조세동향(16-06호) 참조

64) Ernst & Young, "Singapore releases tax guide on Country-by-Country reporting," *Global Tax Alert*, 20 October 2016, p. 1.

65)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10-october-2016>)

- 면제받는 기간은 최대 3년이며, 3년 중에 최종 모법인의 거주국에서 국가별보고서 제도를 채택하면 그 때까지만 제출의무가 면제됨
  - 그 밖에 다국적기업이 로컬파일의 제출을 면제받기 위해 과세당국에 제출할 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관련 내용은 면제의 요청시기, 결정에 걸리는 기간,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 등임
-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 ▶ 국제기구

### [OECD-탄소세 관련 분석보고서 발행]

- OECD는 2016년 9월 26일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가격책정』이라는 제목(66)의 탄소세 관련 분석보고서를 발행함(67)
  - 보고서에서는 41개 국가(68)(이하 “조사대상 국가”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 정도를 분석함
    - 조사대상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80%를 차지함
  -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부담 증가를 통해 온실가스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 실질 탄소가격(effective carbon rates)은 이상적인 탄소가격인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보다 작게 나타남
  - 실질 탄소가격이란 에너지 사용을 위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의 합임
    - 여기서 탄소세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갖는 탄소세와 같은 세금이 아니라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제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재산세 등과 같은 세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 탄소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14유로임
  - 탄소가격에서 세금과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산세 93.1%, 탄소세 1.3%,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6%임
-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인 탄소가격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탄소가격 격차라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했으며, 조사대상 국가의 현재 탄소가격 격차는 80.1%로 나타남
  - 탄소가격 격차는 우선 이상적인 탄소가격인 30유로와 조사대상 국가의 실질 탄소가격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모두 합해 이상적인 탄소가격과 비교함
- 각 국가의 작은 노력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함
  - 모든 조사대상 국가의 탄소가격이 상위 50% 국가

66) Effective Carbon Rates: Pricing CO2 through taxes and emissions trading systems, (<http://www.oecd.org/tax/effective-carbon-rates-9789264260115-en.htm>)

67) OECD Home>Tax>Carbon pricing efforts are falling short but even modest collective action can deliver significant progress, OECD says, (<http://www.oecd.org/tax/carbon-pricing-efforts-are-falling-short-but-even-modest-collective-action-can-deliver-significant-progress.htm>)

68) 2012년 OECD 회원국 34개 국가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6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함



의 탄소가격에 도달하면 탄소가격 격차가 현재 80.1%에서 53.1%로 27%p 하락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OECD-조세투명성 개선을 위한 정보교환에 관한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6년 10월 7일 조세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기준의 개선방안’과 ‘수익적소유자의 확인을 위한 정보교환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sup>69)</sup>함
- 조세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4월 OECD 글로벌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함
  - 세 가지 제안은 수익적 소유자의 정보요구, 글로벌포럼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와의 협력 증진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글로벌포럼이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를 포함한 관련 기구의 참여와 기술적인 지원의 제공임
  - OECD 글로벌포럼에서는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향상하는 방법을 최초로 제안함
  - 이후 2016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회의에서 국제기준 개선방안을 추가 제안했으며,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회의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제안한 것임
    - 10월 회의는 수익적 소유자 정보의 이용가능성과 관련 정보의 교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수익적 소유자의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방안에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한 수익적 소유자 기준을 조세부문에 통합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함

- OECD는 네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 수익적 소유자 기준의 통합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수익적 소유자 정보에 대한 조세법상 개념 사이의 차이분석(gap analysis)을 실시할 것임
  - 기업 지배구조(ownership information)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전자화할 예정임
  - 정보의 국가 간 교환뿐만 아니라 정보를 보유한 국내 관할부처 사이의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수익적 소유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 등을 포함해 현행 시스템을 평가할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69) OECD, "OECD SECRETARY-GENERAL REPORT TO G20 FINANCE MINISTERS," 2016, 10. (<http://www.oecd.org/ctp/oecd-secretary-general-tax-report-g20-finance-ministers-october-2016.pdf>)

##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 EU 이사회 상주대표부, <sup>1)</sup> 2017년 EU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2016.7.20.)<sup>2)</sup>
  - ※ 집행위의 2017년 EU 예산안은 2016년 7월 제2호 「재정동향」 참고
  - 승인기준<sup>3)</sup> 1563.8억유로, 지급기준 1337.9억유로를 편성
    - 2016년 예산에 비해 승인기준은 0.9% 증가했으나 지급기준은 7.0% 감소
  - 스마트<sup>4)</sup> · 포용적<sup>5)</sup> 성장을 위해 2017년 743억유

- 로(승인기준, 이하 동일) 지출
  - Horizon2020 연구 · 혁신에 102억유로
  -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EFSI)에 27억유로
  - Erasmus+(교육훈련지원프로그램)에 20억유로
  - 극빈층지원기금(European aid for the most deprived)에 5.46억유로
  - 청년고용프로그램(youth employment initiative)에 6억유로(지급기준)
- 이민 관련 지출에 52억유로 지출
- EU 안보 강화를 위해 Internal Security Fund에 7,386억유로 지출
- (향후 일정) 이사회가 9월 중순<sup>6)</sup> 전에 입장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EU 의회와 협의할 예정

〈표 1〉 2017년 EU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17년 이사회 입장		2016년 예산 대비 증가율	
	승인	지급	승인	지급
1. 스마트 · 포용적 성장	74.3	56.1	6.36	-15.31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	20.7	19.0	8.95	8.89
경제 · 사회 · 지역적 통합	53.6	37.1	5.39	-23.94
2. 지속가능한 성장: 천연자원	58.7	55.0	-6.02	-0.15
3. 안보 및 시민권	4.2	3.8	4.84	24.42
4. 대외정책	9.3	9.2	1.74	-9.22
5. 행정비용	9.3	9.3	3.67	3.7
6. 특수 기관	0.5	0.4	1.78	0.26
합계	156.4	133.8	0.89	-7.02

출처: EU 집행위, 보도자료, 2016.7.20.

1) 상주대표부(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Coreper)는 회원국의 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이사회 내 기구로, 회원국 간 의견을 절충하여 이사회에 송부하는 역할을 함  
 2) 출처: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07/20-eu-budget-2017/>, 2016.7.20.  
 3) 승인기준(commitments)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 지급기준(payments)은 당해연도에 실제 지출하는 예산임  
 4) 연구 · 혁신, 교육 · 훈련, 에너지 · 교통 · 통신망, 사회 정책 등  
 5) 회원국 간 격차 해소, 전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협력 발전 등  
 6) 법적 기일은 10월 1일임



- EU 집행위, 영국 국민투표에 대한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2016.7.19.)<sup>7)</sup>
  - 지난 6월 23일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많은 전망 여건이 변화하면서 5월 경제 전망(2016년 봄)을 수정
    - 국민투표가 급격한 환율 변화 등 금융 시장을 변동시킴
    -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었으나 영국과 회원국 간의 경제·정치적 관계 변화가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영국 탈퇴 투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한적인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소멸하는 시나리오(mild scenario)와 지속적이고 극심한 불확실성 충격이 발생하는 시나리오(severe scenario)로 나누어 분석
  - 국민투표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가 민간소비, 투자, 수출 등을 둔화시킴에 따라 영국의 전망뿐만

- 아니라 나머지 EU 회원국의 전망 또한 악화시킴
  - 영국은 설비 및 건설투자가 악화되고 높은 수입물가가 소비증가율을 하락시키는 반면 파운드화 절하에 따른 순수출 증가효과는 크지 않아 2017년까지 1~2.7%p 하락해 2016년 1.3~1.6%, 2017년 -0.3~1.1% 성장할 전망
  - 유로지역 또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하락과 영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2017년까지 0.3~0.6%p 하락해 2016년 1.5~1.6%, 2017년 1.3~1.5% 성장할 전망
- 또한 영국 국민투표가 하방 리스크를 확대
  - 국민투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실현되었으나 영국 탈퇴 이후 새로운 균형과 이와 관련된 조정 경로가 불확실
  - 이용가능한 정보가 부족해 많은 요인이 이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상당한 전망 리스크로 작용

〈표 2〉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연도	봄 전망	투표 전	투표 후		투표영향(누적%p)	
				'Mild'	'Severe'	'Mild'	'Severe'
유로존	2016	1.6	1.7	1.6	1.5	-0.1	-0.2
	2017	1.8	1.7	1.5	1.3	-0.3	-0.6
EU27(영국 외)	2016	1.8	1.9	1.8	1.7	-0.1	-0.2
	2017	1.9	1.8	1.7	1.4	-0.3	-0.6
영국	2016	1.8	1.8	1.6	1.3	-0.2	-0.5
	2017	1.9	1.9	1.1	-0.	-1.0	-2.7
EU28	2016	1.8	1.8	1.7	1.6	-0.1	-0.3
	2017	1.9	1.8	1.6	1.1	-0.4	-1.0

출처: EU 집행위, "The Economic Outlook after the UK Referendum: A First Assessment for the Euro Area and the EU," 2016.

7) 출처: EU 집행위,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eip/ip032\\_en.htm](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eip/ip032_en.htm), 2016.7.19.

〈표 3〉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2016년 1분기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2015 Q1	2015 Q2	2015 Q3	2015 Q4	2016 Q1
EA19					
재정수지	-2.2	-2.1	-1.7	-2.3	-1.6
총수입	46.6	46.5	46.6	46.7	46.3
총지출	48.8	48.7	48.3	48.9	48.0
EU28					
재정수지	-2.5	-2.5	-2.2	-2.3	-1.8
총수입	45.0	44.9	45.0	45.3	44.9
총지출	47.6	47.5	47.2	47.6	46.8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6.7.22.

- EU 통계청, 2016년 1분기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발표(2016.7.22.)<sup>8)</sup>
  - 2016년 1분기 유로존(EA19)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는 각각 -1.6%와 -1.8%를 기록
    - 유로존과 EU 28개국 모두 전 분기(각각 -2.3%, -2.3%)에 비해 개선됨
    - (EA19) 2016년 1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6.3%, 총지출은 48.0%를 기록
    - (EU28) 2016년 1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4.9%, 총지출은 46.8%를 기록
- EU 통계청, 2016년 1분기 정부 채무 발표(2016.7.22.)<sup>9)</sup>
  - 2016년 1분기 말 유로존(EA19)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각각 91.7%와 84.8%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각각 93.0%, 88.1%)에 비해 감소
    -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176.3%), 이탈리아(135.4%), 포르투갈(128.9%) 순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9.6%), 룩셈부르크(21.8%), 불가리아(30.3%) 순임
    - 전 분기 대비 불가리아(3.3%p), 벨기에(3.2%p), 이탈리아(2.7%p) 등 16개국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증가했고 포르투갈은 변동이 없었으며 리투아니아(-2.7%p), 영국(-1.2%p), 스웨덴(-1.0%p) 등 11개국은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그리스(5.8%p), 핀란드(3.7%p), 라트비아(2.9%p) 등 13개국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증가했고 이탈리아는 변동이 없었으며 아일랜드(-16.7%p), 네덜란드(-4.3%p), 덴마크(-4.1%p) 등 14개국은 감소

8) 출처: EU 통계청, 2016.7.22,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7573546/2-22072016-BP-EN.pdf>

9) 출처: EU 통계청, 2016.7.22,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7573561/2-22072016-AP-EN.pdf>



〈표 4〉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2016년 1분기 정부채무

		2015 Q1	2015 Q4	2016 Q1
EA19				
Government debt	(% of GDP)	93.0	90.7	91.7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 of total debt)	2.9	3.1	3.0
Debt securities	(% of total debt)	78.9	79.1	79.3
Loans	(% of total debt)	18.2	17.8	17.7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 of GDP)	2.3	2.2	2.2
EU28				
Government debt	(% of GDP)	88.1	85.3	84.8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 of total debt)	4.0	4.1	4.0
Debt securities	(% of total debt)	80.6	80.8	80.8
Loans	(% of total debt)	15.4	15.1	15.2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 of GDP)	1.7	1.6	1.6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6.7.22.

■ EU 집행위·이사회, 스페인·포르투갈 제재 취소 결정(2016.7.27, 8.9.)<sup>10)</sup>

※ 지난 7월 이사회가 스페인·포르투갈의 초과적자시정조치(EDP) 불이행에 따른 제재 권고안을 채택. 이사회의 권고에

대해 집행위는 GDP 대비 최대 0.2%의 벌금부과안을 제시해야 하고 해당국은 합리적 요청(reasoned requests)을 제출할 수 있음<sup>11)</sup>

〈표 5〉 스페인·포르투갈 제재 관련 주요 일지

날짜	주요 내용
2016.5.18.	집행위,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한 재조사 예고
2016.7.7.	집행위, 재조사 결과 발표 - 포르투갈은 2015년까지의 마감시한까지 초과적자를 시정하지 못했고 스페인은 2016년까지의 마감시한까지 시정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2016.7.12.	이사회(EU 재무장관 회의), 제재 권고안 채택 - 두 국가의 재정적자가 권고기한 내 EU의 기준지표에 미치지 못했으며 재정노력이 권고수준에 미달

10) EU 집행위, 2016.7.2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2625\\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2625_en.htm),

EU 이사회, 2016.8.9,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08/08-excessive-deficit-portugal-spain>

11) 자세한 내용은 2016년 7월 제2호 「재정동향」 참고

- 7월 27일 집행위는 스페인 · 포르투갈에 대한 벌금부과를 취소하는 권고를 제안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각각 지난 6, 7년간 재정건전화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이행
  - 두 국가는 고용이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률(특히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으며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건전화 노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두 국가의 합리적 요청이 인정됨
- 또한 새로운 이행 조정 경로를 설정
  - 포르투갈은 2016년, 스페인은 2018년으로 조정 기한을 연장
  - 스페인은 일반정부 재정적자 목표를 2016년 4.6%, 2017년 3.1%, 2018년 2.2%로 설정하고 2017년과 2018년에 GDP 대비 0.5% 수준의 재정건전화를 이행해야 함
  - 포르투갈은 2016년 재정적자 목표를 2.5%로 설정하고 2016년 0.25% 수준의 재정건전화를 이행해야 함
  - 회원국은 10월 15일까지 효과적 조치를 이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8월 9일 이사회는 집행위의 제안을 채택
  -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벌금 부과를 취소하고 새로운 조정 경로를 설정
- EU 집행위, 난민 위기가 EU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2016.7.26.)<sup>12)</sup>
  - (재정적 영향) 단기적으로는 이 · 난민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 난민이 복지체계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난민 유입량을 추정하기 어려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움
    - (단기) 난민 위기와 관련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이러한 비용 증가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요소에 의존
      - ☞ 회원국마다 망명자 · 난민의 구성이 다양하고 기존 인구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불확실하며, 난민 지출에 대응해 다른 재정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증가시키는 등 정책이 상이
      - ☞ 다만 순지출이 증가한다면 추가적인 공공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률을 높임
    - (중기) 이민의 재정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장기) 이주민이 노동 시장에 잘 편입된다면 이민이 고령화 또는 노동력 감소 국가의 인구구조를 개선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으나 잠재 인적 자본이 잘 활용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경제적 영향) 경제 성장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는 주로 정부소비 · 이전지출 증가 등 재정 지출 충격에 기인하나 중기적 효과는 주로 노동 공급 충격에서 기인
    - (고속런 시나리오)<sup>13)</sup> GDP가 기준선 시나리오에 비해 2017년까지 0.2%, 2020년까지 0.2% 증가

12) 출처: EU 집행위, 2016.7.26,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eip/ip033\\_en.htm](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eip/ip033_en.htm)

13) 이민자의 숙련 분포가 EU 노동자의 숙련 분포와 일치할 경우



- ☞ 공공 지출 증가와 고숙련 노동력 증가가 예상되나 인구 증가보다 낮아서, 1인당 GDP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소폭 발생
  - (저숙련 시나리오)<sup>14</sup> 효과가 더욱 작아져 GDP가 2017년까지 0.2%, 2020년까지 0.1% 증가
  - 유입 규모가 큰 독일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명확한 효과를 보여 GDP가 2017년까지 0.4~0.8%, 2020년까지 0.3~1.0% 증가
-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면, 2017년은 브렉시트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0.2%p 하락한 1.4%

- ☞ (일본) 최근 추가적인 엔화 강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2016년 경제 성장률은 0.3%(△0.2%p), 2017년은 0.1%(+0.2%p) 전망

- (신흥개도국) 2016-17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4.1%, 4.6%로 4월 기준 전망 유지

- (위험 요인)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및 정치 불확실성의 증가, 유럽 금융시장 불안 심화(특히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은행부실 문제), 중국 정부의 과잉채무 등
- (정책 권고) 선진국과 신흥개도국들은 단기 내수 활성화 정책과 구조개혁 이행을 통해 중장기 성장세를 회복할 필요
  -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무역·금융에 관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이 예측가능하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유럽 금융시장 취약성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

IMF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Update 발표(2016.7.24.)<sup>15</sup>
  - (경제 전망) 2016년과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각각 0.1%p 하락한 3.1%, 3.4%로 전망
    - (선진국)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2016-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2016년 1.9% → 1.8%, 2017년 2.0% → 1.8%)
      - ☞ (미국) 201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1사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 4월 전망 대비 0.2%p 하락한 2.2%로 전망
      - ☞ (영국) 브렉시트로 인한 대내수요 약세가 예상됨에 따라 선진국 중 성장률 전망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2016년 1.9% → 1.7%, 2017년 2.2% → 1.3%)
      - ☞ (유로지역) 2016년 상반기 내수 증가로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1.5% → 1.6%)된 반

14) 모든 이민자가 저숙련 노동자인 경우

15)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update/02/>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update/02/pdf/0716.pdf>

〈표 6〉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실적치		전망치		4월 전망 대비 차이	
	2014	2015	2016	2017	2016	2017
World Output	3.4	3.1	3.1	3.4	-0.1	-0.1
Advanced Economies	1.9	1.9	1.8	1.8	-0.1	-0.2
United States	2.4	2.4	2.2	2.5	-0.2	0.0
Euro Area	0.9	1.7	1.6	1.4	0.1	-0.2
Germany	1.6	1.5	1.6	1.2	0.1	-0.4
France	0.6	1.3	1.5	1.2	0.4	-0.1
Italy	-0.3	0.8	0.9	1.0	-0.1	-0.1
Spain	1.4	3.2	2.6	2.1	0.0	-0.2
Japan	0.0	0.5	0.3	0.1	-0.2	0.2
United Kingdom	3.1	2.2	1.7	1.3	-0.2	-0.9
Canada	2.5	1.1	1.4	2.1	-0.1	0.2
Other Advanced Economies <sup>1)</sup>	2.8	2.0	2.0	2.3	-0.1	-0.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4.6	4	4.1	4.6	0	0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0	-2.8	-0.6	1.5	0.5	0.2
Russia	0.7	-3.7	-1.2	1.0	0.6	0.2
Excluding Russia	1.9	-0.6	1.0	2.5	0.1	0.2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6.8	6.6	6.4	6.3	0.0	0.0
China	7.3	6.9	6.6	6.2	0.1	0.0
India <sup>2)</sup>	7.2	7.6	7.4	7.4	-0.1	-0.1
ASEAN-5 <sup>3)</sup>	4.6	4.8	4.8	5.1	0.0	0.0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	2.8	3.6	3.5	3.2	0.0	-0.1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3	0.0	-0.4	1.6	0.1	0.1
Brazil	0.1	-3.8	-3.3	0.5	0.5	0.5
Mexico	2.2	2.5	2.5	2.6	0.1	0
Middle East, North Africa, Afghanistan and Pakistan	2.7	2.3	3.4	3.3	0.3	-0.2
Sub-Saharan Africa	5.1	3.3	1.6	3.3	-1.4	-0.7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6.0	4.5	3.8	5.1	-0.9	-0.4
World Growth Based on Market Exchange Rates	2.7	2.5	2.5	2.8	0.0	-0.1
World Trade Volume(goods and services) <sup>4)</sup>	3.7	2.6	2.7	3.9	-0.4	0.1
Advanced Economies	3.6	3.8	2.6	3.9	-0.4	0.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3.9	0.6	2.9	3.9	-0.5	0.1



〈표 6〉의 계속

(단위: %)

	실적치		전망치		4월 전망 대비 차이	
	2014	2015	2016	2017	2016	2017
Commodity Prices(U.S. dollars)						
Oil <sup>5)</sup>	-7.5	-47.2	-15.5	16.4	16.1	-1.5
Nonfuel	-4.0	-17.5	-3.8	-0.6	5.6	0.1
Consumer Prices						
Advanced Economies	1.4	0.3	0.7	1.6	0.0	0.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sup>6)</sup>	4.7	4.7	4.6	4.4	0.1	0.2

주: 1)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2)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 연도 기준이며 생산 증가는 시장 가격의 GDP 기준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4) 수출과 수입 생산물의 산술 평균  
 5)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 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5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50.79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16년 42.9달러, 2017년은 50달러  
 6)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uly 2016), Table 1

참고: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2016년 6월 24일부터 28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 IMF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2016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발표(2016.8.12.)<sup>16) 17)</sup>

-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였으며 2017년에는 3%로 상승 전망
  - 이러한 개선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재정 및 통화정책 완화 영향인 반면 수출은 여전히 어두울 것으로 전망
  -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1.2%, 2017년 1.9%로 전망
- 한국은 지난 6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현재 구조적 제약에 직면

- 급격한 인구 고령화, 수출에 과도한 의존, 기업 취약성 증가, 노동시장 왜곡, 생산성 저하 문제를 언급

- 이러한 구조적 제약 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 강조에 대해 지지하며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 구조개혁 장려에 재정지원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해서 중기적으로 수혜대상을 세심하게 선정하도록 하여 소비 및 생산성을 개선시킴으로써 빈곤·불평등 감소, 지원 제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업 구조조정에 동의하며 시의적절한 추진과

16) <http://www.imf.org/en/News/Articles/2016/08/12/19/30/PR16377-Korea-IMF-Executive-Board-Concludes-2016-Article-IV-Consultation>

주: 향후 "Republic of Korea: 2016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Staff Report) 형태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

17) 지난 6월 8일 IMF 실사단이 방한(2016.5.26.~6.8.) 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원문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6/pr16265.htm>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6.

동시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합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중요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며, 서비스부문 및 중소기업 사이에 경쟁 촉진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필요

- 현 경제 약세 국면에서 경기부양책과 정책금리 인하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재정 · 통화 완화 정책의 효과성과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표 7〉 한국 경제 전망

(단위: %, 조원, GDP 대비 %)

	실적				전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GDP 성장률(%)	2.3	2.9	3.3	2.6	2.7	3.0
총 국내수요	1.2	0.7	2.5	3.7	2.4	3.3
최종 국내수요	1.4	2.5	2.5	2.9	3.0	3.4
수요	2.2	2.2	2.0	2.4	2.7	3.5
총고정투자	-0.5	3.3	3.4	3.8	3.6	3.2
명목GDP(조원)	1,377	1,429	1,486	1,559	1,622	1,697
물가(%)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2.2	1.3	1.3	0.7	1.2	1.9
통합재정(GDP 대비 %)						
수입	22.1	21.5	21.2	21.3	22	21.7
지출	20.6	20.9	20.8	21	21.1	20.6
순용자(+)/순차입(-)	1.6	0.6	0.4	0.3	0.8	1.0
종합수지(Overall balance)	1.3	1.0	0.6	0.0	0.3	0.5
사회보장기금 제외	-1.3	-1.5	-2.0	-2.4	-2.3	-2.0
일반정부 채무	32.2	34.3	35.9	37.9	38.7	39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체 연구원〉



OECD

- OECD, 2016년 1분기 고용률(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발표(2016.7.18.)<sup>18)</sup>
  - (OECD 전체) OECD 회원국의 2016년 1분기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3%p 상승한 66.8%임
    - OECD 회원국의 청년(15-24세)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2%p 증가한 40.7%를 기록
      - ☞ 다만 유로지역 청년 고용률은 전분기와 동일

- 주요 국가별 2016년 1분기 고용률
  - 유로지역의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4%p 증가한 65.1%로 지난 10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임
  - 미국(69.3%)과 일본(74.0%)도 각각 0.4%p, 캐나다(72.5%)와 영국(73.3%)도 0.1%p 전분기 대비 고용률이 상승
  - 한국의 2016년 1분기 고용률은 전분기와 같은 65.9%를 기록

<표 8> OECD 회원국의 청년 고용률(15-24세)

(단위: %)

	2015	2015		2016
	Q1	Q3	Q4	Q1
OECD전체	40.0	40.2	40.5	40.7
주요 7국	43.3	43.4	43.8	44.1
유럽연합	33.0	33.0	33.3	33.4
유로지역	30.8	30.6	30.8	30.8
호주	57.7	58.6	59.1	58.6
캐나다	56.0	55.6	55.6	55.3
프랑스	27.8	27.7	27.9	27.9
독일	46.2	44.6	45.4	45.0
이탈리아	15.3	15.9	16.1	16.1
일본	40.1	40.5	41.6	42.1
스페인	17.4	18.2	18.2	18.2
영국	49.5	50.2	50.8	51.1
미국	48.3	48.6	48.7	49.4
한국	26.5	26.9	27.2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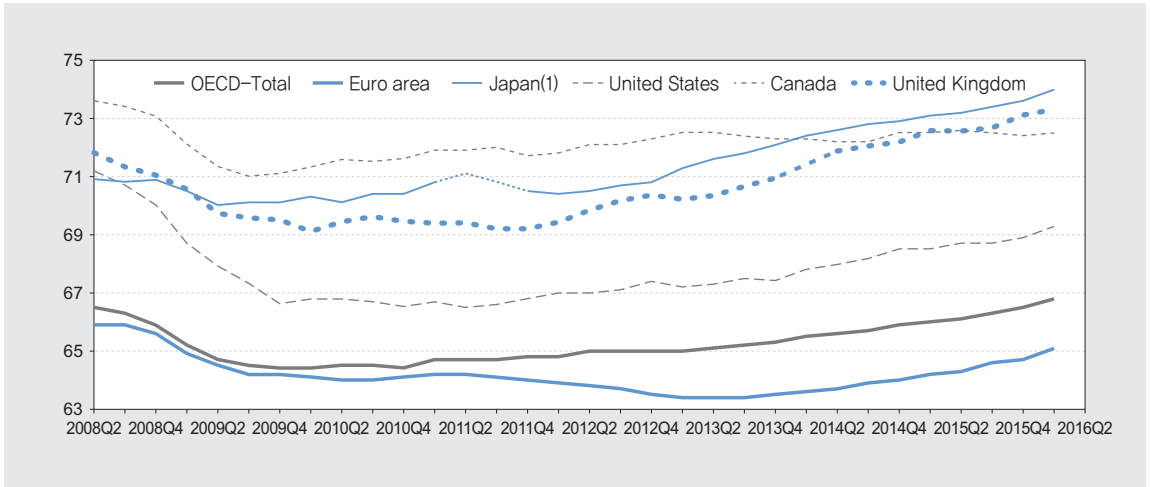
주: OECD전체 통계는 라트비아를 포함

출처: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18) 출처: <http://www.oecd.org/employment/labour-stats/employment-situation-first-quarter-2016-oecdhtml.htm>

[그림 1] OECD 국가의 분기별 고용률(계절조정)

(단위: 생산가능인구 대비, %)



주: 일본의 2011년 1분기 및 3분기 통계 없음  
출처: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표 9>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08	2014	2015				2016
					Q2	Q4	Q1	Q2	Q3	Q4	Q1
OECD전체	64.9	65.1	65.7	66.2	66.5	65.9	66.0	66.4	66.3	66.5	66.8
주요 7국	67.7	68.0	68.6	69.1	69.6	68.9	69.0	69.1	69.2	69.4	69.7
유럽연합	64.1	64.1	64.8	65.6	65.8	65.1	65.3	65.4	65.7	65.9	66.2
유로지역	63.7	63.5	63.8	64.5	65.9	64.0	64.2	64.3	64.6	64.7	65.1
호주	72.3	72.0	71.6	72.2	73.3	71.5	71.8	72.0	72.2	75.5	72.5
캐나다	72.1	72.4	72.3	72.5	73.6	72.5	72.5	72.6	72.5	72.4	72.5
프랑스	64.1	64.1	63.8	63.8	64.9	63.9	63.8	63.8	63.8	63.9	64.2
독일	73.0	73.5	73.8	74.0	69.8	73.9	74.0	73.8	74.0	74.2	74.4
이탈리아	56.6	55.5	55.7	56.3	58.8	55.8	56.0	56.2	56.5	56.5	56.8
일본	70.6	71.7	72.7	73.3	70.9	72.9	73.1	73.2	73.4	73.6	74.0
스페인	55.8	54.8	56.0	57.8	65.0	56.7	57.1	57.6	58.1	58.6	59.1
영국	69.9	70.5	71.9	72.7	71.8	72.2	72.6	72.5	72.7	73.2	73.3
미국	67.1	67.4	68.1	68.7	71.2	68.5	68.5	68.7	68.7	68.9	69.3
한국	64.2	64.4	65.3	65.7	63.9	65.5	65.7	65.6	65.8	65.9	65.9

주: OECD전체 통계는 라트비아를 포함  
출처: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해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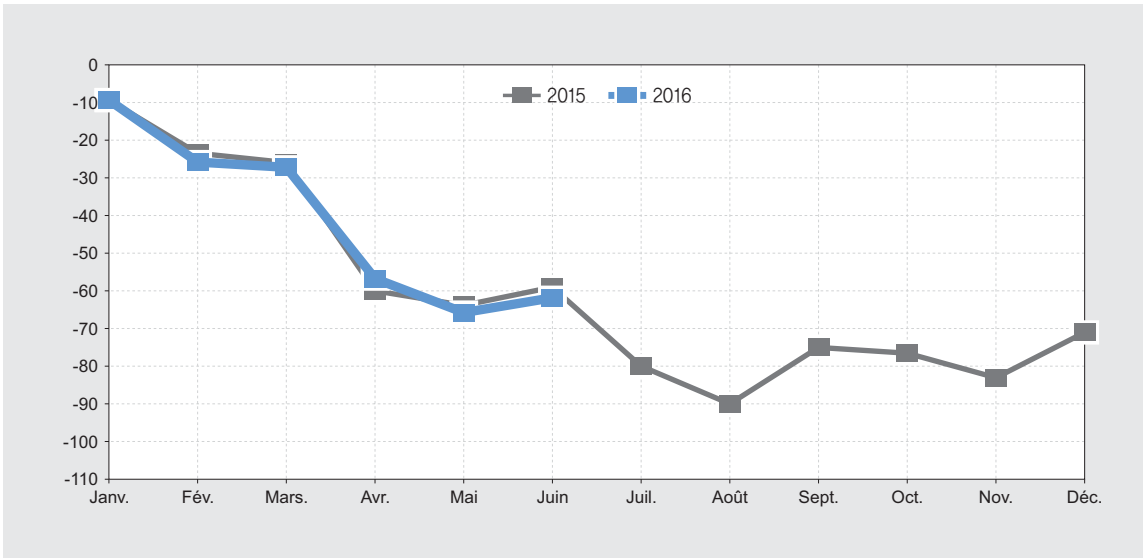
### 프랑스

- 2016년 상반기 예산집행결과 발표(2016.8.9.)<sup>19)</sup>
  - (재정수지) 2016년 상반기(1월-6월)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억유로 증가한 618억유로<sup>20)</sup>이며, 전년 동기 대비 차이는 지불청(ASP: Agence de service et de paiement)<sup>21)</sup>의 특별 선급금에 기인
    - (지출) 재정지출은 1,939억유로로 2016년 본예산 계획과 일치
    - (수입)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억유로 증가한 1,551억유로

- ☞ 조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억유로 증가한 1,494억유로이며 2016년 현 시점에서 세입의 증가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
  - 세목 중 부가가치세(+25억유로)와 에너지제품소비세(+17억유로)가 1분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억유로 감소한 47억유로이며 주로 배당금 수입 감소에 기인
  - (특별회계) 특별회계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유로 증가한 230억유로

[그림 2] 2016년 상반기 재정수지 집행결과

(단위: 십억유로)



출처: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juin 2016, 2016.8.9.

19) 프랑스 예결산,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6/situation-mensuelle-budget-etat-30-juin-2016#\\_V6mZv03r2Uk](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6/situation-mensuelle-budget-etat-30-juin-2016#_V6mZv03r2Uk)

20) 총재정수지로 일반회계 재정수지와 특별회계 재정수지의 합(-1,939억유로-1,551억유로+230억유로)

21) 구 국립농업경영구조개선센터(CNASEA)이며 지역농업정책인 영농인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 담당

〈표 10〉 2016년 상반기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증감률
재정지출	193,846	193,896	0.0
정부지원 (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988	988	0.0
인건비	61,868	62,367	0.8
운영비	25,554	25,457	-0.4
채무비용	20,046	20,438	2.0
투자지출	5,247	5,244	-0.1
정부개입지출	41,275	46,295	12.2
금융활동 (opérations financières)	861	853	-0.9
지방정부 이전금 및 유럽연합 분담금	38,007	32,254	-15.1
재정수입	152,428	155,102	1.8
조세수입	145,145	149,404	2.9
세외수입	5,613	4,770	-15.0
협력기금 (Fonds de concours)	1,671	929	-44.4
일반회계 재정수지	-41,418	-38,793	-6.3
특별회계 재정수지	-17,076	-23,004	34.7
총재정수지	-58,494	-61,798	5.6

출처: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juin 2016, 2016.8.9.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독일**

- 통계청, 2016년 2사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6.8.12.)<sup>22)</sup>
  - 2016.2사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 이는 강한 성장을 보인 1사분기(0.7%)보다 0.3%p 낮은 수치
    - 경상수지 흑자가 GDP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가계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또한 증가하였으나 건설, 설비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은 감소

〈표 11〉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2015. 1Q	2015. 2Q	2015. 3Q	2015. 4Q	2016. 1Q	2016. 2Q
전분기 대비	0.2	0.5	0.2	0.4	0.7	0.4
전년 동기 대비	1.2	1.8	1.7	1.3	1.9	1.8

주: 연쇄가격조정, 계절조정 적용  
출처: 통계청, Press release, 2016.8.12.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22) 통계청, Press release, 2016.8.12. [https://www.destatis.de/EN/PressServices/Press/pr/2016/08/PE16\\_279\\_811.html](https://www.destatis.de/EN/PressServices/Press/pr/2016/08/PE16_279_811.html)



● **일본**

엔, 세출결산총액은 98조 2,303억엔 규모로 차이는 2,524억엔

1. 예산·결산 등

- 2015년도 결산 발표(2015.7.29.)<sup>23)</sup>
  - FY2015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02조 1,753억

〈표 12〉 FY2015 일반회계 결산개요

(단위: 억엔)

구분	금액	참고
1. 세입결산총액(수납된 세입액)	1,021,753	
2. 세출결산총액(지출된 세출액)	982,303	
3. 재정법 제 41조 잉여금	39,449	(1-2)
4. 2014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잔액	450	
5. 신규발생잉여금	38,999	(3-4)
6. 2016년도 이월 세출 예산재원	35,919	
7. 이월 세출예산 공제 후 신규발생 잉여금	3,080	(5-6)
일반분	2,527	
(1) 세입의 순 증감	-11,931	주요증감 내역
세수	-1,385	
세외수입	4,454	
공채금	-15,000	
(2) 세출의 불용	14,459	주요증감 내역
국채비	4,434	
예비비	1,699	
생활보호 등 대책비	566	
동일본대지진부흥분	552	
세입의 증감(2011년도 1·2차 추경분)	19	
세입의 증감(2011년도 3차 추경분, 2015년도 추경분)	533	
8.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으로 순잉여금 계상 공제금액	536	
9. 부흥분(2011년도 1차, 2차 추경분에 따른 잉여금)	19	
10. 차이	2,524	(7-8-9)

주: 1. 재정법 6조의 순 잉여금(7-8)은 2,544억엔  
 2. 계수는 버림을 하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재무성, 「平成27年度決算概要」, 2016.7.29.

23) 재무성, 「平成27年度決算概要」, 2016.7.29,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account/ty2015/20160729ippan.html](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account/ty2015/20160729ippan.html)

## 2. 기타

### ■ 내각부, 「수정경제전망」 발표(2016.7.13.)<sup>24)</sup>

- 내각부는 2016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실질 1.7%에서 0.9%로 하향 조정
  - 일본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및 국내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등 민간수요 개선 미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 ☞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하락과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 금융 자본·상품시장 동향,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 있음
  - 정부는 2015년 추경 및 2016년도 예산 조기집행하고 2016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 지원 및 재해복구를 추진할 예정

### ■ 재무성, 「2017년도 개산요구 기본방침」 각의 승인 (2016.8.2.)<sup>25)</sup>

- 2017년도 예산은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6」(6.2각의)에 근거해 경제·재정 재생 계획 하에 세출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예산을 중점화
  - (연금 의료) 고령화에 따른 증가분에 경제·물가 동향을 감안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6,400억엔을 더한 범위 내에서 요구
  - (지방교부세교부금) 「경제·재정재생계획」에 근거해서 요구

- (의무적 경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며, 참의원 선거에 필요한 경비의 감소 등 특수요인에 대해서는 가감할 수 있음
  - ☞ 의무적 경비를 재량적 경비로 요구하는 경우 요청 기본금액에 포함
- (기타 경비) 전년도 예산액의 90% (요구기초액) 범위 내에서 요구
- (우선과제 추진범위) 예산 중점화를 추진하기 위해 「1억 총활약사회」, 「기본방침 2016」 및 「일본재흥전략 2016」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범위를 설정해 각 부처는 요구기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요구가능
- (요구기한) 8월 말까지 기한을 엄수

### ■ 내각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 발표(2016.8.2.)<sup>26)</sup>

- 일본정부는 구조개혁과 사회보장 개혁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경제대책을 발표
  - 1억 총활약사회 실현, 21세기형 인프라정비, 브렉시트 대응 및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지역경제활성화, 지진 후흥 및 안전 방재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며 재정건전화 목표는 지속
- (1억 총활약사회 실현) 육아·간병 서비스 정비, 청소년 지원 확충, 여성활약 추진, 사회 전체의 소득·소비 수준 향상
  - (육아·간병 서비스 환경정비) 보육시설 대기아동을 없애기 위한 인재확보, 교사의 처우개

24) 출처: 내각부, 「平成28年度 内閣府年央試算」 <http://www5.cao.go.jp/keizai/mitoshi/2016/h28shisan.pdf>

25) 재무성, 「平成29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16.8.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y280802.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y280802.pdf)

26) 내각부, 「未来への投資を実現する経済対策」, 2016.8.2, [http://www5.cao.go.jp/keizai/keizaitaisaku/20160802\\_taisaku.pdf](http://www5.cao.go.jp/keizai/keizaitaisaku/20160802_taisaku.pdf)



선, 간병인력의 즉각적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조성,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등을 검토

- (사회 전체의 소득과 소비수준 향상) 연금수급 자격기간의 단축, 고용보험제도의 재검토, 기존주택의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등을 시행
- (구조개혁) 산업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노동시장 개혁, 인재육성의 일체적 개혁을 실시
  - (노동시장 개혁)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을 준비, 고령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재취업 지원, 외국인력 활용,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3%)을 통한 소비 진작 도모

• (경제대책 효과) 이번 경제조치로 투자·소비 진작 및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을 수반하는 경제 성장이 기대되어 단기적으로 실질GDP 1.3%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표 13〉 경제대책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규모

(단위: 조엔)

	주요 추진과제	사업규모	재정조치		
			국비+지방비	재정투융자	합계
1억 총활약사회 실현가속	(1) 육아·간병 서비스 환경 정비 (2) 청소년 지원 확충, 여성활약 추진 (3) 사회 전체의 소득·소비 수준 향상	3.5	2.5	0.9	3.4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1) 관광 인프라 정비 (2) 농림수산물품의 수출 촉진과 농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3) 리니어중앙신칸센 정비 가속 (4)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5) 생산성 향상	10.7	1.7	4.4	6.2
브렉시트 리스크 관리 및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1)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 (2)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경영력 강화·생산성 제고 (3) 지방 창생(지역경제활성화) 추진 (4) 위험에 대한 대응	10.9	0.6	0.7	1.3
지진 부흥 및 방재대응 강화	(1) 구마모토 지진 복구·부흥 (2) 동일본 대지진 부흥 가속화 (3) 재해 대응 강화·인프라 노후화 대책 (4) 안전확보	3.0	2.7	-	2.7
합계		28.1	7.5	6.0	13.5

출처: 내각부, 「未来への投資を表現する経済対策」, 2016.8.2.

- 내각부, 2016년 2분기 GDP성장률 1차 속보치 발표 (2016.8.15.)<sup>27)</sup>
  - 2016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0% (연율 0.2%), 명목GDP 성장률은 0.2%(연율 0.9%)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
    - 주요요인으로 민간주택투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수출도 민간의 예측치인 -0.3%를 크게 하회하는 -1.5%를 기록
      - ☞ 주택투자는 신규주택 착공의 증가로 인해 1

- 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
  - ☞ 재화 · 서비스 수출은 선박수리, 철강, 석유 제품 등이 감소에 기여해 전기 대비 1.5% 감소하였고, 수입은 의류, 의약품, 반도체 제조장비의 감소로 인해 0.1% 감소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여가활동, 음식서비스 등의 감소와 자동차, TV 등의 증가에 기인해 실질 0.2% 증가로 개인소비에 대한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 존재

〈표 14〉 2016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 1차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기 대비, %)

항목	2015년			2016년			2016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기여도	2분기 연율환산
국내총생산(GDP)	-0.4	0.5	-0.4	0.5	0.0	-	0.2
국내수요 (내수기여도)	-0.0 (-0.0)	0.3 (0.3)	0.5 (-0.5)	0.4 (0.4)	0.3 (-)	- (0.3)	12 -
민간수요	-0.2	0.4	-0.6	0.2	0.2	(0.2)	0.8
민간최종소비	-0.7	0.5	-0.8	0.7	0.2	(0.1)	0.6
주택투자	1.7	1.1	-0.5	-0.1	5.0	(0.1)	21.3
설비투자	-0.9	0.7	1.2	-0.7	-0.4	(-0.1)	-1.5
민간재고증감 <sup>1)</sup>	(0.3)	(-0.1)	(-0.2)	(-0.1)	-	(-0.0)	-
공적수요	0.5	-0.1	0.0	0.8	0.6	(0.1)	2.4
정부소비	0.3	0.2	0.8	0.9	0.2	(0.0)	0.9
공적투자	1.2	-1.9	-3.3	0.1	2.3	(0.1)	9.5
공적재고증감 <sup>1)</sup>	(-0.0)	(0.0)	(-0.0)	(0.0)	-	(-0.0)	-
재화 · 서비스 순수출 <sup>2)</sup>	(-0.4)	(0.2)	(0.1)	(0.1)	-	(-0.3)	-
수출	-4.2	2.6	-0.9	0.1	-1.5	(-0.3)	-5.9
수입	-1.8	1.2	-1.1	-0.5	-0.1	(0.0)	-0.3

주: 1) ( ) 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6(平成28)年4~6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6.8.15.

27) 내각부, 「2016(平成28)年4~6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6.8.15. [http://www.esri.cao.go.jp/ji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http://www.esri.cao.go.jp/ji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재무성, 아소 부총리 기자회견 2016.8.15, [http://www.mof.go.jp/public\\_relations/conference/my20160815.htm](http://www.mof.go.jp/public_relations/conference/my20160815.htm)



〈표 15〉 주요경제지표

	2015년 (실질)	2016년 (정부경제전망 1/22)	2016년 (수정전망 7/13)	2017년 (참고시산)
실질GDP	0.8	1.7	0.9	1.2
민간소비	△0.2	2.0	0.9	1.4
주택투자	2.4	3.8	0.8	1.3
설비투자	2.0	4.5	2.0	3.4
정부지출	0.6	0.0	0.6	-
정부소비	1.5	0.4	0.8	-
공공투자	△2.7	△2.1	△0.2	-
수출	0.4	4.8	1.5	-
수입	△0.1	5.2	1.1	-
내수기여도	0.7	1.8	1.8	1.2
외수(순수출) 기여도	0.1	△0.1	0.1	△0.0
명목GDP	2.2	3.1	2.2	2.2
완전실업률	3.3	3.2	3.2	3.1
소비자물가(종합)	0.2	1.2	0.4	1.4
GDP 디플레이터	1.4	1.4	1.3	1.0

주: 1. 기여도 및 실업률 이외는 전년 대비 변화율

2. 아베총리의 경제대책 효과는 미반영

3. 2016년도 「정부경제전망」은 2016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영의 기본자세(2016년 1월 22일 각의)에 나타난 전망

출처: 내각부, 「平成28年度 内閣府年央試算」, 2016.7.13.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영국

- 영국 통계청, 2016년 2분기 공공부문 재정 현황 발표(2016.7.21.)<sup>28)</sup>
  - 2016년 2분기 공공부문 순차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3억파운드 감소한 256억파운드로, 2010년 3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
    - 경상예산수지 적자(Current Budget Deficit)

- 는 전년 동기 대비 32억파운드 감소한 195억 파운드
  - 순투자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해 9억파운드가 증가한 60억파운드로 집계
- 6월기준 공공부문 순채무는 GDP 대비 84%인 1조 6,207억파운드로 전년대비 476억파운드 증가

<sup>28)</sup> 출처: 통계청, <http://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publicsectorfinance/bulletins/publicsectorfinances/june2016>

〈표 16〉 공공부문<sup>1)</sup> 재정(공공은행 제외)

(단위: 십억파운드)<sup>2)</sup>

	6월			4월~6월		
	2016	2015	변화	2016/17	2015/16	변화
순차입 <sup>3)</sup>	7.8	10	-2.2	25.6	27.9	-2.3
경상수지적자	5.4	7.6	-2.3	19.5	22.8	-3.2
순투자	2.5	2.3	0.1	6.0	5.1	0.9
순채무	1,620.7	1,573.1	47.6	1,620.7	1,573.1	47.6
(GDP 대비 %)	84.0	84.1	-0.1	84.0	84.1	-0.1

주: 1)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기업, 영국은행 및 금융기업(공공은행)으로 구성

2) not seasonally adjusted

3) 순차입은 경상수지적자와 순투자의 합

- 영국 통계청,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6. 7.27.)<sup>29)</sup>
  - 영국 통계청은 Economic Review, June 2016에서 2016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발표
    - 2016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로(2015년 동기 대비로는 2.2%), 1분기 0.4% 대비 0.2%p 증가
    -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성장률은 각각 0.5%, 2.1%로 2분기 GDP 성장을 이끌었으며, 건설업과 농업은 -0.4%, -1.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위축세를 나타냄
- 영국 중앙은행,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부양 패키지 발표(2016. 8.4.)<sup>30)</sup>
  - 통화정책위원회(MPC)는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파운드화가 하락하고 중·단기 경제 전망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확대를 결정
  -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25%로 0.25%p 인하
    - 2009년 3월 이후 7년 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며, 이번 인하로 영국 기준금리는 322년 영국 중앙은행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

〈표 17〉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4	2015				2016	
	Q4	Q1	Q2	Q3	Q4	Q1	Q2
실질GDP 성장률	0.8	0.3	0.4	0.4	0.7	0.4	0.6

출처: 영국 통계청, Economic Review, June 2016.

29) 영국 통계청, 2016.7.27,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grossdomesticproductpreliminaryestimate/aprtojune2016/pdf>

30) 영국 중앙은행,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minutes/Documents/mpc/mps/2016/mpsaug.pdf>



- 1,700억파운드 규모의 통화완화 조치
  - 6개월 내에 기존 3,750억파운드의 국채 자산 매입 규모를 600억파운드 확대해 4,350억파운드로 상향조정
  - 18개월 내에 최대 100억파운드 규모의 회사채 신규 매입
  - 1,000억파운드 규모의 기간펀딩프로그램(TFS)<sup>31)</sup> 도입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안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하원과 상원에서 조정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정식예산으로 확정

- 미 관리예산처(OMB), FY2017 예산안 수정(Mid-Session Review, MSR) 발표 (2016.7.15.)<sup>32)</sup>
  - (경제 전망) FY2016 4분기(작년 4분기 대비) 실질GDP 전망치는 2.2%로 대통령 예산안 전망에 비해 0.3%p 하락
    - 실업률의 경우, 당초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인 4.8%를 기록한 뒤, 2017~2019년 사이에 4.6%로 하락 전망



미국

1. 예산·결산 등

- 할 로저스(Hal Rogers) 미 하원 세출위원장, FY2017 12개 세출법안 승인 완료 발표 (2016.7.14.)<sup>32)</sup>
  - 노동·보건복지·교육(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Education, and Related Agencies) 분야 세출심사를 끝으로 모든 세출법

〈표 18〉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예산안 vs MSR)

경제전망	2015	2016		2017		...	2026	
	Actual	Projections						
		예산안	수정	예산안	수정	...	예산안	수정
GDP 명목규모	17,947	18,669	18,502	19,510	19,264	...	28,603	28,055
실질GDP	2.4	2.6	1.9	2.6	2.5	...	2.3	2.2
CPI-U	0.1	1.5	1.2	2.1	2.2	...	2.3	2.3
실업률	5.3	4.7	4.8	4.5	4.7	...	4.9	4.8

주: 경제지표의 각 년도는 calendar year 기준임

출처: OMB, Mid-Session Review, Budget of the U.S. Govt, FY2017

31) 기간펀딩프로그램(TFS; Term Funding Scheme): 시중은행에 기준금리에 가까운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

32)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budget/fy2017/assets/17msr.pdf>

33)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budget/fy2017/assets/17msr.pdf>

- (재정 전망) FY2016 재정적자는 2월 예산안 대비 160억달러 감소한 6,000억달러로 하향 수정되었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는 2월 예산안과 같은 3.3%로 추정.
  - (세입) FY2016 총 규모는 예산안 전망보다 590억달러 하향 조정된 3조 2,760억달러 전망 (GDP 대비 예산안 전망보다 0.2%p 낮은 17.9% 전망)
  - (세출) FY2016 총 규모는 예산안 전망보다 750억달러 하향 조정된 3조 8,760억달러 전망 (GDP 대비 예산안 전망보다 0.3%p 낮은 21.1% 전망)
  - (국가채무) FY2016 비정부부문소유채무는 GDP 대비 당초 예산안보다 0.5%p 상승한 77.0% 전망(총 규모: 14조 1천 280억달러 전망)

〈표 19〉 미국 재정전망(예산안 vs MSR)

(단위: GDP 대비 %)

재정 전망		실적	전 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예산안	18.2	18.1	18.9	19.4	19.5	19.8	20.0	19.9	19.9	19.9	20.0	20.0
	수정		17.9	19.1	19.7	19.7	19.9	20.1	20.0	19.9	20.0	20.0	20.1
지출	예산안	20.7	21.4	21.5	21.6	22.1	22.3	22.4	22.7	22.6	22.4	22.7	22.8
	수정		21.1	21.4	21.3	21.8	21.9	22.1	22.4	22.4	22.2	22.5	22.7
재정적자	예산안	2.5	3.3	2.6	2.3	2.6	2.4	2.4	2.8	2.7	2.5	2.7	2.8
	수정		3.3	2.3	1.7	2.1	2.0	2.1	2.4	2.4	2.2	2.5	2.6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예산안	73.6	76.5	76.5	76.1	76.1	75.8	75.5	75.5	75.4	75.2	75.2	75.3
	수정		77.0	77.1	76.0	75.5	74.8	74.3	74.0	73.7	73.2	73.0	73.0

출처: 1. OMB, *Fiscal Year 2017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6.2.9.  
 2. \_\_\_\_\_, *Mid-Session Review,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Y2017, 2016.7.15.

## 2. 기타

- 미 의회예산처(CBO), 2016 장기재정전망(Long-Term Budget Outlook) 보고서 발표(2016.7.12.)<sup>34)</sup>
  - ※ 204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은 10년을 기준(10-year baseline)으로 한 기준선전망을 기준으로 추론하여 분석
  - (경제) 실질GDP 성장률(물가인상률 효과를 제외)의 향후 30년간 평균은 2.1%로 전망되며, 지난 50년간 실질GDP 성장률 평균인 2.9%보다 낮은 수준임
  - (재정수지) 2016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2.9% 수준으로 예측되며, 2046년에는 GDP 대비 8.1%까지 상승할 전망
    - (지출) 연방지출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2009년에 (GDP 대비) 23%로 크게 증가. 이후 경기

34)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4th-congress-2015-2016/reports/51580-LTBO-One-Col.pdf>



가 회복하면서 2014년에 19%까지 하락하였으며, 2046년에 22.4%까지 근접할 전망(GDP 대비 과거 50년 연평균은 18%, 순이자지출 제외)

☞ 지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 보장제도 지출은 2016년에 GDP 대비 4.9% → 2046년에는 GDP 대비 6.3%까지 증가할 전망

☞ 베이비붐 세대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2046년에는 메디케어 등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보건(health) 프로그램 지출이 연방지출(이자비용 제외)의 50% 정도를 차지할 전망

\* <참고> 인구는 올해(2016년) 기준, 3억 2천 8백만명 → 2046년에 4억명으로 연평균 0.7% 증가 전망(지난 50년간 평균인 0.9%보다 낮은 수준)

\* 2046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6년 현재 15% → 2046년에 21%로 증가할 전망

- (세입) 향후 10년간 GDP 대비 세입비중은 18.0%~18.2% 사이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 2046년에는 GDP 대비 19.4% 전망 (GDP 대비 과거 50년 연평균은 17%)

- (국가채무) 비정부부문 소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2007년말 GDP 대비 35% → 2016년 말에는 75%로 전망

\* 비정부부문 소유채무는 2026년에 86%를 기록한 후, 46년에는 141%로 세계2차대전 직후의 최고점(106%)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

■ 미 하원 예산위원회(House Budget Committee), 재정지속가능성 관련 「재정 목표의 필요성(The Need for Fiscal Goals)」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표(2016. 8.16.)<sup>35)</sup>

• (개요) 균형재정(balanced budget)이 목표(fiscal target)이나, (균형재정을 이룰 수 없다면) 대중의 합의가 묻어 있는 재정목표의 수립을 우선적으로 하여,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 및 재정·경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

\* 균형재정 정의 관련 원문내용: "Government should not overspend its resources"(재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않음을 기본상식(common sense)으로 설명하고 있음)

- 미국 초창기, 통용되던 재정의 기준은 균형 재정이었으나, 동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재

<표 20> 장기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FY 2016	FY2017~FY2026	FY2037~FY2046
재정수입	18.2	18.1	19.1
재정지출	21.1	22.0	27.2
재정적자	2.9	3.9	8.1
비정부부문소유 채무	75	86	141
GDP 규모(조달러)	18.5	27.7	62.3

출처: The 2016 Long-Term Budget Outlook, CBO, July 2016.

35) [http://budget.house.gov/uploadedfiles/fiscal\\_goals.pdf](http://budget.house.gov/uploadedfiles/fiscal_goals.pdf)  
<http://budget.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4288>

정정책의 표류기를 거쳐 대안으로 들어온 개념을 ‘재정지속가능성’으로 설명

\* 재정지속가능성은 GDP 대비 채무 규모, GDP 대비 적자 한도(deficit limit) 및 세입 · 세출 목표(target) 등 한 가지로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elusive) 개념임을 지적

- (균형재정의 역사) 미국 초창기, 전시(wartime)를 제외하고는 균형재정이란 목표를 일반적으로 지켜왔으나, 세계 2차 대전 이후 극히 감소함
  - 균형재정은 1791~1939년까지 총 94회 연도 이상 달성, 20세기 들어서 세계 2차 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도 총 31회 연도 이상 지켜졌으나 2001년 이후로는 매해 적자를 기록

〈표 21〉 미국 균형 재정 사례

(단위: 회계연도)

기간	구분	균형재정 횟수
1791~1840	1791~1939	35
1841~1890		36
1891~1939		23
<hr/>		
1901~1950	20세기	22
1951~2001		9
2001~2016		0

출처: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Budget, The Need for Fiscal Goals, 16 Aug. 2016.

- (최근 재정 현황)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재정적자는 정치적으로 수용되지 못했으나, 2012년에는 1조달러(정부 총 지출의 약 40%비중) 가까운 재정 적자를 기록
  - 재정적자는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현재 약 5천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재정목표 주요 기준 분석) 재정목표를 이행할 기간(time table)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 ① 균형재정과 ②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주요 재정목표 기준으로 언급
- (균형재정) 현재 연방정부의 균형재정은 현금주의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기에 인구구성변화 등 장기적인 추세를 관리하기 힘든 단점이 있음
  - ☞ 또한, 경제 성장이 느리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 복지수요가 크게 증대할 경우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 발생주의 개념으로 적용할 시, 장기적인 재정 관리에 용이하지만 자본(예, 인적자본, 교육)과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 단순한 지출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에 만성적인 지출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GDP 대비 채무 비율) 경제학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준으로서 정부재정운용에 유연한 장점이 있으나 채무비율이 높을 경우 긴급 상황(전쟁, 자연재해 및 경제 악화)에서는 유연성이 낮아지는 단점 또한 존재
  - ☞ 일반적으로 EU의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기준인 GDP 대비 60%를 국제적 기준으로 간주
  - ☞ 단, 목표수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magic number)보다도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신중한 채무관리) 신호(signal)를 전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
- (경제성장과 연계한 지출 제한) 연방정부의 지출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
  - ☞ 동 기준은 경기 악화 시 관리가 용이하지 않



지만 작동만 제대로 된다면 균형재정 달성 확률이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능하며 채무 감소와 함께 채무이자지출(debt service)도 감소하는 이점이 있음

\* 경제성장 연계 지출제한은 일반적으로 연방세입 증가는 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함을 전제

• (재정목표 부차(secondary)적 기준) 세입·세출 caps 및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등이 언급되고 있음

- (세입세출 Cap) 세출 기준이 위반되면 세출에서 조정, 세입 기준이 위반되면 세입에서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를 통해 조정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EU에서 제시하는 GDP 대비 3%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기본적인 경제성장률의 기준을 3%로 전제하고 있음

\* (참고) 미국은 지난 7년 동안 평균 약 2%의 경제성장을 기록

• (재정목표 규율 방법) 헌법에서 재정목표를 규율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방법이며, 최소한 성문화(statute)의 양식으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언급

- 헌법에서 규정할 경우,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재정목표가 실패했을 경우 법적 대응(legal recourse)을 받게 되는 사후 관리적 방법 활용 가능

- 다만, 사법적인 판단의 강제 이행의 방법은 미지수(unanswered questions)로 남아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 정책흐름



-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아·태 국가에 한국 민간투자 노하우 전파
- 2016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 국가회계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본 자료는 2016년 11월 23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에서 발표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10월 집행실적(86.8%)은 최근 5년 내 최고치  
→ 재정은 정상 집행 중
- ◇ 금년 예산은 이월·비용 최소화 노력 → 재정의 적극적 역할 제고
- ◇ 연초 집행에 차질 없도록 금년 중 사전준비  
→ 연초 재정공백 최소화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① 본예산 및 추경 집행현황, ② 향후 집행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 ◇ **(’16.10월 말 집행실적)** 본예산 및 추경집행 현황
  - (본예산 집행) ’16년 연간계획 279.2조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 말까지 242.3조원을 집행, 10월 계획 237.9조원(85.2%) 대비 4.4조원(1.6%p) 초과 달성하였다.
  - 전체 10월 말 집행률(86.8%)은 신속한 자금배정, 집행 애로 요인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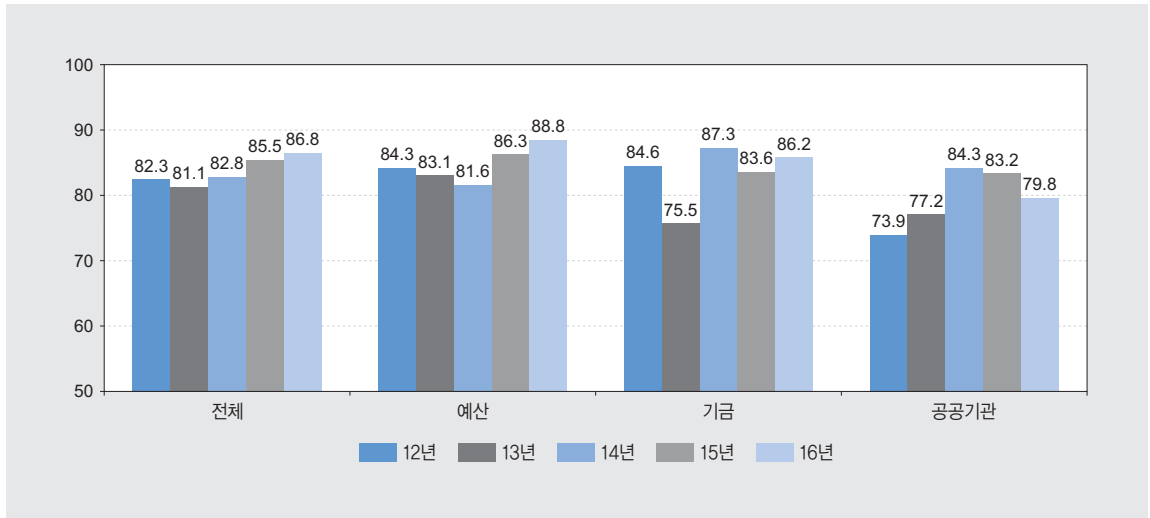
### ’16년도 10월 집행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16년 계획(A)	10월 계획		10월 실적		계획대비 달성도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금액(C-B)	비율(C/B)	(C/A)-(B/A)
□ 합계	279.2	237.9	85.2	242.3	86.8	4.4	101.9	1.6
○ 중앙부처	229.6	196.9	85.7	202.8	88.3	5.9	103.0	2.6
○ 공공기관	49.6	41.1	82.9	39.6	79.8	△1.5	96.4	△3.0

## 최근 5년간 10월 집행률 추이

(단위: %)



- **(추경 집행)** 총 8.6조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 말까지 7.6조원을 집행하여, 계획(6.7조원) 대비 0.8조원 초과하였고,
  - 11월 말까지는 계획(7.8조원) 대비 0.4조원 초과 한 8.2조원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집행계획)** 이월·불용 최소화 및 '17년 선제적 집행 준비

- **(이월·불용 최소화)**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 사업별 예상 이월·불용 규모 및 사유를 파악하고, 각 기관별로 추가 집행계획이 있는 사

업은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적극 집행하기로 하였다.

- 한편, 아직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세부계획 확정, 지방비 확보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하여 국비가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 **('17년 재정집행 선제적 대응)** 내년 초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칙적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준비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 '16년도 추경 집행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집행관리 대상사업	집행계획 및 실적/전망			
		10월 계획	10월 실적	11월 계획	11월 전망
'16 추경	8.6	6.8(78.6)	7.6(87.9)	7.8(90.6)	8.2(95.3)

주: 추경 11조원 중 회계기금간 거래(2.2조원), 목적예비비(0.2조원) 제외

# 아·태 국가에 한국 민간투자 노하우 전파

## –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 분과회의 개최 –

\* 본 자료는 2016년 11월 17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에서 발표한 「아·태 국가에 한국 민간투자 노하우 전파」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가 11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WB, IMF 등)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11.15.(화)~17.(목)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 아·태재정협력체는 우리나라와 WB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아·태지역 14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예산·국고분야 제도연구 및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13년 6월 출범하였다.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 세계은행(WB) 및 아·태지역 14개 회원국 간 재정분야 논의를 위해 '13년 출범한 재정협력체

■ 11회차\*를 맞는 이번 분과회의의 주제는 「재정건전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금조달」로,

\* 연차총회는 총 6회 개최

•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의 SOC 확충과 사회보험 체계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회원국들의 관심이 컸던 민간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한국은 세계적인 민간투자사업 선도 국가로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회원국들로부터 지속적인 노하우 전수 요청을 받아

왔다.

• 회원국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이번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OECD가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강석원 서기관은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PPP)을 소개하며,

• 인프라 투자와 재정건전성 관리 간 양립을 위한 한국의 다각적인 노력을 설명하였다.

– 특히,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적인 '사전적격성조사\*', PPP 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의 2%로 제한하는 '2% 준칙' 등을 소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 동일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정부 재원 투입에 비해 민간 재원을 투입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제도

• 이밖에도 기존의 고위험-고수익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BTO-rs 및 BTO-a)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위험분담형(BTO-rs) :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 부담손익공유형(BTO-a) : 정부가 최소운영비용(예: 70%수준의 파산기준점) 보전

## 2016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 본 자료는 2016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에서 발표한 「'16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가계의 소득·지출 소폭 증가, 평균소비성향(71.5%)은 동일

\* 가계소득 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0.7 (4)0.9 (16.1/4)0.8 (2)0.8 (3)0.7 가계지출 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0.5 (4)1.7 (16.1/4)0.5 (2)0.0 (3)0.6

◇ 추경 등 경기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및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지속 강화

1 (동향)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2/4분기 대비 감소, 지출은 확대

• (소득) 월평균 소득은 444.5만원(전년 동기비 명목 0.7%, 실질 △0.1%)

\* 명목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0.7 (4/4)0.9 ('16.1/4)0.8 (2/4)0.8 (3/4)0.7

\* 실질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0.0 (4/4)△0.2 ('16.1/4)△0.2 (2/4)0.0 (3/4)△0.1

- 취업자 증가\*, 임금상승\*\*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1.9%)이 증가하고, 맞춤형급여 도입효과('15.7) 감소 등으로 이전소득(0.4%)은 둔화

\* 취업자 수 증감(전년 동기비, 만명): (15.3/4)31.0 (4)37.6 (16.1/4)28.7 (2)28.9 (3)31.8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 동기비, %): (15.3/4)3.8 (4)3.4 (16.1/4)5.3 (2)2.9 (7)3.0 (8)4.3

- 자영업 취업자\* 증가 등으로 사업소득 증가율(1.1%)이 상승하고, 이자소득(△53.9%)\*\* 하락 등으로 재산소득(△31.9%)은 감소

\* 자영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비, 만명): (15.4/4)△13.5 (16.1/4)△9.6 (2/4)△6.8 (3/4)5.2

\*\* 예금은행 수신금리(%): ('15.3/4)1.46 (4/4)1.39 ('16.1/4) 1.33 (2/4)1.26 (3/4)1.20

• (지출) 월평균 지출은 341.7만원(전년 동기비 명목 0.6%, 실질 △0.2%)

\* 명목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0.5 (4)1.7 (15.1/4) 0.5 (2)0.0 (3)0.6

\* 실질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1.2 (4)0.6 ('15.1/4) △0.5 (2)△0.8 (3)△0.2

- 소비지출(0.7%)은 주류·담배, 통신 등이 감소한 반면,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오락·문화 등이 증가

- 비소비지출(0.5%)은 비경상조세는 감소, 사회보험·연금 증가, 이자비용은 15분기 연속 하락

•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0.7%) 및 흑자액(0.8%) 모두 증가

- 평균소비성향(71.5%)은 전년 동분기(71.5%)와 동일한 수준

② (분위별 동향) 1·2분위 소득 감소, 3·4·5분위 소득 증가

- 1분위 소득은 임시일용직\*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12.4%) 감소와 영세자영업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사업소득(△12.5%) 하락으로 감소

\* 임시일용직 증감(만명, 동기비) : (15.2/4)9.0 (3)1.6 (4)2.8 (16.1/4)△7.8 (2)△6.5

\*\* 고용원 없는 자영업 취업자 증감(만명, 동기비): (15.3/4)△15.5 → (16.3/4)5.1

- 5분위 소득은 사업소득(△6.4%)이 감소하는 가운데, 근로소득(6.9%)이 증가하면서 상승(2.4%)

③ (분배지표) 소득5분위배율(4.81)은 전년 동기(4.46) 대비 상승

\* 소득5분위 배율(3/4분기, 전국가구): ('12)4.98 ('13)5.05 ('14) 4.73 ('15)4.46 ('16)4.81

④ (평가) 3/4분기에는 고용 증가세 등에 힘입어 가계의 소득·지출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소득5분위 배율은 상승

- 4/4분기에는 구조조정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 美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추경 및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보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일자리 예산(조원/전년 대비): ('16)15.8(12.8%) ('17) 17.5 (10.7% ↑)

-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노력 지속 강화

\* <'17년 예산안> 생계급여 5.2%, 주거급여 2.5% 인상

참고 '16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I. '16년 3/4분기 가계소득·지출 동향

1. 가계소득 동향

- (가계소득) 월평균 소득은 444,5만원(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

- 명목소득(0.7%) 증가율은 전분기(0.8%)보다 소폭 하락

\* 명목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0.7 (4/4)0.9 ('16.1/4) 0.8 (2/4)0.8 (3/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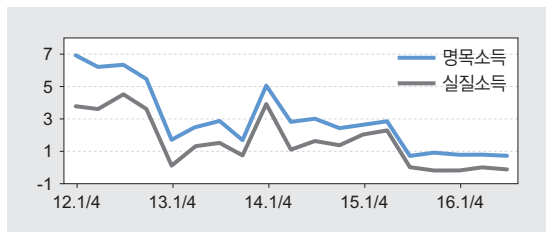
- 물가\*(0.8%)가 전분기(0.9%)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실질소득\*\* (△0.1%)은 전분기(0.0%) 대비 감소폭이 소폭 확대

\*\* 물가상승률(전년 동기비, %): ('15.3/4)0.7 (4/4)1.1 ('16.1/4) 1.0 (2/4)0.9 (3/4)0.8

\*\*\* 실질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0.0 (4/4)△0.2 ('16.1/4)△0.2 (2/4)0.0 (3/4)△0.1

분기별 소득증가율

(단위: 전년 동기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전년 동기비, %)

	'16.3/4	금액	구성비	증감률
소득		4,445.4	100.0	0.7
경상소득		4,341.4	97.7	1.4
근로소득		3,019.3	67.9	1.9
사업소득		862.4	19.4	1.1
재산소득		14.0	0.3	△31.9
이전소득		445.7	10.0	0.4
비경상소득		104.1	2.3	△23.4

- 근로소득(1.9%), 사업소득(1.1%), 이전소득(0.4%)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재산소득(Δ31.9%)은 큰 폭으로 감소
  - 취업자 증가\*, 임금상승\*\*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1.9%)이 증가하고, 맞춤형급여 도입효과(15.7) 감소 등으로 이전소득(0.4%)은 둔화
    - \* 취업자 수 증감(전년 동기비, 만명): (15.3/4)31.0 (4/4)37.6 (16.1/4)28.7 (2/4)28.9 (3/4)31.8
    -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 동기비, %): (15.3/4)3.8 (4/4)3.4 (16.1/4)5.3 (2/4)2.9 (7/3.0) (8/4)4.3
  - 자영업 취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사업소득 증가율(1.1%)이 상승하고, 이자소득(Δ53.9%)\*\* 하락 등으로 재산소득(Δ31.9%) 감소
    - \* 자영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비, 만명): (15.4/4)Δ13.5 (16.1/4)Δ9.6 (2/4)Δ6.8 (3/4)5.2
    - \*\* 예금은행 수신금리(%): ('15.3/4)1.46 (4/4)1.39 ('16.1/4)1.33 (2/4)1.26 (3/4)1.20
- 비경상소득(Δ23.4%)은 퇴직금\*(Δ71.9%) 등의 영향으로 감소
  - \* 초중등 명예퇴직 교원(명): ('14)5,533 ('15)8,858 ('16)5,399 (Δ39.0%)

## 2. 가계지출 동향

- **(가계지출)** 월평균 가계지출은 341.7만원(전년 동기 대비 0.6%)으로 소비지출(0.7%), 비소비지출(0.5%) 증가율 모두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
  - \* 소비지출(전년 동기비, %): ('15.3/4)Δ0.5 (4/4)1.7 ('16.1/4)0.6 (2/4)0.0 (3/4)0.7 비소비지출(전년 동기비, %): ('15.3/4)Δ0.4 (4/4)1.6 ('16.1/4)0.3 (2/4)0.1 (3/4)0.5
- 소비지출은 월평균 257.9만원(전년 동기 대비 명목 0.7%, 실질 Δ0.1%)
  - 총 12개 지출항목 중 의류·신발, 오락·문화 등 7개 항목 증가, 통신, 주류·담배, 교통 등 5개 항목 감소
    - 의류\*·신발(1.0%)은 7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 벗어나 증가 전환

- \* 백화점 의류매출 증가율(동기비, %): (15.3/4)Δ4.2 (4/4)Δ1.8 (16.1/4)Δ0.7 (2/4)2.9 (3/4)3.1
-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7.1~9.30, 20만원 한도 구매가격 10% 환급) 등의 영향으로 가정용품\*·가사서비스(18.4%)가 크게 증가
  - \* 백화점 가전매출 증가율(동기비, %): (15.3/4)6.8 (4/4)15.9 (16.1/4)6.5 (2/4)3.8 (3/4)9.6
- 주택매매 감소\*에 따른 주택유지 및 수선(Δ31.6%)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용 연료비 증가(4.9%)로 주거·수도·광열(0.6%)은 증가
  - \* 주택매매 거래량(만호): (15.3/4)29.1 → ('16.3/4)28.6 (Δ0.5↓)
  - \*\* 전국 평균 기온(°C): (15.3/4)23.4 → (16.3/4)24.6 (1.2°C↑)
- 추석연휴(9.14~18, 5일), 리우올림픽(8.6~22일) 등의 영향으로 여행비(10.2%), 영상음향기기(35.9%)를 중심으로 오락·문화(0.8%) 증가
  - \*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동기비, %): (15.3/4)16.2 (4/4)23.9 (16.1/4)18.3 (2/4)14.0 (3/4)20.6
- 알뜰폰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트7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통신장비(Δ18.4%) 등 통신비 하락(Δ2.3%)
  - \* 알뜰폰 가입자 수(만명): (15.6)531 (9)560 (12)592 (16.3)625 (6)640 (9)663
- 곡물가격 하락\* 등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Δ3.2%) 감소
  - \* 곡물가격(동기비, %): (15.3/4)Δ2.0 (4/4)Δ3.2 (16.1/4)Δ5.0 (2/4)Δ7.3 (3/4)Δ9.3
-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83.8만원(전년 동기비 명목 0.5%, 실질 Δ0.3%)
  -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사회보험

(3.9%), 연금(5.5%) 증가

\* 사회보험 가입률(임금근로자, 8월 기준, %, 전년 8월 대비 증감 %): (국민연금) 67.6(+0.2) (건강보험) 72.6 (+1.1) (고용보험) 69.6(+1.0)

- 부동산거래\* 감소로 취득세(△18.0%) 등 비 정상조세(△16.9%) 감소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15.3/4)29.1 → ('16.3/4)28.5 (△0.6 ↓)

- 가계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3.6%)은 15분기 연속 감소

\*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5.3/4)3.46 (4)3.35 ('16.1/4) 3.33 (2)3.27 (3)3.18

###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단위: 천원, 전년 동기비, %)

	'15.3/4분기		'16.3/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구성비
가 계 지 출	3,396.7	0.6	3,417.4	0.6	100.0
소 비 지 출	2,562.5	△0.5	2,579.4	0.7	75.5
식 료 품 · 비 주 류 음 료	380.0	2.7	367.7	△3.2	10.8
주 류 · 담 배	36.8	23.0	36.4	△1.1	1.1
주 거 · 수 도 · 광 열	241.1	7.8	242.5	0.6	7.1
교 통	306.7	△12.5	299.9	△2.2	8.8
통 신	145.2	△3.9	142.0	△2.3	4.2
오 락 · 문 화	158.4	4.6	159.6	0.8	4.7
교 육	325.0	△1.1	329.2	1.3	9.6
음 식 · 숙 박	356.1	0.4	360.9	1.3	10.6
비 소 비 지 출	834.2	0.5	838.0	0.5	24.5

### 3. 가계수지 동향

- (가계수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60.8만원(전년 동기 대비 0.7%)
  - 흑자액\*(102.8만원)이 전년 동분기(102.0만원)

대비 0.8% 증가

\*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소득-가계지출)

- 평균소비성향\*(71.5%)은 전년 동분기(71.5%)와 동일한 수준

\*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천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처분가능소득	3497.9	3,562.9	3,668.4	3,483.8	3,582.3	3,527.7	3,703.6	3,518.6	3,607.5
흑자액	946.8	999.8	1015.0	989.5	1,019.8	978.0	1,034.8	1,025.0	1,028.0
평균소비성향	72.9	71.9	72.3	71.6	71.5	72.3	72.1	70.9	71.5

## II. 소득 분위별 동향

- **(분위별 소득)** 1분위(Δ6.0 → Δ5.9%)와 2분위(Δ1.3 → Δ0.9%)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4·5분위 소득은 증가
  - \* 분위별 소득증가율(전년 동기비, %): (1분위)Δ5.9 (2)Δ0.9 (3)0.3 (4)0.8 (5)2.4
  - 1분위 소득은 임시일용직\*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Δ12.4%) 감소와 영세자영업 경쟁심화\*\* 등에 따른 사업소득(Δ12.5%) 하락으로 감소
    - \* 임시일용직 증감(만명, 동기비): (15.2/4)9.0 (3)1.6 (4)2.8 (16.1/4)Δ7.8 (2)Δ6.5
    - \*\* 고용원 없는 자영업 취업자 증감(만명, 동기비): (15.3/4)Δ15.5 → (16.3/4)5.1
  - 5분위 소득은 사업소득(Δ6.4%)이 감소하는 가운데, 근로소득(6.9%)이 증가하면서 상승(2.4%)
- **(분배지표)** 소득5분위배율(4.81)은 전년 동기(4.46) 대비 상승
  - \* 소득5분위 배율(3/4분기, 전국가구): ('12)4.98 ('13)5.05 ('14)4.73 ('15)4.46 ('16)4.81
- **(분위별 지출)** 1·2분위는 감소, 3·4·5분위는 증가
  - \* 분위별 지출증가율(전년 동기비, %): (1분위)Δ0.7 (2)Δ0.4 (3)0.2 (4)1.0 (5)1.4
  - 1분위는 의류·신발(1.3%) 등이 증가한 반면, 식

료품·비주류음료(Δ3.0%), 교통(Δ12.3%), 오락·문화(Δ6.2%) 등이 감소

- 5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Δ3.1%), 주류·담배(Δ3.1%) 등이 감소한 반면, 오락·문화(4.8%), 의류·신발(2.3%) 등이 증가

- **(분위별 수지)** 처분가능소득은 5분위에서 가장 크게 증가(2.8%)하였고, 3·5분위에서 적자가구 비중 개선

## III. 평가 및 시사점

- ① **(가계소득·지출)** 고용 증가\* 등으로 소득·지출 소폭 증가
  - \* 취업자 수 증감(전년 동기비, 만명): (15.3/4)31.0 (4)37.6 (16.1/4)28.7 (2)28.9 (3)31.8
- **(소득)** 월평균 소득은 444,5만원(전년 동기 대비 명목 0.7%, 실질 Δ0.1%)
  - \* 명목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0.7 (4/4)0.9 ('16.1/4)0.8 (2/4)0.8 (3/4)0.7
  - \* 실질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0.0 (4/4)Δ0.2 ('16.1/4) Δ0.2 (2/4)0.0 (3/4)Δ0.1
  - 근로소득(1.9%)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 취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사업소득 증가율(1.1%)도 상승
    - \* 자영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비, 만명): (15.4/4)Δ13.5 (16.1/4)Δ9.6 (2/4)Δ6.8 (3/4)5.2기

###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단위: %, 천원)

	전체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적자가구 비중 (전년 동기비, %p)	21.6 (0.8)	45.7 (2.5)	24.4 (1.8)	16.9 (Δ0.3)	12.0 (0.6)	9.2 (Δ0.5)
처분가능소득 (전년 동기비, %)	3,607.5 (0.7)	1,140.2 (Δ7.1)	2,422.2 (Δ0.2)	3,299.6 (0.1)	4,362.8 (0.7)	6,809.0 (2.8)
평균소비성향 (전년 동기비, %p)	71.5 (0.0)	112.0 (7.1)	83.0 (0.7)	75.1 (Δ0.2)	68.9 (0.1)	60.6 (Δ0.8)

- **(지출)** 월평균 지출은 341.7만원(전년 동기 대비 명목0.6%, 실질 $\Delta$ 0.2%)

\* 명목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 $\Delta$ 0.5 (4)1.7 (15.1/4)0.5 (2)0.0 (3)0.6

\* 실질증가율(전년 동기비, %): ('15.3/4) $\Delta$ 1.2 (4)0.6 ('15.1/4) $\Delta$ 0.5 (2) $\Delta$ 0.8 (3) $\Delta$ 0.2

- 가정용품\*(18.4%), 오락·문화(0.8%) 등이 증가한 반면, 통신( $\Delta$ 2.3%), 식료품\*\*·비주류 음료( $\Delta$ 3.2%) 등은 감소

\* 백화점 가전매출 증가율(동기비, %): (15.3/4)6.8 (4/4)15.9 (16.1/4)6.5 (2/4)3.8 (3/4)9.6

\*\* 곡물가격(동기비, %) : (15.3/4) $\Delta$ 2.0 (4/4) $\Delta$ 3.2 (16.1/4) $\Delta$ 5.0 (2/4) $\Delta$ 7.3 (3/4) $\Delta$ 9.3

-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0.7%), 흑자액(0.8%) 모두 증가

- 평균소비성향(71.5%)은 전년 동분기(71.5%)와 동일한 수준

② **(분위별 동향)** 소득5분위 배율(4.81)은 전년 동기(4.46) 대비 상승

\* 분위별 소득증가율(전년 동기비, %): (1분위) $\Delta$ 5.9 (2) $\Delta$ 0.9 (3)0.3 (4)0.8 (5)2.4

\* 소득5분위 배율(3/4분기, 전국가구): ('12)4.98 ('13)5.05 ('14)4.73 ('15)4.46 ('16)4.81

③ **(시사점)**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추경 및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보장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확대 등 소득분배 개선 노력 지속 강화

## 국가회계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 본 자료는 2016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무회계팀에서 발표한 「송언석 차관, 국가회계 5주년 세미나 참석」을 수정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11.11(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주최한 국가회계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기획재정부 · 한국회계학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후원

- 세미나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5주년을 기념하여 「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 국회,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국가 회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 해외 주요국의 발생주의 도입성과 사례(1주제)\*, 발생주의 국가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2주제)\*\*, 미래 국가회계 발전방향에 대한 글로벌 좌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 (1주제 발표) Ian Ball 국제부문 회장(영국 공공부문 회계사협회)

\*\* (2주제 발표) 이종운 교수(감사교육원)

\*\*\* (좌담회) 정도진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등 7명

-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격려사에 이은 축사를 통해
  -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회계법령의 제·개정 등 회계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였고,
  - 발생주의 기준으로 '11~'15회계연도 국가 재

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회계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 또한, 국유재산, 국가채권, 국고금 등이 재정상태표 작성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표시됨으로써 자산·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 특히, 미래의 예상되는 연금지출규모의 현재가치를 파악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함으로써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송언석 차관은 향후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가 결산서 작성·활용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기법 및 활용방법의 발굴을 당부하였다.

# 재정포럼

2016년 11월호 통권 제24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김준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 월간 재정포럼

2016년 11월 15일 발행 / 제20권 제11호(통권 제24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 인쇄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mailto: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지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